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46
----------	-----

2019.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9. 5. 31.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9. 6. 3.
4.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7.)
    - 의결

## II. 제안설명 (재무국장 : 하철승)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골자

### (1) 세입·세출 결산총괄(일반, 특별회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6조 5,479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3%인 38조 1,121억원,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9%인 34조 3,355억원으로
  - 잉여금은 3조 7,766억원임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1,36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조 5,754억원임

### (2)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25조 4,772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6.3%인 27조 948억원,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24조 6,988억원으로

- 잉여금은 2조 3,960억원임

- 이 중 201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025억원, 사고이월액 1,137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8억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조 1,419억원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조 948억원으로, 예산현액 25조 4,772억원의 6.3%인 1조 6,17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 시세는 19조 1,033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7조 965억원 대비 11.7%인 2조 6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7,971억원), 근로자수·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6,460억원), 그 외 재산세·지방소비세 등(5,637억원)의 초과징수가 주요 요인임

- 세외수입은 1조 1,528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4,780억원 대비 22%인 3,252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 보조금은 3조 6,120억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3조 6,830억원의 1.9%인 710억원이 부족교부 되었음

- 이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족징수와,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조 417억원으로, 예산현액 3조 356억원의 0.2%인 61억원이 초과되었으며,
- 지방교부세는 1,850억원이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25조 4,772억원의 96.9%인 24조 6,988억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2,162억원으로,이 중 명시이월은 1,025억원, 사고이월액은 1,137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흥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111억원,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 69억원 등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102억원,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80억원 등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5,243억원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잔액 1,663억원, 통합편성 인력운영비 439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61억원 등임

- 일반회계 세출액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예산현액 7조 8,308억원의 97.3%인 7조 6,217억원,
- 일반공공행정이 6조 7,121억원의 99.4%인 6조 6,724억원,
- 교육 3조 6,541억원의 99.7%인 3조 6,450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조 6,624억원의 95.1%인 1조 5,805억원,
- 수송 및 교통 1조 3,829억원의 99.5%인 1조 3,760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8,531억원의 99.4%인 8,479억원,
- 문화 및 관광 6,580억원의 92.2%인 6,068억원,
- 환경보호 9,153억원의 91.5%인 8,378억원,
- 보건 4,652억원의 93.4%인 4,345억원,
- 산업·중소기업 2,648억원의 83.6%인 2,213억원,
- 농림해양수산 175억원의 91.9%인 161억원,
- 과학기술 48억원의 61.5%인 29억원,

- 끝으로, 예비비 등 기타에서 1조 562억원의 79.1%인 8,357억 원이 지출되었음

### (3)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조 707억 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인 11조 173억원,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0%인 9조 6,367억원으로,
  - 잉여금은 1조 3,806억원임
- 이 중 201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5,278억원, 사고이월액 3,92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5억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은 4,335억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707억원의 99.5%인 11조 173억 원으로, 533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음
- 예산현액보다 초과 징수된 특별회계는
  - 교통사업특별회계 407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479억원 등 5개 특별회계에 97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 예산현액보다 부족 징수된 특별회계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0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497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447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 3억원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7억원 등 5개 특별회계에 1,504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음

○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11조 707억원의 87.0%인 9조 6,367억원이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3%인 9,207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278억원, 사고이월액은 3,929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건설 503억원,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확장 438억원 등이며,

-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96억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304억원 등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4,868억원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690억원, 운수업

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05억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203억원 등임

○ 회계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731억원의 93.5%인 1조 7,515억원이 집행되었고,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3,182억원의 90.1%인 1조 1,883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7,224억원의 91.8%인 1조 5,805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6,917억원의 72.9%인 1조 2,335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조 1,863억원의 100%인 1조 1,862억원,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8,404억원의 98.0%인 8,234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8,282억원의 88.9%인 7,365억원,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2,025억원의 75.0%인 9,022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71억원의 55.3%인 2,087억원,



- 끝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08억원의 83.8%인 258억원이 집행되었음

#### (4) 재무회계 결산(일반·특별회계, 기금)

- 2018년도말 기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35조 4,849억원이고, 부채총액은 7조 9,074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7조 5,775억원임
- 2018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28조 2,824억원, 비용은 26조 7,719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5,105억원 흑자로 결산되었음

#### (5) 성과보고서(일반,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

- 2018회계연도 212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21개 성과지표를 설정 하였으며,
- 42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1건(12.1%), 달성 308건 (73.2%), 미달성 62건(14.7%)으로,
- 초과달성을 포함한 달성률은 85.3%임

###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 1.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

##### (1)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sup>1)</sup>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35조 7,816억 9,2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31조 9,818억 5,400만원)보다 11.9%, 3조 7,998억 3,8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35조 7,816억 9,200만원은 당초 본예산(31조 8,140억 6,500만원), 간주처리분(3,033억 6,300만원), 추경증액조정분(3조 6,642억 6,4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7,661억 7,300만원)을 합한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32조 9,161억 5,100만원)보다 11.0%(3조 6,317억 1,500만원) 증가한 36조 5,478억 6,6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35조 2,459억 300만원)보다 8.1%, 2조 8,661억 5,500만원 증가한 38조 1,120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조 947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11조 173억 400만원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 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19년 1월 1일자로 “본부”를 “실”로 개편하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시행되어 현 기관명 등과 차이가 있으나 '18회계연도 결산이므로 예산편성 기준 시 기관명 사용  
■ 검토보고중 인용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의미함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31조 147억 2,900만원)보다 10.7%, 3조 3,207억 2,100만원 증가한 34조 3,354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조 6,987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9조 6,366억 6,7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4조 2,311억 7,400만원) 보다 4,545억 6,700만원 감소한 3조 7,766억 700만원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18	총계	36,547,866 <2018최종> 35,781,692 <2017→2018이월> 766,173	38,112,058 (104.2%)	34,335,450 (94.0%)	3,776,607 (10.3%)	채무상환 - 명시이월 630,300 사고이월 506,585 계속비 - 보조금반납금 64,321 순세계잉여금 2,575,399
	일반회계	25,477,177 <2018최종> 25,269,572 <2017→2018이월> 207,605	27,094,753 (106.3%)	24,698,782 (97.0%)	2,395,970 (9.4%)	채무상환 - 명시이월 102,533 사고이월 113,699 계속비 - 보조금반납금 37,827 순세계잉여금 2,141,910
	특별회계	11,070,688 <2018최종> 10,512,120 <2017→2018이월> 558,568	11,017,304 (99.5%)	9,636,667 (87.0%)	1,380,636 (12.4%)	채무상환 - 명시이월 527,766 사고이월 392,886 계속비 - 보조금반납금 26,494 순세계잉여금 433,489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2. 세입결산

###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27조 947억 5,300만원)와 특별회계(11조 173억 400만원)를 합한 38조 1,120억 5,8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35조 2,459억 300만원)보다 8.1%, 2조 8,661억 5,5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2〉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36,547,866	39,689,548	38,112,058	420,040	1,157,449
일반회계	25,477,177	28,539,762	27,094,753	418,519	1,026,489
특별회계	11,070,688	11,149,786	11,017,304	1,521	130,960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39조 6,895억 4,800만원)보다 1조 1,574억 4,900만원 미수납된 38조 1,120억 5,8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음

〈표 3-3〉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18~'17)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미수납액비율
2018	39,689,548	38,112,058	420,040	1,157,449	96.0	2.9
2017	36,926,132	35,245,903	303,444	1,376,784	95.4	3.7

##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① 시세 세입관련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실제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17조 8,171억 2,400만원)보다 7.2%, 1조 2,861억 3,700만원 증가한 19조 1,032억 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0조 4,472억 5,100만원) 대비 93.4%가 수납되어 직전회계연도보다 지방세 실제 징수율은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4〉 시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A )	실제수납액 ( B )	실제징수율 ( B / A )	환급액
2 0 1 8	17,096,474	20,447,251	19,103,261	93.4	1,142,984
2 0 1 7	15,555,376	19,239,243	17,817,124	92.6	1,184,365

- 시세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을 비교할 경우, 11.7%, 2조 67억 8,700만원이 초과수납 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발생된 만큼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한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를 검토하면, 직전회계연도보다  $\Delta 2.8\%$ 포인트 낮아져 직전회계연도보다 세수추계의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표 3-5〉 시세 세입에 대한 예·결산 차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 입 예 산 ( A )	세 입 결 산 ( B )	증 감 ( C = B - A )	증 감 륜 ( C / A )
2 0 1 8	17,096,474	19,103,261	2,006,787	11.7
2 0 1 7	15,555,376	17,817,124	2,261,748	14.5

- 징수결정액(20조 4,472억 5,100만원)의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19조 2,392억 4,300만원)와 비교하여 6.3% 증가하였으나 환급액은 직전회계연도(1조 1,843억 6,500만원)보다  $\Delta 3.5\%$ ,  $\Delta 413$ 억 8,100만원 감소된 1조 1,429억 8,400만원이 발생된 바,
  - 지방세환급액 규모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지방세 징수결정의 정밀도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사료됨

### 〈표 3-6〉 지방세 환급사유

(단위 : 백만원)

	총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기타
지방세	1,142,984	3,908	261,960	47,140	1,931	138,322	36	689,683
취득세	236,648	1,746	202,918	30,663	74	-	28	1,216
주민세	2,993	49	232	2,423	-	3	-	284
재산세	9,285	1,295	4,503	3,287	-	-	4	195
자동차세	10,414	36	45	101	1,125	-	-	9,104
레저세	66	-	-	66	-	-	-	-
지방소득세	854,979	151	33,962	6,633	-	138,163	-	676,068
지역자원시설세	332	115	144	47	-	-	-	14
지방교육세	27,357	498	19,781	3,806	488	-	3	2,779
지난년도수입	916	14	372	110	242	154	-	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10222 ('19. 5. 7)

- 다만, 지난 '16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정산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세 환급액(1조 1,429억 8,400만원)의 57.2%에 해당하는 타 시·도간 정산을 위한 환급세액(6,533억 9,800만원)이 지방소득세 환급액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바,
- 지방세 수납처리후 발생하는 환급액 규모가 타 시·도간 정산분 (6,533억 9,800만원) 만큼 과장되게 공시되는 부정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지방세법」 등에는 지방세 환급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관련기준에도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한 작성요령과 양식만을 제시할 뿐 지방세 환급액의 7개 원인별 내역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 타 시·도간 정산을 위한 환급세액(6,533억 9,800만원)은 서울시의 세무행정 과오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간 정산을 위한 환급세액을 기타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환급세액 총액이 확대 공시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8회계연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18조 9,029억 3,400만원으로 세입예산 16조 8,598억 7,700만원보다 2조 430억 5,700만원 증가된 바,
- ①취득세(7,971억 1,400만원), ②지방소득세(6,459억 6,600만원), ③지방소비세(1,863억 6,700만원), ④자동차세(1,739억 700만원), ⑤재산세(1,285억 5,300만원)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당해연도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예 산 ( A )	세 입 결 산 ( B )	증 감 ( C = B - A )	증 감 륜 ( C / A )
계 <sup>주1)</sup>	16,859,877	18,902,934	2,043,057	12.1
① 취득세	4,394,623	5,191,737	797,114	18.1
주민세	505,197	539,898	34,701	6.9
⑤ 재산세	2,369,431	2,497,984	128,553	5.4
④ 자동차세	1,101,638	1,275,545	173,907	15.8
레저세	132,083	135,150	3,067	2.3
담배소비세	624,383	607,909	△16,473	△2.6
③ 지방소비세	1,212,695	1,399,062	186,367	15.4
② 지방소득세	4,848,309	5,494,275	645,966	13.3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89,133	13,168	4.8
지방교육세	1,395,553	1,472,236	76,683	5.5

※ 주1)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 ①취득세 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 부동산 거래둔화 및 매매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보수적으로 추계되나, 부동산 거래둔화가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하락(5.5%)에 머물렀고,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4조 3,946억 2,300만원) 보다 7,971억 1,4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사료됨
- ②지방소득세 수입은 양도소득분 증가, 개인소득 증가, 상용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4조 8,483억 900만원) 보다 6,459억 6,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표 3-8〉 지방소득세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예 산 ( A )	세 입 결 산 ( B )	증 감 ( C = B - A )	증 감 륜 ( C / A )
계	4,848,309	5,494,275	645,966	13.3
양도소득분	374,730	735,836	361,106	96.4
종합소득분	692,175	725,435	33,260	4.8
법인소득분	1,722,165	1,770,641	48,476	2.8
특별징수분	2,059,239	2,262,363	203,124	9.9

- ③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11%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으로 소비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2,126억 9,500만원)보다 1,863억 6,7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임

■ '18회계연도의 경우 '17년도 부동산 거래증가로 취득세 감면보전분(6%)에 대한 서울시 안분비율은 2.1%포인트가 상향 되었으나 소비지출분(5%)은 오히려 소폭 감소된 바, 서울시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④자동차세는 차량 증가에 따라 유류사용량이 증가되고, 유가 상승에 의한 유류세 인상 등의 요인으로 주행분이 1,762억원이 증가하는 등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1,016억 3,800만원)보다 1,739억 7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임

- ⑤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 (2조 3,694억 3,100만원)보다 1,285억 5,300만원 초과수납된 것임
  
- 현행 특별시세 체계는 재산과세를 비롯하여 소득이나 소비활동과 연동되어 있고, 이 경우 세수는 경기변동에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지방세수에 대한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②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관련

- 2018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수납액은 지난 2017회계연도보다 7.2%, 1조 2,861억 3,700만원 증가하고, **미수납액**도 직전회계연도보다 △17.3%, △1,947억 4,800만원 감소된 9,301억 2,400만원이 발생되었음

〈표 3-9〉 시세세입 수납현황 ('18~'15)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2018	20,447,251	19,103,261	93.4	930,124	4.5
2017	19,239,243	17,817,124	92.6	1,124,872	5.8
2016	18,092,118	16,569,317	91.6	1,229,990	6.8
2015	17,063,214	15,624,420	91.6	1,302,529	7.6

- 미수납액은 수납된 시세 세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18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9,301억 2,4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2,582억 2,600만원과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6,718억 9,800만원임
- '18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으나 “납세태만”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0〉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 또 부	업 는 도	채 무 생 의 유	자 에 한 예	격 또 입	리 는 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지 방 세		930,124	639,443	21,590	173,550	73,947	5,790			134	2,267	4,797	7,251		1,356
'18 회 계 연 도 분	소 계	258,226	168,749	4,816	79,558	2,564	37			31	136	1,563	654		119
	취 득 세	18,285	10,899	14	7,292	45	23			0	0	12	0		0
	주 민 세	6,054	3,051	26	2,936	25	1			0	0	2	12		0
	재 산 세	30,318	18,438	326	10,644	313	2			17	46	435	96		0
	자 동 차 세	66,716	47,333	487	18,434	263	1			1	0	29	50		119
	레 저 세	0	0	0	0	0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06,658	68,472	3,742	31,097	1,881	7			9	9	960	480		0
	지역자원시 설 세	2,633	1,495	20	1,015	2	2			1	71	26	3		0
	지방교육세	27,562	19,061	201	8,140	35	1			3	10	99	13		0
지난회계연도분		671,898	470,694	16,774	93,992	71,383	5,753			103	2,131	3,234	6,597		1,237

○ 아울러 '18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9,301억 2,400만원)의 경우, '19년 4월말 기준 14.1%(1,307억 9,8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난 '17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1조 1,248억 7,200만원)의 경우,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미수납액중 17.8%, 2,003억 2,6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어 미납된 시세에 대한 징수가 원활하

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 '18회계연도에 성과목표대비 달성률은 85%(2,003억 2,700만원 징수)를 달성한 것으로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으나,
  - 이중 19.6%, 393억 6,700만원만을 체납전담부서가 징수한 것이며 나머지 80.4%, 1,609억 9,500만원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체납된 시세수입 징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지방세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실제 징수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17년도	'16년도	
	예 산 액	236,597	233,297	225,248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A	1,256,009	1,328,201	1,416,742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B	200,327	209,404	237,357	
	서울시 전체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률 C=B/A	15.9	15.7	16.7	
지 난 년 도 수 입	38 세 금 징 수 과	예 산 액	41,500	41,500	41,548
		징 수 결 정 액	809,999	858,463	913,105
		실 제 수 납 액 D	<b>39,368</b>	<b>35,960</b>	<b>39,353</b>
		서울시전체징수결정액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E=D/A	3.1	2.7	2.7
		서울시전체실제수납액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F=D/B	19.6	17.1	16.5
		참 고	조 직 구 성	5개팀	5개팀
	현 원		41명	41명	42명
	자 치 구	예 산 액	195,100	196,500	183,700
		징 수 결 정 액	446,010	469,738	503,647
		실 제 수 납 액 G	<b>160,959</b>	<b>173,444</b>	<b>198,004</b>
서울시전체징수결정액 대비 자치구실제 수납률 H=G/A		12.8	13.0	13.9	
서울시전체실제수납액 대비 자치구실제 수납률 I=G/B		80.3	82.8	83.4	
참 고		조 직 구 성	45개팀	45개팀	45개팀
	현 원	264명	284명	289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10222 ('19. 5. 7)

### ③ 시세 세입중 불납결손액 관련

- 불납결손 된 4,138억 6,600만원은 당해연도분 300억 8,100만원 과 지난해도분 3,837억 8,400만원으로 결손처분한 규모가 직전회 계연도보다 20.9%, 1,947억 4,8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2〉 최근 3년간 지방세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계	배분금액 부족	채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기타
2018	413,866	105	1,316	26,443	3,485	154,651	200	0	216,884	10,782
	(100.0)	(0.0)	(0.3)	(6.4)	(0.8)	(37.4)	(0.0)	(0.0)	(52.4)	(2.6)
2017	297,246	3,113	865	41,701	3,454	125,447	303	10	110,560	11,793
	(100.0)	(1.0)	(0.3)	(14.0)	(1.2)	(42.2)	(0.1)	(0.0)	(37.2)	(4.0)
2016	292,811	81,771	0	38,858	11,830	109,941	X			50,411
	(100.0)	(27.9)	(0.0)	(13.3)	(4.0)	(37.5)				(17.2)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납결손액을 배분금액 부족 등 9개 사유로 구분하고 있음
- 불납결손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나 결손처분한 이후 채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8회계연도 당해연도분 불납결손은 300억 8,100만원으로 당해연도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3〉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불납 결손액	배분 금액 부족	채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 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족	기타	
지방세 계	413,866	105	1,316	26,443	3,485	154,651	200	216,884	10,782	
당해연도 수입	소 계	30,081	-	647	3	302	20,001	15	6,332	2,782
	취득세	1,546	-	-	-	-	238	-	1,289	19
	주민세	1,743	-	2	-	1	921	-	145	674
	재산세	1,311	-	0	-	36	224	-	543	509
	자동차세	1,935	-	1	2	46	544	-	650	692
	레저세	-	-	0	-	0	0	-	-	-
	지방소득세	22,002	-	644	-	194	17,590	15	3,165	395
	지역자원시설세	226	-	-	-	5	49	-	99	72
	지방교육세	1,318	-	-	1	20	435	-	441	421
지난연도수입	383,785	105	669	26,440	3,183	134,650	185	210,552	8,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10222 ('19. 5. 7)

#### ④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입규모가 증·감되는 세입원으로서 시세 수입보다는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음
- '18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세외수입은 연평균  $\Delta 2.6\%$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
  - 실제로 '18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1조 4,479억 7,300만원)보다  $\Delta 2,951$ 억 9,200만원 감소된 1조 1,527억 8,1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회계연도별 특수요인에 의하여 매년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을 5,149억 6,100만원 편성하였으나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실패 등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간 차이가 상존하나
  -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입예산과 실제결산결과에 있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발생되고 있어 실질적인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여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회 계 연 도			2017 회 계 연 도			2016 회 계 연 도		
	예 산	결 산	결산율	예 산	결 산	결산율	예 산	결 산	결산율
세외수입	1,447,974	1,152,781	78.0	1,162,084	855,260	73.6	1,565,371	892,026	56.9
경 상 적 세 외 수입	504,213	506,814	100.5	449,055	473,130	105.3	750,999	511,462	68.1
채 산 대 수입	137,299	128,234	93.4	114,192	109,761	96.1	119,009	169,363	142.3
사 용 료 수입	145,714	147,812	101.4	138,446	145,025	104.7	133,287	138,352	103.8
수 수 료 수입	3,091	3,042	98.4	2,759	3,256	118.0	2,543	3,037	119.4
사업수입	162,635	154,474	95.0	156,342	148,167	94.7	460,896	142,161	30.8
징 수 교 부 금 수 수입	10,386	8,135	78.3	11,355	9,160	80.6	11,941	11,555	96.7
이자수입	45,088	65,117	144.4	25,959	57,759	222.5	23,320	46,991	201.5
임 시 적 세 외 수입	973,761	645,967	66.3	713,028	382,130	53.5	814,372	380,563	46.7
재 산 매 각 수 입	514,961	109,978	21.4	511,875	50,114	9.7	619,508	33,280	5.3
부 담 금	32,567	26,727	82.1	26,334	24,537	93.1	60,084	39,925	66.4
과 징 금 및 과 태 료	7,114	9,545	134.2	9,230	5,934	64.2	8,769	6,936	79.1
기 타 수 입	400,383	469,665	117.3	151,257	277,300	183.3	117,532	275,151	234.1
지 난 년 도 수 입	18,736	30,052	160.4	14,330	24,244	169.1	8,477	25,268	298.0

⑤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으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 '18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현액(1,841억 1,000만원)보다 0.5%, 8억 8,500만원 증가된 1,849억 9,500만원이 수납됨

〈표 3-15〉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과목명	예산현액 A=(B+C+D)	본예산 B	추경예산 C	간주처리 D	실제수납액 E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 F=(E-A)
계	184,110	143,441	35,559	5,110	184,995	885
보통교부세	140,043	110,441	29,602	-	140,043	-
특별교부세	5,110	-	-	5,110	5,995	885
부동산교부세	-	-	-	-	-	-
소방안전교부세	38,957	33,000	5,957	-	38,957	-

※ 참고 :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으로서 ①교통사업특별회계 32억 6,300만원, ②도시개발특별회계 47억 4,600만원, ③소방안전특별회계 16억 8,400만원이 수납됨

- '18회계연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편성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1,104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330억원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있음
- 회계연도중 보통교부세(296억 200만원)와 소방안전교부세(59억

5,700만원)가 추가 교부되어 지난해 9월,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중 소방안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세입예산을 기정예산보다 증액조정하여 의결한 바 있음

- 아울러 회계연도중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 등 6개 사업 8억 8,500만원을 추가교부하고,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한 148억 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현액(1,841억 1,000만원)보다 세입결산액(1,849억 9,500만원)이 초과 수납(8억 8,500만원)된 것임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분권교부세 보전분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를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받을 예정인 바, 향후에도 동 세원이 지속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⑥ 국고보조금등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임
  
-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는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을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동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등(511)**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수납한 것임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직전 회계연도(3조 2,225억 100만원)보다 12.0%, 3,894억 5,900만원 증가된 3조 6,119억 6,0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으며, 예산액(3조 6,830억 4,800만원)과 비교하면 △710억 8,800만원이 부족수령된 것임

〈표 3-16〉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5,194,873	5,087,883	△106,989
일반회계 <sup>주1)</sup>	3,683,048	3,611,960	△71,088
특별회계	1,511,824	1,475,923	△35,901
기타특별회계 <sup>주1)</sup>	1,388,041	1,367,340	△20,70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46,624	239,225	△7,399
교통사업특별회계	27,454	21,133	△6,32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299	34,299	△3,000
주택사업특별회계	342,546	338,609	△3,937
도시개발특별회계	70,695	70,695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4,153	634,153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6,403	26,358	△45
소방안전특별회계	2,865	2,865	-
공기업특별회계 <sup>주2)</sup>	123,783	108,583	△15,200
수도사업특별회계	-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3,783	108,583	△15,200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511)[① 국고보조금(511-01), 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③ 기금(511-03) 포함]에 대한 세입결산현황

주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 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 ② 타회계전입금수익(672) 중 국고보조금(672-06)에 대한 세입결산현황

자료근거 : ①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

② 「201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55기)」 중 “사업예산결산 보고서” 및 “자본예산결산 보고서”

③ 「2018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중 “사업예산결산 보고서” 및 “자본예산결산 보고서”

〈표 3-17〉 회계연도별 국고보조금등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C)=(B)-(A)	부족수령률 (C)/(A)
		(B)	수납률 (B)/(A)		
2018	3,683,048	3,611,960	98.1	△71,088	△1.9
2017	3,257,507	3,222,501	98.9	△35,005	△1.1
2016	3,051,720	3,005,527	98.5	△46,193	△1.5
2015	2,987,300	2,917,847	97.7	△69,453	△2.3
2014	2,421,605	2,379,694	98.3	△41,911	△1.7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 그러나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의 경우, 3조 6,130억 1,200만원이 실제수납되고, 예산액(3조 6,830억 4,800만원)과 비교하면 △700억 3,600만원이 부족수령된 것으로 제출한 바,
  - 결산서중 세입결산에 기재된 실제수납액(3조 6,119억 6,000만원)과 주무부서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제출한 실제수납액(3조 6,130억 1,200만원)간 10억 5,2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8〉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수납 현황 (2018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산서중 세입결산 <sup>주1)</sup>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 제출자료 <sup>주2)</sup>			자료간 차이	
	예산액 (A)	실제 수납액 (B)	예산액 대비증감 (B)-(A)	예산액 (C)	실제 수납액 (D)	예산액 대비증감 (D)-(C)	예산액간 차액 (C)-(A)	실제 수납액간 차액 (D)-(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511)	3,683,048	<b>3,611,960</b>	△71,088	3,683,048	<b>3,613,012</b>	△70,036	-	1,052
국고보조금 (511-01)	<b>3,402,075</b>	<b>3,345,087</b>	△56,988	<b>3,402,099</b>	<b>3,342,365</b>	△59,733	24	△2,722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11-02)	63,188	<b>63,234</b>	46	63,188	<b>63,073</b>	△115	-	△161
기금 (511-03)	<b>217,784</b>	<b>203,638</b>	△14,146	<b>217,761</b>	<b>207,573</b>	△10,187	△23	3,935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2018회계연도 결산서중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19. 5. 9)

- 자료간 차이에 대해 세입과목별로 검토하면,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511)** 중 ① **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결산서중 세입결산에는 예산액 3조 4,020억 7,500만원보다 △569억 8,800만원 부족한 3조 3,450억 8,7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주무부서는 예산액 3조 4,020억 9,900만원보다 △597억 3,300만원 부족한 3조 3,423억 6,5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한 바,

- 주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액(3조 4,020억 9,900만원)은 결산서중 세입결산에 기재된 예산액(3조 4,020억 7,500만원)보다 2,400만원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실제수납액(3조 3,423억 6,500만원)도 결산서에 기재된 실제수납액(3조 3,450억 8,700만원)보다 △27억 2,200만원 미달된 것임
- 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결산서중 세입결산에는 예산액(631억 8,800만원)보다 4,600만원 “초과수령”된 632억 3,4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는 오히려 예산액(631억 8,80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 “부족수령”이 발생되어 630억 7,3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한 바,
  -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실제수납액(630억 7,300만원)은 결산서중 세입결산에 기재된 실제수납액(632억 3,4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 미달된 것임
- ③ **기금(511-03)**의 경우, 결산서중 세입결산에는 예산액 2,177억 8,400만원보다 △141억 4,600만원 부족한 2,036억 3,8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주무부서는 예산액 2,177억 6,100만원보다 △101억 8,700만원 부족한 2,075억 7,3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한 바,

- 주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액(2,177억 6,100만원)은 결산서중 세입결산에 기재된 예산액(2,177억 8,400만원)보다 △2,300만원 미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실제수납액(2,075억 7,300만원)도 결산서에 기재된 실제수납액(2,036억 3,800만원)보다 39억 3,500만원 초과된 것임
- 결산서의 실제수납액은 시금고에 국고보조금이 수납된 내역을 기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제출한 실제수납액이 신뢰 가능한 결과인지 점검하고, 결산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 상황은 이미 지난 '15회계연도와 '16회계연도, 그리고 '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등(511)**의 실제수납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바 있음에도, '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결산서와 주무부서가 제출한 자료간 실제수납액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된 것임
  -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한 국비가 실제로 수납될 필요가 있으며, 국비를 수납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에는 보조금반납금도 발생될 수 있어 실제수납액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정확한 실제수납액 제출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동 문제사안을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시됨
- 아울러 **국고보조금등(511)**의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족수령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감추경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 '18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는 **국고보조금(511-01)**과 **기금(511-03)**의 예산액마저도 결산서와 상이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바,
  - 기초적인 자료인 예산액마저도 결산서와 불일치하는 자료가 제출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없어 국고보조금 관리내역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9~2023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19년부터 '23년까지 의무지출은 연평균 3.0% 증가하고, 의무지출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연평균 3.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 증액교부, 보조율 상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비 지연교부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된 국비를 적기에 교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국비 부족교부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국비와 이에 대응편성된 시비를 감액조정 하여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1조 1,497억 8,600만원)의 98.8%, 11조 173억 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263억 9,600만원 감소된 1,309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표 3-19〉 특별회계 세입 현황 ('18~'15)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018	11,149,786	11,017,304	98.8	130,960	1,521
2017	10,657,711	10,498,824	98.5	157,356	1,531
2016	9,682,499	9,570,732	98.8	110,115	1,652
2015	8,354,166	8,232,772	98.5	117,518	3,876

- '18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0.4%포인트 감소된 1,309억 6,000만원으로 제출됨
- 다만, ①교통사업특별회계(486억 4,100만원)를 비롯한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43억 8,7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234억 2,500만원), ④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229억 8,600만원), ⑤수도사업특별회계(208억 4,800만원)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표 3-20〉 특별회계별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명	징수결정액	실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불납결손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소 계		11,149,786	11,017,304 (98.8)	1,521 (0.0)	130,960 (1.2)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303,222	1,303,222 (100.0)	- (0.0)	- (0.0)
	① 교 통 사 업	1,811,989	1,762,995 (97.3)	352 (0.0)	48,641 (2.7)
	② 광역교통시설	396,695	382,307 (96.3)	- (0.0)	14,387 (3.6)
	③ 주 택 사 업	1,846,848	1,823,423 (98.7)	- (0.0)	23,425 (1.3)
	도 시 개 발	1,647,550	1,646,934 (100.0)	- (0.0)	616 (0.0)
	의료급여기금	1,188,930	1,188,930 (100.0)	- (0.0)	- (0.0)
	한강수질개선	31,498	31,498 (100.0)	- (0.0)	- (0.0)
	소 방 안 전	840,112	840,052 (100.0)	6 (0.0)	52 (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④ 수도사업특별회계	897,825	876,140 (97.6)	837 (0.1)
⑤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85,113	1,161,800 (98.0)	325 (0.0)	22,986 (1.2)

- ①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486억 4,100만원 중 66.7%, 324억 5,1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제출되고 있고,
- ③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미수납액 234억 2,500만원 중 100.0%, 234억 2,5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제출되고 있어 해당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1〉 기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사유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무재산	행불 방명	납세 태만	소송 류	폐업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또는 입원	국외 주	자 압 금 박	기 타
계	87,125	753	13	55,899	5,070	0	0	9,384	0	181	15,825
	(100.0)	(0.9)	(0.0)	(64.2)	(5.8)	(0.0)	(0.0)	(10.8)	(0.0)	(0.2)	(18.2)
광역시 역 통 설	14,388	0	0	0	2,884	0	0	30	0	181	11,293
	(100.0)	(0.0)	(0.0)	(0.0)	(20.0)	(0.0)	(0.0)	(0.2)	(0.0)	(1.3)	(78.5)
교 사 통 업	48,641	748	2	32,451	2,181	0	0	9,348	0	0	3,912
	(100.0)	(1.5)	(0.0)	(66.7)	(4.5)	(0.0)	(0.0)	(19.2)	(0.0)	(0.0)	(8.0)
도 개 시 발	617	0	0	0	0	0	0	0	0	0	617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주 사 택 업	23,425	0	0	23,425	0	0	0	0	0	0	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소 안 방 전	53	5	11	23	5	0	0	6	0	0	3
	(100.0)	(9.4)	(20.8)	(43.4)	(9.4)	(0.0)	(0.0)	(11.3)	(0.0)	(0.0)	(5.7)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8,978억 2,500만원)의 97.6%인 8,761억 4,000만원이 실수납 되는 등 세출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징수결정액(8,978억 2,5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보다  $\Delta 0.5\%$ ,  $\Delta 46$ 억 3,900만원 소폭 감소하고, 미수납액도 직전회계연도(490억 5,900만원)보다  $\Delta 57.5\%$ ,  $\Delta 282$ 억 1,100만원 감소된 208억 4,8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미수납액 208억 4,800만원이 징수결정액(8,978억 2,500만원) 대비 2.3%에 해당되어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409억 5,900만원 보다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중 기타 사유를 전체의 81.4%(169억 6,400만원)로 제출한 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보다는 발생사유를 기타 사유로 편의적 범주화 시킨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2〉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2018회계연도		897,825	876,140	837	20,848
세입결산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874,254	824,565	8	15,562
		(96.8)	(96.6)	(1.0)	(74.6)
	지난년도 수입	28,209	28,209	829	5,286
		(3.1)	(3.3)	(99.0)	(25.4)
2017회계연도		902,464	852,774	631	49,059
세입결산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874,254	824,565	631	49,059
		(96.8)	(96.6)	(100.0)	(100.0)
	지난년도 수입	28,209	28,209	-	-
		(3.1)	(3.3)	-	-

※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5476 ('19. 4.19)

주1)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다음연도이월액은 208억 4,800만원 발생한 바, 발생사유는 ①기타 81.4%, 169억 6,400만원, ②자금압박 9.3%, 19억 4,200만원, ③무재산 4.2%, 9억 6,400만원, ④폐업또는 부도 2.3%, 4억 8,700만원 등 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1조 1,851억 1,300만원)의 98.0%인 1조 1,618억원이 실수납 되어 세출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유 중 기타 사유를 전체의 64.0%(145억 6,100만원)로 제출한 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보다는 발생사유를 기타 사유로 편의적 범주화 시킨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3〉 공기업하수특별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2018회계연도		700,937	684,975	318	15,644
세입결산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687,130	673,149	-	13,981
		(98.0)	(98.3)	(0.0)	(89.4)
	지난년도 수입	13,807	11,826	318	1,663
		(2.0)	(1.7)	(100.0)	(10.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6917 ('19. 4.23)

주1)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다음연도이월액은 229억 8,700만원 발생한 바 발생사유는 ①기타 64.0%, 145억 6,100만원, ②납세태만 24.0%, 54억 9,400만원, ③자금압박 6.3%, 14억 6,800만원, ④무재산 4.2%, 9억 6,400만원 등임

### 3. 세출결산

#### (1) 불용액

##### ①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36조 5,478억 6,600만원)의 2.7%인 1조 112억 2,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1,352억 4,900만원)보다 △1,240억 2,900만원 감소한 것임
-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다만, 매년 결산심사시 불용액 발생규모가 지적되고 있고, '18년도에 는 추경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 결산결과 '17회계연도에 이어 1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도 2.8%로 확인되는 바,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회계연도중 감추경 대상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4〉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2 0 1 8	36,547,866	1,011,220	2.8
2 0 1 7	32,916,152	1,135,249	3.4
2 0 1 6	30,604,139	918,453	3.0
2 0 1 5	27,112,104	808,706	3.0
2 0 1 4	25,522,763	749,091	2.9
2 0 1 3	24,355,835	746,861	3.1
2 0 1 2	22,689,515	754,221	3.3
2 0 1 1	21,883,150	969,982	4.4
2 0 1 0	22,515,391	1,653,921	7.3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불용액이 500억원 이상 발생된 특별회계를 검토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42억 9,300만원(예산현액 대비 5.5%)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Delta 2.4\%$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31억 3,200만원(예산현액 대비 6.0%)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1.4%포인트 증가하였음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5억 4,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0%)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0.4%포인트 증가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33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4.2%)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률이  $\Delta 0.2\%$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2억 7,400만원(예산현액 대비 6.0%)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표 3-25〉 회계별 불용액 발생현황 ('18회계연도~'16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sup>주1)</sup>
계	36,547,866	1,011,220 (2.8)	32,916,152	1,135,249 (3.4)	30,604,139	918,453 (3.0)
일반회계	25,477,177	524,346 (2.1)	22,818,685	533,506 (2.3)	21,299,027	368,980 (1.7)
특별회계	11,070,689	486,873 (4.4)	10,097,466	601,742 (6.0)	9,305,112	549,473 (5.9)
기타 특별회계	9,039,944	340,058 (3.8)	9,279,257	531,582 (5.7)	8,495,501	479,578 (5.6)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1,318,188	17,101 (1.3)	1,687,610	49,685 (2.9)	1,319,026	90,632 (6.9)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722,351	73,342 (4.3)	1,335,920	59,140 (4.4)	1,342,323	86,939 (6.5)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377,079	27,381 (7.3)	193,637	4,483 (2.3)	155,363	15,873 (10.2)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873,094	104,293 (5.6)	1,768,217	139,092 (7.9)	1,412,984	48,637 (3.4)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691,703	103,132 (6.1)	1,543,273	70,704 (4.6)	1,492,175	123,383 (8.3)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sup>주2)</sup>	-	- (0.0)	864,845	192,633 (22.3)	831,676	35,295 (4.2)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1,186,326	94 (0.0)	1,067,662	8,838 (0.8)	934,190	4 (0.0)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30,804	1,721 (5.6)	29,745	3,277 (11.0)	30,901	2,467 (8.0)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	840,399	12,992 (1.5)	788,347	3,729 (0.5)	721,734	2,704 (0.4)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sup>주3)</sup>	-	- (0.0)	-	- (0.0)	255,129	73,644 (28.9)
공기업특별회계	2,030,745	146,816 (7.2)	818,209	70,161 (8.6)	809,611	69,895 (8.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28,210	74,541 (9.0)	818,209	70,161 (8.6)	809,295	69,582 (8.6)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1,202,535	72,275 (6.0)	-	- (0.0)	-	- (0.0)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sup>주4)</sup>	-	- (0.0)	-	- (0.0)	316	313 (99.0)

※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임

주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시행(18. 1. 1)에 따라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 폐지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주3)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 ('16. 6.27)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6회계연도 말일('16.12.31)에 폐지됨

주4) 지역개발기금은 '16회계연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15. 7.24)에 따라 '17회계연도부터는 기금으로 운용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재구성

○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 중 43.8%, 4,432억 2,6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이 부정확하게 편성된 사례로 사료됨

- 시설비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례도 있으나 과도한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실집행 예산보다 소요예산이 과다편성된 결과일 수밖에 없고, 예산집행과정에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부족한 결과로 사료됨

〈표 3-26〉 사유별 불용액 발생현황 (’18회계연도~’16회계연도) <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sup>주2)</sup>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2018 회계연도	불용액	1,011,220	113,568	-	248,098	443,226	206,328
	구성비	100.0	11.2	-	24.5	43.8	20.4
구분		계	발생사유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2017 회계연도	불용액	1,135,249	28,693	15,454	310,072	582,617	198,412
	구성비	100.0	2.5	1.4	27.3	51.3	17.5
2016 회계연도	불용액	918,453	28,457	1,461	247,920	584,309	56,307
	구성비	100.0	3.1	0.2	27.0	63.6	6.1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삭제되고 “보조금 정산잔액”(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이 신설되었음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도 “지출잔액”을 사유로 발생된 서울시 전체 불용액(4,432억 2,600만원) 중 12.8%, 566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잔액 성격의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무국(490억 9,600만원), 여성가족정책실(475억 9,500만원), 도시교통본부(450억 800만원), 물순환안전국(410억 6,900만원), 안전총괄본부(275억 3,100만원), 푸른도시국(184억 4,900만원), 복지본부(162억 6,800만원), 행정국(150억 4,0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관(149억 3,7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147억 2,700만원), 소방재난본부(112억 9,800만원), 경제진흥본부(107억 500만원)의 경우에도 “지출잔액”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산정 함으로써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112억 2,000만원) 중 24.5%, 2,480억 9,8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인 바,
  -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편성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불용액 (2,480억 9,800만원) 중 35.9%, 892억 6,100만원이 도시재생본부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며, 안전총괄본부(391억 700만원), 물순환안전국(220억 800만원), 주택건축국(218억 1,5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164억 800만원), 도시교통본부(145억 2,200만원)의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이 해당 사유로 불용된 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7〉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 (계)		발생사유별 불용액				
		구성비 <sup>주2)</sup>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b>합 계</b>	<b>1,011,220</b>	<b>100.0</b>	<b>113,568</b>	<b>-</b>	<b>248,098</b>	<b>443,226</b>	<b>206,328</b>
기 획 조 정 실	176,085	17.4	-	-	31	2,802	173,252
도 시 재 생 본 부	100,165	9.9	508	-	89,261	7,370	3,026
여 성 가 족 정 책 실	80,984	8.0	33,179	-	211	47,595	-
물 순 환 안 전 국	79,102	7.8	5,731	-	22,008	41,069	10,295
도 시 교 통 본 부	79,043	7.8	7,711	-	14,522	45,008	11,803
상 수 도 사 업 본 부	74,541	7.4	-	-	16,408	56,605	1,527
안 전 총 괄 본 부	66,638	6.6	-	-	39,107	27,531	-
재 무 국	49,096	4.9	-	-	-	49,096	-
주 택 건 축 국	46,456	4.6	19,980	-	21,815	2,761	1,900
복 지 본 부	35,306	3.5	16,734	-	2,305	16,268	-
문 화 본 부	24,409	2.4	14,627	-	4,636	5,147	-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23,906	2.4	-	-	7,399	14,727	1,781
푸 른 도 시 국	22,156	2.2	537	-	3,170	18,449	-
시 민 건 강 국	21,893	2.2	6,318	-	6,174	9,402	-
기 후 환 경 본 부	20,670	2.0	6,225	-	8,201	6,245	-
행 정 국	15,762	1.6	48	-	674	15,040	-
일 자리 노 동 정 책 관	14,994	1.5	57	-	-	14,937	-
경 제 진 흥 본 부	13,710	1.4	521	-	2,484	10,705	-
소 방 재 난 본 부	12,992	1.3	667	-	-	11,298	1,027
평 생 교 육 국	12,794	1.3	271	-	3,615	8,908	-
관 광 체 육 국	8,889	0.9	186	-	2,972	5,731	-
정 보 기 획 관	5,807	0.6	10	-	175	5,622	-
한 강 사 업 본 부	5,535	0.5	122	-	960	4,453	-
교 통 방 송	5,267	0.5	-	-	-	3,549	1,718
서 울 혁 신 기 획 관	4,062	0.4	-	-	150	3,912	-
지 역 발 전 본 부	2,739	0.3	67	-	997	1,675	-
의 회 사 무 처	1,803	0.2	-	-	210	1,593	-
도 시 계 획 국	1,591	0.2	70	-	218	1,303	-
시 민 소 통 기 획 관	1,184	0.1	-	-	30	1,154	-
도 시 공 간 개 선 단	1,035	0.1	-	-	-	1,035	-
인 재 개 발 원	740	0.1	-	-	137	603	-
서 울 역 사 박 물 관	690	0.1	2	-	41	647	-
시 립 미 술 관	303	0.0	-	-	1	302	-
비 상 기 획 관	252	0.0	-	-	188	65	-
감 사 위 원 회	234	0.0	-	-	-	234	-
기 술 심 사 담 당 관	164	0.0	-	-	-	164	-
민 생 사 법 경 찰 단	123	0.0	-	-	-	123	-
대 변 인	54	0.0	-	-	-	54	-
사 민 감 사 위 원 회	47	0.0	-	-	-	47	-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 ②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

- 금년 1월, 행정안전부는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개정한 바,
  - 지난 '17회계연도까지는 결산서중 세출결산의 최종단계에 **집행잔액** 즉, 불용액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18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을 분리표기 하도록 하였음
  - 결산작성 통합기준중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분리한 취지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납할 국비와 자체재원이 불용된 집행잔액(보조금 정산잔액)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에 대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분리함으로써 서울시로서는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정책임이 일부 면책되는 효과가 있어 재정지표에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중앙정부나 시민의 입장에서조차 국고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구분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지, 재정집행에 대한 적극성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은 국·시비가 포함되어 편성·의결·집행되고 있고, 교부된 국비의 비효율적인 지출결과도 결국 국비를 교부받은 서울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가 편성·집행하는 예산구조에서 불용처리 되는 국비

를 “**보조금반납금**”으로 분리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책임이 별도 구분되는 “**보조금반납금**” 만큼 희석되는 이른바 ‘불용액에 대한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18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1조 112억 2,0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0.9%, △1,240억 2,900만원 감소된 것이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643억 900만원)을 분리포기 함으로써 불용액 규모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일부 감소된 측면이 있는 바,
- **보조금 반납금**도 교부된 국비가 지출되지 못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국비분 불용액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분리한 것은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소관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175억원(전년도 명시이월액 170억원)중 **보조금반납금** 150억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억원이 **불용** 된 바,
- 지난 '17년도에 국고보조금 15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준공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예산액(17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음에도 지역주민과의 협의곤란을 사유로 '18년도 예산액 5억원을 포함한 '18회계연도 예산현액(175억원)중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소관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결산결과, 예산현액 73억 2,300만원(국비 48억 2,300만원, 시비 25억원)중 시비 3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 21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국비는 전액 반납할 것으로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의 4.3%만 집행하였음에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 결과, 불용액은 0원으로 제출될 수밖에 없어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산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한 국비교부액을 회계연도중 감액 통보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추경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 세입·세출 편성액을 추경으로 감액하지 못하게 되면, 세입결산에는 실제 국비가 감수납 되고, 세출결산에는 국비가 감액 교부된 만큼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하는 바,

- '재원없는 불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예산집행후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해당되는 "**지출잔액**"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국비를 감추경 하지 않아 발생한 시비 불용액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국비가 감액통보 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을 통해 감

액통보 된 국비와 매칭편성 된 시비를 감액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사례에 대해서까지 일괄하여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분류하도록 통보한 것은 소극행정 등의 결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희석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어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보다 세분화 시켜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2,604억 2,400만원)의 13.8%, 361억 1,400만원이 불용된 바

〈표 3-28〉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정산잔액	지출잔액
260,424	224,310	36,114	11,439	24,675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결산서

-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의결('18. 9.14)한 시점에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당초 편성액보다 △246억 7,500만원 감액통보 한 결과 국비(246억 7,500만원)와 시비(114억 3,900만원)가 불용처리 된 것으로
- 불용처리된 국비(246억 7,500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비 감액통보에 따라 발생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지출잔액**으로 잘못 분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해 국비를 감액편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비 대응편성분(114억 3,900만원)도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분류되어 제출되었음

- 동 불용 사례처럼, '18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재원없는 불용'과 매칭된 시비대응분 불용액의 발생원인 등을 단순히 **지출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 둔감해지도록 방임하는 재정결과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3-29〉 보조금반납금이 3억원 이상인 사업 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보조금반납금 <sup>주2)</sup>	불 용 액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500	15,000 (85.7)	2,500 (14.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7,115	10,885 (5.2)	3,019 (1.4)
도시재생본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11,576	5,421 (46.8)	5,394 (46.5)
물순환안전국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7,323	4,823 (65.8)	0 (0.0)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566	4,005 (34.6)	2,355 (20.3)
기후환경본부	그 린 카 보 급	91,895	3,169 (3.4)	1,232 (1.3)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1,037	3,153 (4.4)	7,399 (10.4)
복지본부	어 르 신 일 자 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110,115	1,581 (1.4)	135 (0.1)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2,547	1,278 (1.2)	1,452 (1.4)
도시재생본부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2,169	1,084 (50.0)	1,084 (50.0)
도시재생본부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1,800	900 (50.0)	900 (50.0)
복지본부	자활근로사업 지원	51,494	742 (1.4)	1,741 (3.3)
물순환안전국	환 경 기 초 시 설 설 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967	511 (3.9)	0 (0.0)
도시재생본부	한강 피어테크 조성	925	427 (46.1)	427 (46.1)
관광체육국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 조 잔 디 교 체	4,638	392 (8.4)	392 (8.4)
기후환경본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589	386 (5.0)	1,286 (16.9)
복지본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7,016	362 (0.3)	1,051 (1.0)
물순환안전국	잠 실 상 수 원 관 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18	307 (37.5)	50 (6.1)

※ 주1)보조금반납금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순으로 작성함

※ 주2)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 ③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규모가 4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22건, 2,84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1조 112억 2,000만원)의 28.1%에 해당됨

〈표 3-30〉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도시재생본부	재 정 투 용 자 금 예 탁 금	69,000	69,000	100.0	-
여성가족정책실	가 정 양 육 수 당 지 원	260,424	36,114	13.8	-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309,598	20,539	6.6	-
주택건축본부	주 거 급 여 수 급 자 지 원	273,658	19,945	7.3	-
안전총괄본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21,408	14,769	69.0	3,640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수 당 지 원	143,010	14,729	10.3	-
문 화 본 부	풍 납 토 성 복 원	142,242	13,642	9.6	20,392
안전총괄본부	태릉~구리 IC 간 도로 확장	10,061	8,349	83.0	757
일자리노동정책관	서 울 형 뉴 딜 일 자 리	85,648	7,440	8.7	-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1,037	7,399	10.4	13,006
시 민 건 강 국	지 역 치 매 지 원 센 터 운 영	20,996	7,236	34.5	-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126	6,901	7.6	28,171
안전총괄본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3,403	6,712	50.1	4,200
도시교통본부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6,833	6,666	97.5	-
평 생 교 육 국	친 환 경 학 교 급 식 지 원	136,005	6,426	4.7	-
도시교통본부	저 상 버 스 도 입	33,488	6,271	18.7	-
주 택 건 축 국	역 세 권 장 기 전 세 주 택 매 입	6,551	6,259	95.6	-
여성가족정책실	어 린 이 집 운 영 지 원 ( 자 체 )	141,595	5,883	4.2	-
주 택 건 축 국	재 건 축 소 형 주 택 매 입	183,170	5,747	3.1	-
공공개발기획단	한 강 통 합 선 착 장 조 성	11,576	5,394	46.6	-
도시교통본부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5,060	4,863	96.1	-
시 민 건 강 국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시 - 국가예방접종 실시	97,603	4,366	4.4	-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제외

○ 도시교통본부 소관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당초 소요예산액 보다 법인사업자가 월별로 청구한 내역에 따른 지출액이 감소되어 예산현액 3,095억 9,800만원중 6.6%, 205억 3,900만원이 불용된 것이나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7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3,129억 5,500만원)의 5.1%, 159억 4,100만원이 불용된 바 있고, '16 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3,399억 3,500만원)의 4.2%, 144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필요한 최소 규모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추가분을 수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수 백억원이 대규모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1〉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회계연도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불용액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	309,598	289,059	72,306	73,734	73,996	69,020	-	20,539
'17	312,955	297,014	73,860	74,475	50,099	98,578 <sup>주1)</sup>	-	15,941
'16	339,935	297,467	73,247	74,514	75,569	74,136	28,000	14,467

※ 주1) 8월분 25,031백만원이 1개월 지연지출(10.12) 되어 4분기 지출액으로 반영된 것임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소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은 국비(58억 3,400만원)와 시비(57억 4,100만원)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5억 7,600만원(전년도이월 115억 7,600만원)중 6.5%, 7억 6,000만원만 집행되고, 53억 9,4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사업부서는 '18년 10월, 통합선착장이 한강 수위에 영향을 받는 시설이므로 향후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중보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53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표 3-32〉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18	11,576 <sup>주1)</sup>	760	-	5,421	5,394
'17	12,690 <sup>주2)</sup>	1,062	11,576 <sup>주4)</sup>	-	52
'16	1,375 <sup>주3)</sup>	80	1,170	-	123

※ 주1) 국비 58억 3,400만원, 시비 57억 4,100만원

주2) 국비 63억 5,000만원, 시비 63억 4,000만원

주3) 국비 6억원, 시비 7억 7,500만원

주4) 명시이월액 104억 2,000만원, 사고이월 6억 7,100만원

자료근거 : '17회계연도~'18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108억 9,300만원)과 사고이월(6억 8,300만원)된 예산현액이 있어 예산 집행에 선결요건이 발생될 경우,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18회계연도에 신곡수중보 철거 및 개방에 따른 수위하락이 통합선착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강**

**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10억원) 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 이미 직전회계연도로부터 100억원 이상 명시이월된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이 있어 '18회계연도내 예산집행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 사업의 선행요건에 해당되는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동일한 '18회계연도에 편성한 것은 예산의 한정성을 등한시한 채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 소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은 당초 국비(244억 6,700만원)와 시비(131억 2,200만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의 명칭변경 등에 따라 ①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예산현액 209억 6,600만원), ②치매 치료관리비지원(예산현액 25억 2,900만원), ③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예산현액 140억 6,200만원)으로 변경한 사업임
  
- 예산변경후 국비(139억 2,400만원)와 시비(70억 4,200만원)가 매칭된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예산현액(209억 9,600만원)중 34.5%, 72억 3,700만원이 ①보조금정산잔액(24억 6,500만원)과 ②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47억 7,000만원)을 사유로 불용된 바,

〈표 3-33〉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계	20,996	13,760	7,236	2,465	4,770	1
국비	13,924	9,154	4,770	-	4,770	-
시비	7,072	4,605	2,466	2,465	-	1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고, 변경된 이후에도 수 차례 국비가 변경된 것은 물론 당초 국비편성액(139억 2,400만원)보다 △ 34.3%, △47억 7,000만원이 감액 통보되어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4〉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국비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 내시 공문	변경전	변경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513 ('17.10.26)	-	13,924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197 ('17.12.13)	<b>13,924</b>	8,617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299 ('18. 6.12)	8,617	8,65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3164 ('18. 8.22)	8,653	<b>9,154</b>

- 안전총괄본부 소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예산현액 134억 300만원중 50.0%, 67억 1,2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공사를 제물포터널이 중첩되는 구간과 잔여구간으로 나누고, 중첩구간은 제물포터널을 공사중인 민간투자사업자(현대건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거절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17회계연도로부터 예산이 이월된 사업중 '18회계연도에 3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을 포함하여 14건, 709억 4,000만원으로 검토되는 바,
  
- 안전총괄본부 소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14억 800만원 중 68.9%, 147억 6,9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디지털3단지(가산동) 구간에 1개 토지소유사를 제외하고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지난 '17회계연도에도 토지소유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효력정지('18. 2.22까지)를 결정함에 따라 사고이월 된 사례가 있음
  - '18회계연도의 경우, 토지소유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 계획인가 처분 무효 및 집행정지” 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상고장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147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안전총괄본부 소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은 예산현액 100억 6,100만원중 83.0%, 83억 4,9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 지난 '17회계연도에도 100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을 구리시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19년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한 바, '20년도 이후에나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83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19년 12월 31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종료시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총 사업비 1,368억원중 '18회계연도까지 21억 7,700만원만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매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한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이월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5〉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19	2,247	-	-	2,247
'18	10,061	954	757	8,349
'17	11,276	1,064	10,061	150
'16	1,476	-	1,476	-
'15	380	79	300	1
'14	300	80	80	139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은 예산현액 710억 3,700만원중 10.4%, 73억 9,9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임

〈표 3-36〉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비고
계	71,037	47,479	13,006	3,153	7,399	
국비	18,480 <sup>주1)</sup>	7,724	204	3,153 <sup>주2)</sup>	7,399	“재원없는 불용”
시비	52,557	39,755	12,802	-	-	시비 잔액

※ 주1) 국비 162억 2,400만원 전년도이월액(명시이월) 22억 5,600만원

주2)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121 ('19. 1. 9) “20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요청”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재구성

- 동 사업의 경우, '17년 9월, 국토교통부 내시액(국비 162억 2,400만원)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정지연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국비교부액 감액을 통보하고 88억 2,500만원을 교부한 바, 당초 국비편성액 중 73억 9,900만원 부족 수령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됨

〈표 3-37〉 직전회계연도 이월 사업중 '18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사업현황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17→'18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18→'19 이월액
안전총괄본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5,298	21,408	14,769	69.0	3,640
안전총괄본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0,061	10,061	8,349	83.0	757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9,149	71,037	7,399	10.4	13,006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527	91,126	6,901	7.6	28,171
안전총괄본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9,203	13,403	6,712	50.1	4,200
도시교통본부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6,833	6,833	6,666	97.5	-
도시재생본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11,576	11,576	5,394	46.6	-
도시교통본부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3,292	5,060	4,863	96.1	-
안전총괄본부	고가차도 철거	4,830	14,730	3,807	25.8	9,850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9,357	17,407	3,056	17.6	7,09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52,716	207,116	3,019	1.5	61,803

#### ④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8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중 25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소관 **재정투융자금 예탁금**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액한 690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소관 부서는 불용사유를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미예탁한 것으로 제출함
  -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한 시점이 8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재정수요를 예측가능 하였을 것임에도 사업 부서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까지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 후 승인을 얻은 예산을 여유자금 부족으로 예탁하지 못한 것은 재정운용의 비계획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박물관과 소관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4,300만원 전액(전년도 명시이월액 29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임
  - 동 사업은 '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직전 회계연도로 부터 명시이월 된 29억 4,3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18년 1월부터 12월까지도 리모델링 설계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 안전총괄본부 소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은 예산현액 20억원(전년도 명시이월액 20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 사업부서는 은평새길 사업과 관련된 교통수요 재분석 용역이 종료되지 않아 동 사업의 '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용역 종료 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금 등의 용도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 해당 용역은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18년 3월 말에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 준공 이후에도 종로구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반대민원으로 동 사업의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여 의회가 사업취지 및 부서의 사업추진의지를 고려하여 명시이월을 승인하였음에도 사업을 정상추진하려는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한 결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소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HACCP인증을 원하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1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 확정내시가 없음을 알리는 공문이 있었고 소관부서 또한 '18년 1월에 이미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조정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국비 1,600만원은 전액 미교부 되어 이른 바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하였고, 시비 900만원은 전액 불용되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바
- 비록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 편성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중 예산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불용예상액을 세출재원 부족사업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38〉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도시재생본부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69,000	69,00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3,845	3,845
문 화 본 부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43	2,943
안전총괄본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000	2,000
물순환안전국	전기탈수기 시범사업	1,500	1,500
도시교통본부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1,000	1,000
관 광 체 육 국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474	474
도시교통본부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73	473
푸 른 도 시 국	공산근린공원(강서) 조성	300	300
경 제 정 책 본 부	양곡도매시장 이전 건립	200	200
문 화 본 부	강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00	200
문 화 본 부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100	100
안전총괄본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100	100
푸 른 도 시 국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시민참여)	100	100
서울혁신기획관	지하보도 공유공간 조성(시민참여)	60	60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매입비	55	55
서울혁신기획관	(가칭)청년드림센터 조성	50	50
주택건축본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41	41
복 지 본 부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새로운 도약(시민참여)	30	30
시 민 건 강 국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28	28
물순환안전국	민간위탁 물재생센터(탄천,서남) 외부회계감사	28	28
시 민 건 강 국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25	25
관 광 체 육 국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20	20
안전총괄본부	철도건널목(오류1, 향리3) 위탁관리	12	12
시 민 건 강 국	가축방역-살처분보상금(시비)	2	2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⑤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불용 등 검토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시민참여예산사업(217개 세부사업)은 예산액(545억 300만원)중 4.2%, 23억 100만원이 불용된 바, 10개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표 3-39〉 2018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수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17	54,503	49,955	91.7	2,247	2,301	4.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소관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은 결산결과 예산액 10억원중 36.1%, 3억 6,1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제출함
  - 그러나 ①사업시작 시기가 당초 3월에서 7월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②사업시작 지연으로 급식일 수도 당초 188일에서 109일로 축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인 바
  - 불용액 발생사유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한 **지출잔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킨 사례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초보엄마 육아지원(시민참여)**은 제안당시 영등포구에 한정하여 180명의 육아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수요를 파악한 결과 신청이 저조하여 당초계획보다 144명 축소된 36명 규모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 '18년 7월, 사업대상을 영등포구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10개 자치구만 신청하여 예산액 8억 6,800만원중 41.5%, 3억 6,0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음

■ 행정안전부 기준에는 행정주체의 자의로 계획변경 취소되거나, 행정객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미시행한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당초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범위를 영등포구만으로 한정하였다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였음에도 발생한 불용액을 단순히 **지출잔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일 수밖에 없어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18년 5월, 영등포구가 열린육아방을 설치해 부모와 영유아의 편의공간 및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8억 6,800만원)중 2억 3,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한 바

- 사업부서는 열린육아방 조성을 통해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고자 한 것일 수 있으나 시민의 제안 및 투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사업부서 판단으로 예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편성목간 전용을 한 것은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집행의 편의만 우선시된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예산의 변경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0〉 초보엄마 육아지원(시민참여)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초보엄마 육아지원 ( 시민 참여 )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68	△230		'18. 5.24	열린육아방 구성비 (리모델링) 지원
"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230		

- 아울러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사업의 실현가능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편성과정에서 검토하여야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나 사업부서가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 **송파구청 사거리 교통신호 케이블 지중화사업(시민참여)** 사업은 예산액 3억 9,600만원중 28.8%, 1억 1,4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제출하였음

- 그러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 ①**결산서**에는 **지출잔액**으로 기재하여 제출되었으나 ②**사업부서**는 굴착복구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제출하였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③**동부도로사업소**는 굴착승인이 불허되어 일부 **공사를 못한 것**으로 제출한 바,

- 불용액이라는 동일 결과에 대해 발생원인을 각각 상이하게 파악하여 제출하고 있어 동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의 발생사유는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부도로사업소는 “「송파구청사거리 교통신호케이블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를 통해 도로관리청 굴착승인 불허 및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변경 및 보험료, 제경비 정산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를 제출한 바

- 동 사업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지출잔액**으로 표기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관 **연신내 물빛 마을마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시민참여)**은 주민 민원으로 예산액 1억원 전액이 불용된 바

- 은평구 물빛공원내 구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한 후 공원이용프로그램 안내, 생태정보, 건강 및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선정한 것임

- 지역참여형 사업은 자치구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나 동 사업은 오히려 전광판 설치시 보행공간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참여예산 선정시 대상 지역의 현실이 보다 명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새로운 도약(시민 참여)** 사업은 노후된 강서푸드뱅크마켓의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18년 6월 강서푸드뱅크마켓과 공항경로당 및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하여 강서복지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예산액 3,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소요예산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1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 추진 중단에 따른 감액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됨
  
- 특히,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추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은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시민참여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회계연도중 집행불가 사유가 확실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한정된 세출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자치구·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3-41〉 시민참여예산사업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용액 <sup>주1)</sup>	불용률 <sup>주2)</sup>
평생교육국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 시민 참여 )	1,000	361	36.1
여성가족 정책실	초보엄마 육아지원 ( 시민 참여 )	868	360	41.5
기후환경본부	자연순환마을만들기 ( 시민 참여 )	285	123	43.0
도시교통본부	송파구청사거리 교통신호케이블 지중화사업 ( 시민 참여 )	396	114	28.8
푸른도시국	연신내물빛마을마당 환경개선정비사업 ( 시민 참여 )	100	100	100.0
일자리노동 정책관	취준생을 위한 강소기업탐방과 인사담당취업특강 ( 시민 참여 )	240	88	36.7
서울혁신 기획관	지하보도공유공간조성 ( 시민 참여 )	60	60	100.0
도시교통본부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설치 ( 시민 참여 )	100	37	37.0
주택건축국	승강기회생제동장치 설치비지원 ( 시민 참여 )	100	24	24.0
복지본부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새로운도약 ( 시민 참여 )	30	30	100.0

※ 주1) 불용액의 경우, 큰 금액 순으로 작성함

※ 주2) 불용률의 경우, 20% 미만은 포함하지 않음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⑥ 공기업특별회계 불용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예산현액(8,282억 1,000만원)의 9.0%, 745억 4,100만원이 불용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1조 2,025억 3,500만원)의 6.0%, 722억 7,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42〉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18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sup>주1)</sup>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계	2,022,535	8,210	2,030,745	1,638,757	245,172	0	146,816	7.2
수 도 사 업	820,000	8,210	828,210	736,536	17,133	0	74,541	9.0
공 기 업 하수도사업	1,202,535	0	1,202,535	902,221	228,040	0	72,275	6.0

※ 주1)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액 포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전입금을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경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불용액이 발생되어도 다음연도에 동일 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환원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불용액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사료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8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745억 4,000만

원) 중 **예산집행잔액**(43.2%, 322억 5,200만원)과 **낙찰차액**(27.6%, 205억 9,100만원)이 높게 나타나는 바 실행 가능한 예산규모보다 과다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건별로 원인을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적정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3〉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사유 ('18~'17)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산현액	불 용 액	발생사유 <sup>주2)</sup>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 비 비 잔 액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2018	828,209	74,540	16,408	-	3,760	1,527	20,591	32,252
	(100.0)	(9.0) <sup>주1)</sup>	(22.0)	-	(5.0)	(2.0)	(27.6)	(43.2)
2017	818,209	70,160	3,426	227	6,451	6,737	14,066	39,250
	(100.0)	(8.6) <sup>주1)</sup>	(4.9)	(0.3)	(9.25)	(9.6)	(20.1)	(55.9)

※ 주1)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비율

주2) 전체 불용액 대비 발생사유별 비율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하면 예비비를 제외한 총 68개 세부사업중 66개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불용액 발생비율이 10% 미만에 해당되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체 불용액중 기본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와 예비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제외할 경우, 사업비성 불용액(652억 7,500만원)의 69.7%(450억 4,500만원)가 1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바,

- 해당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라 할지라도 불용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은 예산현액 (41억 5,900만원)의 87.8%, 36억 5,100만원이 불용된 바,

- 환경부는 '15년 5월,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광암정수장 취수원 이중화 사업에 대해 착수시기 ('20년도 이후)와 사업내용에 조건을 붙여 승인하였으나,

- 환경부에 추가적인 협의 등이 없이 '16회계연도부터 광암정수센터 이중화사업을 추진하여 '17년 1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를 통보받아 기존에 추진하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타절준공 하고, 36억 5,1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사업은 예산현액(47억 900만원)의 50.7%가 불용되었으나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절감, 낙찰 차액, 집행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는 불용액 발생사유별 용어설명 및 사례가 기재되어있지 않아 사업부서가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불용사유를 분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자문단 운영을 통한 홍보사업 전반의 효과분석 및 검증절차 진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



으며 홍보효과가 낮은 광고물 송출사업 등 일부 사업추진을 중단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하며, 불용액 발생사유 또한 **예산절감,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결산서상 기재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중 불용액조서 원인별 사유에는 **낙찰차액**은 분류유형에 없음에도 동 사업의 불용액중 일부를 **낙찰차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불용액조서 원인별 사유중 **예산집행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임의 변경하여 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표 3-44〉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중 불용액조서 원인별 사유 작성예시

예산액	불용액	원 인 별					비율(%)	비고
		계획변경 취 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예 비 비 액		

※ 행정안전부,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p.133

- 사업부서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동 기준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결산결과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182억 5,000만원)의 43.3%, 79억 800만원이 불용된 바,

- 불용액 중 동일 공법을 이용하여 '16회계연도~'17회계연도에 실시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18년 11월, 공법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48억 5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임
- 동 공사의 공법을 취소함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가 감소되었으나 관련 공법의 하자발생이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향후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45〉 동일공법이 적용된 공사 하자발생 현황

(단위 : m<sup>2</sup>, %)

공사연도	공사명	하자내용	시공물량	하자면적(비율)
'16	공릉배수지(3,4호)	· 패널오염 · 줄눈 간격불량 등	9,217	16.3 (0.18)
	광암정수지(9호지)	· 타일 들뜸 등	3,426	56.5 (1.65)
'17	광암정수지(10호지)	· 타일 들뜸 등	3,426	9.5 (0.28)
'16	홍은배수지(1호지)	· 도장기포, 녹물유출 · 도장박리 등	965	4.15 (0.43)

※ 자료근거 :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17998 ('18.10. 2) “배수지 내부방수방식 조치계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은 예산현액(177억 4,700만원)의 24.7%, 43억 9,200만원이 불용된 바,
  - 사업부서는 '18회계연도에 15mm기준 수도계량기(수도미터)예산편성 단가를 '17회계연도와 동일한 3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업체간 경쟁에 따라 실제 구매 평균단가가 16,230원에 구매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가 작성한 '17년 수도계량기 가격변동 현황에는 '17년 3월, 3만 5,000원에 구매하였으나 '17년 8월, 18,990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17년 10월에 구매한 소형수도계량기 구매(18차)에서도 15mm 수도계량기를 책정단가보다 20,970원 낮은 14,030원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 '18회계연도부터는 수도계량기 구매 단가를 '17회계연도에 편성한 3만 5,000원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집행 가능한 예산규모보다 과다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구매 단가부터 정밀하게 산정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현액(258억 3,100만원)의 21.7%, 55억 9,600만원이 불용된 바,

- 광암정수지 내부방수방식 공사의 경우에도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생한 방수공사와 같은 특허공법에 따른 하자발생을 사유로 공법선정이 취소되어 2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91억 6,400만원)의 38.3%, 35억 1,3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중 자산취득비 29억 1,600만원이 편성된 **암사정수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의 경우, 암사정수장내 염소투입실 700m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사고시 위험요소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염소투입실 이전부지를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으나,
- 염소가스 누출에 대비한 중화 설비 등이 '18년 7월부로 개선 완료됨에 따라 염소투입실 안전이 확보되어 토지취득 및 이전이 불필요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임

〈표 3-46〉 사업비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 관리	18,250	10,007	333	7,908	43.3
정수장 시설 유지 보수	25,831	20,011	224	5,596	21.7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62,392	48,947	7,853	5,591	9.0
수도계량기 교체	17,747	12,985	369	4,392	24.7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4,159	508	-	3,651	87.8
정수장 시설 정비	21,125	17,498	-	3,627	17.2
노후 상수도관 (배급수관) 정비	48,542	45,112	-	3,429	7.1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9,164	4,760	890	3,513	38.3
노후 밸브 정비	26,210	23,543	-	2,666	10.2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4,709	1,838	481	2,389	50.7

※ 주1) 사업비중 불용액 발생규모순 발췌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8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722억 7,5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50.3%, 363억 3,200만원)과 **계획변경취소**(22.4%, 162억 1,300만원)이 높게 나타나는 바 실집행 가능한 예산규모보다 과다 편성한 결과일 수 있어 집행잔액 발생건별에 원인을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출 예산의 적정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sup>주2)</sup>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액
2018	1,202,535	72,275	16,213	5,610	5,396	36,332	8,721
	(100.0)	(6.0) <sup>주1)</sup>	(22.4)	(7.8)	(7.5)	(50.3)	(12.1)

※ 주1)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발생비율

주2) 전체 불용액 대비 발생사유별 비율

○ '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검토하면 예비비를 제외한 총 282개 세부사업중 255개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불용액 발생비율이 10% 미만에 해당되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체 불용액중 기본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와 예비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할 경우, 사업비성 불용액(679억 1,300만원)의 64.6%(438억 8,700만원)가 1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바

- 해당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라 할지라도 불용액의 절대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내에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경기도와 고양시로부터 승인받고 보전부담금 117억 7,300만원중 38억 4,5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자 편성한 것이나,
  -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난지물재생센터내 불법건축물(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부분)을 철거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승인을 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것임
  
- **전기탈수기 시범사업**은 예산현액(15억원)의 100.0%, 15억 원이 불용된 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19. 3.28)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전력 과다사용, 드럼의 잦은 흠집 발생,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부적합 등 시범사업 추진은 부적합한 것으로 ’18년 10월 의결하여 전액 불용한 것임

〈표 3-48〉 사업비중 주요 집행잔액 발생 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126,300	42,890	63,110	20,298	16.1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3,845	-	-	3,845	100.0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13,003	9,431	-	3,571	27.4
암사역 주변 침소해소	7,302	3,820	-	3,481	47.7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82,599	79,130	-	3,468	4.2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50,159	46,651	209	3,299	6.6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4,872	42,955	-	1,916	4.3
전기탈수기 시범사업	1,500	-	-	1,500	100.0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유역경계조정)	8,000	6,236	-	1,368	17.1
목동 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	4,000	2,856	-	1,143	28.6

※ 주1) 사업비중 불용액 발생규모순 발췌



## (2)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변경(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 및 부서간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225건, 3,126억 4,700만원의 이체가 발생됨

〈표 3-49〉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225	312,647	△312,647
일 반 회 계	204	225,767	△225,767
특 별 회 계	21	86,880	△86,880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표 3-50A〉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증	감	증	감	
계	225	△225	312,647	△312,647	
경제진흥본부	71	△71	41,918	△41,918	경제진흥본부내 조직변경
관광체육국	4	△4	4,890	△4,890	관광체육국내 조직변경
도시공간개선단	-	△17	-	△1,213	도시공간개선단→문화본부 (△17건, △12억 1,3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	△3	-	△414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총괄본부 (△3건, △4억 1,400만원)
도시재생본부	9	△9	3,688	△3,688	도시재생본부내 조직변경
시민소통기획관	5	△5	1,281	△1,281	시민소통기획관내 조직변경
문화본부	28	△11	25,589	△24,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본부내 조직변경 (11건, 243억 7,600만원)</li> <li>■ 도시공간개선단→문화본부 (17건, 12억 1,300만원)</li> </ul>
여성가족정책실	24	△22	69,570	△66,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정책실내 조직변경 (22건, 663억 1,200만원)</li> <li>■ 평생교육국→여성가족정책실 (2건, 32억 5,800만원)</li> </ul>

〈표 3-50B〉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증	감	증	감	
안 전 총 괄 본 부	19	△41	44,020	△117,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총괄본부내 조직변경 (11건, 429억 7,000만원)</li> <li>■ 기술심사담당관→안전총괄본부 (5건, 6억 3,500만원)</li> <li>■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총괄본부 (3건, 4억 1,400만원)</li> <li>■ 안전총괄본부→도시교통실 (△30건, △748억 5,000만원)</li> </ul>
정 보 기 획 관	4	△4	1,117	△1,117	정보기획관내 조직변경
지 역 발 전 본 부	5	△5	13,336	△13,336	지역발전본부내 조직변경
푸 른 도 시 국	14	△14	4,379	△4,379	푸른도시국내 조직변경
기 술 심 사 담 당 관	-	△5	-	△635	기술심사담당관→안전총괄실 (△5건, △6억 3,500만원)
행 정 국	12	△12	28,006	△28,006	행정국내 조직변경
평 생 교 육 국	-	△2	-	△3,258	평생교육국→여성가족정책실 (△2건, △32억 5,800만원)
도 시 교 통 본 부	30	-	74,851	-	안전총괄본부→도시교통본부 (30건, 748억 5,100만원)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예산의 이체가 발생되면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사업을 이관 받는 부서로서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은 '18년 11월 문화융합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예산현액(42억 9,400만원) 전액이 이체된 바,
  - 이미 직전회계연도로부터 15억 6,5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한 불용액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29.5%, 12억 6,500만원만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50.7%, 21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경제진흥본부 소관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비 4억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8억 7,000만원을 경제정책과에서 거점성장추진단으로 이체된 것이나 '18년 11월 설계공모 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체된 시설비 4억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경제진흥본부 소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사업은 시설비 21억 2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2억 3,200만원을 문화융합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체 한 바,
  - 이미 직전회계연도로부터 8억 6,2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예산현액

(22억 3,200만원) 중 87.9%, 19억 6,100만원도 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어 현액으로 관리되는 예산이 포함된 이체일 경우,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에 보다 적극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체된 예산중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을 용인할 것인지 불용처리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 보다 합리적인 예산관리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할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18년도 서울시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8조는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지난 2014회계연도 이후 2018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된 바 없음

#### (4)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98건, 125억 3,200만원이 전용된 바, 이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36조 5,478억 6,600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17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49건 감소하고, 전용액도 직전 회계연도(274억 9,700만원)보다 △149억 6,500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75건, 85억 6,400만원을 전용한 바, 직전회계연도보다 26건, △64억 4,700만원 감소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총 23건, 39억 6,800만원이 전용된 바, 지난 2017회계연도보다 △23건, △85억 1,8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예산의 변경요인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표 3-51〉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06	16,477	149	30,490	132	43,989
일 반 회 계	75	8,564	101	15,011	94	30,403
특 별 회 계	31	7,913	48	15,479	38	13,586
기타특별회계	23	3,968	46	12,487	33	10,975
공기업특별회계 <sup>주1)</sup>	8	3,945	2	2,992	5	2,611

※ 주1) ①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이 정하는 예산 전용 기준에 따라 분류

②'18. 1. 1부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③'16.12.31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사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벗어난 전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표 3-52〉 예산 전용의 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가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다만,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써 당해 회계연도내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적인 적용이나

- 의회가 이미 당해연도 예산을 의결하여 확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가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회계연도중 전용을 통해 자체 수정하는 편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 의결·확정된 예산에 대한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전용발생 건수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임

〈표 3-53〉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 · 본 부 · 국	전 용 건 수	전 용 액	구 성 비
계	106	16,477	100.0
서울혁신기획관	5	300	1.8
시민소통기획관	1	54	0.3
여성가족정책실	10	619	3.8
일자리노동정책관	4	1,938	11.8
비상기획관	1	14	0.08
기획조정실	3	212	1.3
경제진흥본부	12	1,477	9.0
복지본부	7	2,037	12.4
도시교통본부	2	26	0.16
문화본부	6	107	0.6
기후환경본부	3	171	1.0
행정국	1	4	0.02
재무국	1	270	1.6
평생교육국	2	284	1.7
관광체육국	3	99	0.60
시민건강국	7	91	0.55
도시공간개선단	1	223	1.4
안전총괄본부	2	268	1.6
도시재생본부	2	296	1.8
주택건축국	1	100	0.61
물순환안전국 <sup>주1)</sup>	5	829	5.0
지역발전본부	1	45	0.27
소방재난본부	2	2,415	14.7
도시기반시설본부	2	2	0.01
상수도사업본부 <sup>주2)</sup>	4	3,136	19.0
한강사업본부	2	120	0.7
교통방송	14	1,183	7.2
의회사무처	2	155	0.9

※ 주1) 일반회계 전용 건수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전용 건수 합계

주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전용 현황

- 예산의 전용이 예산운용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전용을 통해 부적정한 세출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 등을 회피할 의도로 전용한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 예산을 전용할 경우, 적정한 세출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전용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용사례를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은 「2018 주민자치주간 기념 지방분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전용하여 행사 준비·기획 및 진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3-54〉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79,900	△15,000	0	'18.10.25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무관리비	110,000	0	15,000	

- 사업부서로서는 관련 토론회를 일반용역으로 판단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한 사안 일수도 있으나
  
- 이미 사업부서가 토론회 운영용역을 위해 재무과에 수의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관련 계획에도 “전문 기획사 선정·대행”을 명시하고 있어 행사에 대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용역에 “행사용역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바,
  - 단순용역이 아닌 사실상의 행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행정안전부 훈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됨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은 「공정무역도시, 서울」 달성 기념 포럼을 추진하고자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1,7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18년 7월, 행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5〉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83,900	△17,800	0	'18. 6.27
”	사무관리비	27,700	0	17,800	

- 동 전용 사례의 경우, 전용 자체에는 회계적 오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안전부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위한 행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행정안전부 훈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통계 분석관리**는 서울시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중 1억 9,500만원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전용 승인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다수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56〉 재정통계 분석관리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83,315,000	△195,000	0	'18. 3.26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28,480	0	195,000	

- 첫째, 사무관리비 지출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지출함으로써 예산편성기준 등을 위반한 집행사례로 판단됨
  - 전용계획중 전용사유로 기재한 ‘서울시 및 투자, 출연·출자기관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계약업체로 하고 있는 바
  - 해당기관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으로 정한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등이 정한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단순조사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일반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동 용역의 결과보고를 확인하면, 참고문헌을 제외한 총 277쪽의 분량중 “전략적 대응방안”에 100쪽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단순조사나 통계가 아님에도 이를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집행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만일 법령 등이 정하는 연구용역비로 지출할 경우, 학술용역심의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회피할 의도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다는 오해도 제기될 수 있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법령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를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한 이후 추경으로 재원을 다시 확보하는 재정운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의 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에 해당되는 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중 1억 9,500만원을 다른 컨설팅 용역에 지출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출연이며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사유로 법정출연금중 일부를 전용하여 재원을 긴급히 임시용통 하여야 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동 출연금중 일부를 전용으로 감액 승인('18. 3.26)하고, '18년 8월16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시 편성한 바 있어 향후 법정·필수적 경비에 대해 유사한 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소관 **박물관 활성화 지원**은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18년 10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을 통해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18년 11월, 사무관리비를 지출원인행위(4,850만원)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7〉 박물관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박물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50,000	0	'18.10. 7
”	사무관리비	114,000	0	50,000	

- 사무관리비는 단순조사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일반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 사업부서는 동 컨설팅 용역은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리모델링 지침 등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반용역’이라고 회신하였으나

- 동 전용 건과 관련된 용역계획 및 과업내용서를 검토하면, ①국내외 음식문화 시설 운영 사례 분석, ②음식문화 공간으로서 적정한 시설·공간구성 방안 제안, ③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④음식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⑤음식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제안 등을 과업범위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동 컨설팅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결과보고에 기술된 ①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 ②공간리모델링은 일반용역에 해당될 것이나 ③운영체계는 일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전략적 대응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동 용역이 단순조사나 통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산 집행기준 등을 위반한 지출사례로 판단됨
  
- 예산의 전용이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재정지출에 대해 회계연도중 사업부서 차원에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대안일 수 있으나
  
-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재량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전용을 통해 실·본부·국 판단으로 전용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추경으로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경우,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65억 7,800만원)중 17억원을 전용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117억 4,000만원)에서 발생하는 부족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벗어난 전용 사례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전용사례의 경우, 우리 의회가 당초 편성 요청된 예산안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의결한 것임에도 사업부서가 의결된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보다 120% 초과하여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예산부족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됨
  - 실제로 자치단체경상보조(117억 4,000만원)의 경우, '18년 2월부터 7월까지 기편성된 예산액의 89.9%, 105억 1,500만원을 자치구로 지급함으로써 이미 상반기에 예산부족이 확실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전용된 17억원이 기편성된 예산과목(117억 4,000만원)대비 14.5%에 해당되어 전용으로 자체 융통하기 보다는 '18년 8월 16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동 사업의 변경요인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액을 경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청년 인생설계 학교**의 경우, '18년 5월, 동일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전용을 통해 사무관리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8〉 청년 인생설계 학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청년 인생설계 학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0	'18. 5.31
"	사무관리비	100,000	0	200,000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18년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각각 △1억원을 삭감하여 의결한 바
- 의회의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도록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은 증액요청을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전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전용을 통해 확보된 사무관리비의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8년 8월과 12월에 해당 출연기관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와 직결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대행추진한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운영 용역”은 행정사무와 직결되는 “소규모 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전용사례는 세출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거나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우선시 하여 사업내용을 단순 소규모 용역으로 축소 포장하여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부적절한 지출 사례로 사료됨
- 경제진흥본부 소관 **디지털대장간 운영**의 경우에도 '18년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중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의결하였으나 '18년 6월,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전용을 통해 민간위탁금 5,100만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9〉 디지털대장간 운영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1,000	△51,000	0	'18. 6.14
디지털대장간 운영	민간위탁금	309,000	0	51,000	

- 동 전용 사례의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라 할지라도 지출이 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삭감된 내용과 전용으로 추진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통계목에 대해 전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시민참여예산 사업중 2개 사업이 세출과목(자치단체자본보조)을 신설하여 전용한 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초보엄마 육아지원(시민참여)**은 '18년 5월,

기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2억 3,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  
보조로 전용한 것이며

〈표 3-60〉 초보엄마 육아지원(시민참여)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초보엄마 육아지원(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8,800	△230,000	0	'18. 5.24
"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230,000	

- 경제진흥본부 소관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시민참여)**은 '18년 5월, 기편성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 전액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한 것임

〈표 3-61〉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 운영(시민참여)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창업 아이디어 메이커스운영 ( 시민 참 여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	△200,000	0	'18. 5.11
"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200,000	

- 행정안전부는 전용을 통해 당초 편성되지 않은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편성목에 차이가 있고, 편성목은 세부사업의 경비 성질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전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에 대규모 수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전용이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운용방안이라 할지라도 편성목을 신설하는 전용은 당초 예산의 의결취지와 상이한 예산집행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예산안 심사과정이라 할지라도 시의회가 추가적인 증액을 요구하거나 예산과목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바, 향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의 재량으로 전용을 통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예산집행방식을 수정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해 경정하거나 감액조정후 재정사업으로 신설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①사업담당자의 변경내역서 작성, ②실·본부·국장의 결정, ③변경내역에 대한 예산부서 통보만으로 처리되는 바,
- 전용보다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계는 있으나, 예산부서 심사나 자치단체장의 승인과정이 없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융통에 대한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재정운용제도로 사료됨

- 문화본부 소관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의 경우, '18년 10월, 자치단체자본보조 62억 4,000만원 전액을 세출과목(시설비)신설을 통해 변경한 것임

〈표 3-62〉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관련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변경 승인일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240,000	△6,240,000	0	'18.10. 8
"	시설비	0	0	6,240,000	

- 기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62억 4,000만원)를 시설비로 변경한 것은 당초 구립시설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시·구립시설을 복합건립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자치구로 재배정하고자 동 사업의 예산현액 전액을 변경한 것으로 변경과 관련된 회계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변경 사례의 경우, '18년 8월,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49억 6,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이미 '18년 7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경 당시 기편성된 세출과목도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경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부서는 추경이후 수개월이 경과된 '18년 10월이 되어 서야 '18년 7월 변경된 사업계획을 예산과목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부서 결정으로 예산을 변경한 바, 예산편성 오류를 예산의 변경

을 통해 정정한 것은 제도운용의 취지를 남용한 사례로 사료됨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경우, '18년 3월, 사무관리비중 3억 3,300만원에 대해 ①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2억 2,300만원)하고, ②공공운영비로 변경(1억 1,000만원)한 바

〈표 3-63〉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전용·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승인일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96,000	△333,006	0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0	0	223,006	'18. 3.26 (전용)
"	공공운영비	60,000	0	110,000	'18. 3.26 (변경)

- 시의회가 당해연도 예산을 의결하고, 채 수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당초 사업부서가 편성요청하지도 않은 ①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급필요를 제기한 것은 물론 아직 2~4분기가 남아 있음에도 전기요금 부족분을 제기하며 전용 및 변경한 것은 예산변경의 취지가 예산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확정 이후 발생하는 문제까지 치유하라는 제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18년 3월, 3억 3,300만원을 다른 통계목으로 전용 및 변경하였음에도 동년 7월,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변경을 통해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3-64〉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관련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변경 승인일
자 체 공 간 기 획	사 무 관 리 비	200,000	△100,000	0	'18. 7. 2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 무 관 리 비	762,994	0	100,000	

- 사무관리비를 이미 다른 과목으로 전용 및 변경한 이후 다시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변경을 통해 사무관리비를 확보하는 것은 '돌려막기식' 예산운용사례일 수 있어 향후 변경제도를 남용하는 재정운용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 명시이월 관련

### 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 36조 5,478억 6,600만원 중 1.7%, 6,303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6,303억원)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5〉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합 계	36,547,866	630,300 <sup>주1)</sup>	1.7
일 반 회 계	25,477,177	102,533	0.4
기 타 특 별 회 계	9,039,943	436,210	4.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30,745	91,556 <sup>주2)</sup>	4.5

※ 주1) '18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18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인정되고 있음

- 서울시는 '18회계연도 결산서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까지 “명시이월액”(6,303억원)의 일부로 기재하고 있어 결산결과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18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한 것이며, 동 기준은 명시이월이 인정되지 않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까지 “명시이월액”을 기재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과 합산하도록 작성서식을 부정확하게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로서는 결산서 작성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작성서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건설개량이월액”을 기재하고, 건설개량이월액의 합계가 명시이월과는 별도로 산정되도록 하여 이월의 실체가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수한 명시이월에 한정할 경우, '18회계연도에는 5,387억 4,4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 우리 시의회는 '19년도 예산심사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18회계연도 중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14개 세부사업, 296개 통계목에 대해 5,759억 9,700만원의 명시이월

을 의결('18.12)한 바 있으나,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206개 세부사업, 286개 통계목에 대해 승인액(5,759억 9,700만원)보다 △372억 5,300만원 감소된 5,387억 4,400만원을 실제 명시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표 3-66〉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통계목 기준)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합 계 ① + ②	36,547,866	301	630,300 <sup>주1)</sup>	1.7
명시이월 (계) ①	34,517,121	286	538,744 <sup>주2)</sup>	1.5
일반회계	25,477,177	124	102,533	0.4
기타특별회계	9,039,943	162	436,210	4.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18,187	7	55,756	4.2
교통사업특별회계	1,722,351	35	53,744	3.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7,079	9	108,335	28.7
주택사업특별회계	1,873,094	3	2,617	0.1
도시개발특별회계	1,691,703	106	215,561	1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6,326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803	2	195	0.6
소방안전특별회계	840,398	-	-	-
건설개량이월 (계) ②	2,030,745	15	91,556	4.5
공기업특별회계	2,030,745	15	91,556	4.5
수도사업특별회계	828,209	1	1,500	0.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2,535	14	90,056	7.4

※ 주1) '18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자료근거 : ① 2018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등 재구성

〈표 3-67〉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18~'16)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통계목 기준)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2018	합계 ①+②+③		36,547,866	301	630,300 <sup>주1)</sup>	1.7
	명시이월	소계 ①+②	34,517,121	286	538,744 <sup>주2)</sup>	1.5
		일반회계 ①	25,477,177	124	102,533	0.4
		기타특별회계 ②	9,039,943	162	436,210	4.8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30,745	15	91,556 <sup>주3)</sup>	4.5
2017	합계 ①+②+③		32,916,151	133	237,104	0.7
	명시이월	소계 ①+②	32,097,942	133	237,104	0.7
		일반회계 ①	22,818,685	64	68,095	0.2
		기타특별회계 ②	9,279,257	69	169,008	1.8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818,209	-	- <sup>주3)</sup>	-
2016	합계 ①+②+③		30,604,138	340	529,622	1.7
	명시이월	소계 ①+②	29,794,528	340	529,622	1.7
		일반회계 ①	21,299,027	176	161,020	0.7
		기타특별회계 ②	8,495,501	164	368,602	4.3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809,610	-	- <sup>주3)</sup>	-

※ 주1) '18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주3) '18회계연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건설개량이월액 915억 5,6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17회계연도와 '16회계연도에는 건설개량이월 없음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등 재구성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현충근린공원(동작) 조성**을 포함한 8개 세부사업은 '19년도 예산심사시 서울시의 제출안대로 시의회가 명시이월을 승인한 것이나,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로는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것임
- 아울러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풍납토성 복원**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도 서울시의 제출안대로 의회가 명시이월을 승인한 것이나, 실제 명시이월액은 승인액보다 △10억원 이상 감소된 것임
- 명시이월 승인액보다 실제 명시이월액이 감소되는 사례는 회계연도 중 지출을 마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지연이 최소화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 받은 명시이월액보다 실제 명시이월액이 감소된 것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명시이월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요인에 해당되는 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명시이월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부서는 명시이월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 예산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명시이월이 필요한 규모를 정밀히 산정하여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의회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시설비 1억 3,2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소요예산(1억 3,200만원)은 실제 명시이월 되지 않고 전액 불용된 바,

- 사업부서는 당초 명시이월을 통해 한남오거리 등 주요 교통혼잡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나, 한남2고가차도 철거가 연기되어 별도의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승인받은 소요예산(1억 3,2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은 한남2고가차도 철거연기가 결정된 시점('18. 7.11)과 별도의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된 시점('18.11.26)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적어도 본예산 심사시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사업부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승인액 전액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월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명시이월을 승인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68〉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승인액 (가)	이월액 (나)	증감액 (다)-(나)-(가)	증감률 (다)/(가)
푸른도시국	현충근린공원 (동작) 조성	1,163	1,119	1,158	-	△1,158	△100.0
안전총괄본부	한강대교 외 2개소 우물통 보수보강공사	5,716	5,123	1,100	-	△1,100	△100.0
"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주변 도로(보도) 확장	800	798	170	-	△170	△100.0
"	서울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324	324	168	-	△168	△100.0
푸른도시국	공원 내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700	518	163	-	△163	△100.0
도시교통본부	한양도성안 도로 공간재편(퇴계로)	1,271	980	159	-	△159	△100.0
안전총괄본부	교차로 구조개선	229	83	132	-	△132	△100.0
도시교통본부	한양도성안 도로 공간재편(세종대로)	140	98	91	-	△91	△100.0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없음)



〈표 3-69〉 명시이월 승인액 대비 이월액이 △1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승인액 (가)	이월액 (나)	증감액 (다)-(나)-(가)	증감률 (다)/(가)
문 화 본 부	풍납토성 복원	142,242	108,207	25,300	20,392	△4,907	△19.3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조성	52,197	31,523	20,065	16,272	△3,793	△18.9
안전총괄본부	양재대로 구조개선	10,000	7,164	6,200	2,765	△3,434	△55.3
도시개발사업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	71,037	47,479	15,680	12,455	△3,224	△20.5
푸른도시국	명일근린공원 (강동) 조성	10,841	8,095	4,891	2,745	△2,145	△43.8
안전총괄본부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설	40,974	38,691	4,220	2,256	△1,963	△46.5
푸른도시국	도곡근린공원 (강남) 조성	3,568	2,810	2,697	758	△1,939	△71.8
안전총괄본부	밤고개로 확장	13,190	9,241	5,214	3,948	△1,266	△24.2
푸른도시국	현충근린공원 (동작) 조성	1,163	1,119	1,158	-	△1,158	△100.0
안전총괄본부	한강대교 외 2개소 우물통 보수보강공사	5,716	5,123	1,100	-	△1,100	△100.0
복지본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7,102	4,840	2,976	1,976	△1,000	△33.6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없음)

〈표 3-70A〉 주요 명시이월 사업현황 (명시이월액 4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도시개발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9,286	26,027	50,278	63.4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 ~의정부시계) 확장	95,031	50,327	43,794	46.0
도시개발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7,115	131,407	22,221	10.7
도시개발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29,477	7,488	20,950	71.0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142,242	108,207	20,392	14.3
도시교통본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18,763	1	18,761	99.9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 조성	52,197	31,523	16,272	31.1
안전총괄본부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34,536	19,071	15,465	44.7
도시개발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1,037	47,479	12,455	17.5
경제진흥본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38,236	11,260	11,119	29.0
안전총괄본부	고가차도 철거	14,730	1,073	9,850	66.8
물순환안전국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설치	37,855	28,359	9,406	24.8
안전총괄본부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 개설(암사대교건설)	8,147	473	7,674	94.1
푸른도시국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	7,500	26	7,470	99.6
도시교통본부	서울 C-ITS 실증사업	7,700	504	7,195	93.4
문화본부	평창동 미술 문화 복합 공간 건립	7,425	302	7,123	95.9
안전총괄본부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7,407	7,253	7,097	40.7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없음)

〈표 3-70B〉 주요 명시이월 사업현황 (명시이월액 4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복 지 본 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8,017	10,366	6,892	38.2
푸 른 도 시 국	암 사 역 사 공 원 조 성	13,901	3,034	6,707	48.2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126	56,052	6,436	7.0
지역발전본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7,842	147	6,183	78.8
안전총괄본부	신림 ~ 봉천 터널 건설	31,292	25,400	5,891	18.8
문 화 본 부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18,440	9,069	5,368	29.1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16,495	11,138	5,241	31.7
문 화 본 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5,134	18,908	5,049	20.0
도시재생본부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 사업 추진	21,322	12,503	4,579	21.4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9,389	4,825	4,481	47.7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 의료센터 건립	8,490	785	4,402	51.8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30,874	18,563	4,310	13.9
안전총괄본부	금호로 확장	8,625	4,336	4,239	49.1
안전총괄본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3,403	2,490	4,200	31.3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0,000	5,669	4,109	41.0
도시교통본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10,653	4,825	4,066	38.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13,974	4,690	4,000	28.6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없음)

○ 또한, '18회계연도 결산결과 27개 세부사업은 명시이월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도 10억원 이상 발생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경제진흥본부 거점성장추진단 소관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을 포함한 8개 세부사업에서 명시이월 이외에 사고이월도 10억원 이상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을 포함한 19개 세부사업에서 명시이월 이외에 1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이월액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71〉 명시이월 이외에 사고이월도 10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경제정책본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	38,236	11,260	11,119	29.0	14,842	38.8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 의료 센터 건립	8,490	785	4,402	51.8	2,893	34.0
복지본부	시립 북부 장애인 복지 관 증 축	3,849	655	837	21.7	2,356	61.2
푸른도시국	공원 안전 시설 보수 및 정비	16,912	12,164	2,638	15.5	2,051	12.1
푸른도시국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6,157	13,127	143	0.8	1,408	8.7
푸른도시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10,724	6,221	3,094	28.8	1,231	11.4
관광체육국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 보수	11,547	8,602	1,550	13.4	1,214	10.5
푸른도시국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6,261	3,579	1,216	19.4	1,083	17.2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없음)

〈표 3-72〉 명시이월 이외에 사고이월도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7,115	131,407	22,221	10.7	39,582	19.1
도시개발사업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126	56,052	6,436	7.0	21,735	23.8
문화본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745	8,158	200	0.8	14,718	61.9
도시개발사업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30,874	18,563	4,310	13.9	7,152	23.1
안전총괄본부	월드컵 대교 건설	51,185	42,982	1,927	3.7	6,251	12.2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13,974	4,690	4,000	28.6	5,232	37.4
푸른도시국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12,359	4,831	1,900	15.3	5,118	41.4
푸른도시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13,901	3,034	6,707	48.2	4,087	29.4
도시재생본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1,322	12,503	4,579	21.4	3,911	18.3
문화본부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18,440	9,069	5,368	29.1	3,888	21.0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조성	52,197	31,523	16,272	31.1	3,522	6.7
도시개발사업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9,286	26,027	50,278	63.4	2,979	3.7
푸른도시국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	45,700	39,594	2,033	4.4	2,864	6.2
안전총괄본부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16,402	12,107	1,623	9.8	2,393	14.5
푸른도시국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10,956	8,514	560	5.1	1,796	16.3
지역발전본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7,842	147	6,183	78.8	1,506	19.2
푸른도시국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1,864	300	170	9.1	1,393	74.7
문화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5,978	3,398	1,141	19.0	1,187	19.8
도시재생본부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2,600	86	1,354	52.0	1,095	42.1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없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련 규칙과 기준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19년 1월, 행정안전부도 2018회계연도 이월예산을 '19년 1월 10일까지 확정하여 기한을 준수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시립 북부장래인복지관 증축** 사업과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소관 **산지관리, 지역산림 및 도시림조성관리 계획 용역**은 '19년 1월 10일자로 확정된 명시이월액을 지난 1월 23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3〉 당초 확정된 명시이월액을 정정한 사업

(단위 : 천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1월 10일자로 확정된 명시이월액 (가)	1월 23일 변경된 명시이월액 ( '18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복 지 본 부	시립 북부장래인복지관 증축	265,967	837,158	571,191
푸른도시국	산지관리, 지역산림 및 도시림조성관리 계획 용역	106	106,000	105,894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07 ('19. 1.15)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89 ('19. 4.30)

- **시립 북부장래인복지관 증축** 사업의 경우, '19년도 예산심사시 공정지연을 사유로 시설비(6억 9,400만원)와 감리비(1억 4,200만원)를 포함한 8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 회계연도 종료 이후 명시이월액을 2억 6,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 확정된 명시이월액(2억 6,500만원)에 지출액 착오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소요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명시이월액을 의회의 당초 승인액(8억 3,700만원)과 동일한 8억 3,7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4〉 명시이월액 변경내역(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명시이월 승인액 (‘18.12.14. 본회의 가결)	’19년 1월 10일자로 확정된 명시이월액 (가)	’19년 1월 23일자로 변경된 명시이월액 (나)	증감액 (나)-(가)	비고
계	837	265	837	571	
시설비	694	228	694	465	○ 지출된 것으로 착오하여 명시이월 되지 않은 4억 6,500만원 추가 반영
감리비	142	37	142	105	○ 지출된 것으로 착오하여 명시이월 되지 않은 5,100만원 추가 반영  ○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5,300만원 추가 반영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1442 (’19. 1.21)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89 (’19. 4.30) 재구성

- **산지관리, 지역산림 및 도시림조성관리 계획 용역**의 경우, ’19년도 예산심사시 산림청에서 수립중인 상위계획을 용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비 1억 6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 명시이월액을 10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작성단위 착오로 잘못 확정된 명시이월액(10만 6,000원)을 1억 600만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규칙과 기준에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확정된 이월액을 1월 10일 이후 변경할 수 있다고 허용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 확정기한(’19. 1.10)

을 경과한 후 명시이월액을 임의로 변경한 것인 바, 관련 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 향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이월액 확정기한 내에 정확한 명시이월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현황 등을 검토하고, 확정된 명시이월액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규칙과 기준에 근거가 없는 임의변경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결산검사를 통해 시정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②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서울시의 경우, '11회계연도 이후 '17회계연도까지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된 바 없으나, '18회계연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2조 307억 4,500만원 중 4.5%, 915억 5,6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바,

〈표 3-75〉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건설개량이월		
		건수 (세목 기준)	건설개량이월액 (나)	건설개량이월률 (나)/(가)
합 계	2,030,745	15	91,556	4.5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28,209	1	1,500	0.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2,535	14	90,056	7.4

※ 자료근거 : ① 2018회계연도 결산서

② 201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55기)

③ 2018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 건설개량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인정되는 명시이월과는 달리, 승인권자를 단체장으로 정하고 있어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며,
  -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결과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 '18회계연도에 건설개량이월된 915억 5,600만원의 경우,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용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00억 5,6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용하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나,
- 물순환안전국과 상수도사업본부는 건설개량이월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물순환안전국의 경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900억 5,600만원)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15억원)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후 서울시 예산총괄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건설개량이월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리자”가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관리자로서 이월 요구권자에 해당되며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요구하고 승인할 경우 요구권자와 승인권자가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이월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음

○ 사업별로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현황을 검토하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는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1,263억원(국비 391억원 포함)중 25.9%, 327억 1,3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동 사업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327억 1,300만원)에는 국비 239억원과 시비 88억 1,3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국비 건설개량이월액(239억원)의 경우, 「하수도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는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재원협의) 등을 이행한 후 국비 239억원이 11월 21일 서울시로 교부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시비 건설개량이월액(88억 1,300만원)의 경우, 동 사업을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5개 자치구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 1개 자치구(강동구)에서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의 경우, 용역사 타

절요청 등의 사유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시비 3억 2,5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이며,

- 9개 자치구에서 하반기에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기가 부족하여 회계연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시비 84억 8,8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건설개량이월액(327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현액(1,263억원) 대비 24.0%, 303억 9,700만원은 사고이월된 바,
  - 2개 자치구에서 상반기에 발주한 공사의 경우, 사업물량 증가, 지장물 저축 등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38억 4,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12개 자치구에서 하반기에 발주한 공사의 경우, 자치구별로 '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착공하여 '19년 6월부터 9월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회계연도중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유로 265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도로함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18회계연도의 경우, 법령에 따른 협의를 이행한 후 국비가 지연교부('18. 11) 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1,263억원) 대비 49.9%에 해당하는 총 631억 1,000만원이 이월된 바, 사업부서

는 향후 사업지연과 예산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예산운영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76〉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이월액(계)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126,300	63,110	49.9	32,713 <sup>주1)</sup>	25.9	30,397 <sup>주2)</sup>	24.0

※ 주1) 건설개량이월액(327억 1,300만원) : 국비 239억원, 시비 88억 1,300만원 포함

주2) 사고이월액(303억 9,700만원) : 전액 시비

자료근거 : ① 2018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5240 ('19. 3.27)

③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6517 ('19. 5. 7) 등 재구성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332억원(국비 166억원 포함)중 26.8%, 89억 1,5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600억원(국비 300억원 포함)중 13.3%, 80억원이 건설개량이월 된 바,
  - 동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는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하수도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이른바 ‘재원협의’를 이행한 후 국비가 11월 21일 서울시로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소요예산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사유(국비 지연교부)로 지출원인행위를 한 소요예산에 대해 사고이월 또한 발생한 바,

-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332억원)중 51.1%, 169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600억원)중 43.5%, 261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77〉 탄천·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계)		건설개량		사고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33,200	77.9	25,888	26.8	8,915	51.1	16,972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60,000	56.9	34,143	13.3	8,000	43.5	26,143

※ 자료근거 : ① 2018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5240 ('19. 3.27)  
 ③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6517 ('19. 5. 7) 등 재구성

- 동 사업은 법령에 따른 절차(재원협의)를 이행한 후 국비가 지연교부 되어 이월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건설개량이월액(89억 1,500만원)과 사고이월액(169억 7,200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58억 8,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332억원)의 77.9%에 해당하며,
-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건설개량이월액(80억원)과 사고이월액(261억 4,300만원)을 포함한 다음연

도 이월액은 총 341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600억원)의 56.9%에 해당되는 바,

- 사업부서는 건설개량이월액에 대한 재이월(사고이월)과 이월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월액 관리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447억 9,200만원중 6.7%, 30억 2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447억 9,200만원) 대비 18.2%, 81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78〉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예산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현액	이월액(계)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이월액	사고 이월률
계	44,792	11,181	24.9	3,002	6.7	8,179	18.2
시 설 비	24,326	10,744	44.1	3,002	12.3	7,742	31.8
감 리 비	1,161	436	37.5	-	-	436	37.5
시 설 부 대 비	5	-	-	-	-	-	-
민간대행사업비	19,300	-	-	-	-	-	-

※자료근거 : ① 2018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②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5240 ('19. 3.27)

③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6517 ('19. 5. 7) 등 재구성

- 동 사업의 경우,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중 “예산이월액조서”에는 가동설비 기간을 조정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시설비 30억 2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시설비(77억 4,200만원)와 감리비(4억 3,600만원)를 포함한 81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18회계연도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것은 “난지물재생센터”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가 아닌 “중랑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107억 4,400만원)와 감리비(4억 3,600만원)가 이월된 것임에도, “예산이월액조서”에는 “난지물재생센터” 관련사업의 장애요인을 이월사유로 기재하고 있어 이월사유를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서 실제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감액조정한 소요예산에 대해 '18회계연도에 발생한 낙찰차액 등 30억 2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산심사결과 삭감된 경비를 자체 보전하고자 낙찰차액 등을 건설개량이월 하여 확보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취지를 등한시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건설개량이월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가 '18년 12월 수립한 「2018회계연도 사업 이월 추진계획」에는 동 사업에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이 필요한 사



유를 “계속비”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예산이월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음

-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이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이 불필요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을 활용하고 있는 바,
  - 예산운용의 효율성보다 행정편의가 우선시 되어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이 선택되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건설개량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시설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비(16억 500만원)를 13억 9,700만원 초과하여 30억 2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표 3-79〉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건설개량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원인행위 미필액	지출액	건설개량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계	44,792	43,169	1,622	33,593	3,002	6.7
시 설 비	24,326	22,720	<b>1,605</b>	13,581	<b>3,002</b>	12.3
감 리 비	1,161	1,148	12	711	-	-
시설부대비	5	-	4	-	-	-
민간대행사 업 비	19,300	19,300	-	19,300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6517 ('19. 5. 7)

- 물순환안전국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비를 초과하여 건설개량이월한 사유에 대해 착오로 건설개량이월액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제출한 바 있으나,
  - 동 사업에서 발생된 이월액 입력 오류를 사유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수립('19. 1.14)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사업 확정계획」이 이미 한 차례 수정('19. 1.28)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월액을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월 25일을 기준으로 이월액을 재확정한 것 자체만으로 기준위반 사례는 아닐 것이나,
  - 동 사업에 대해 이월액 입력 오류를 사유로 이미 한 차례 방침을 변경한 사례가 있음에도 방침 변경시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동 사례를 수정하지 못하고 이월액이 확정된 것인 바,
  - '18회계연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산이월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이 바르게 검토되어 적용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명시이월 대신 건설개량이월이 인정되는 등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 의회의 예산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예산 이월에 있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고, 의회의 의결취지도 경시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360억원 중 99.8%, 359억 5,0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바,
- 동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3차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난지물재생센터)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고양시 및 덕양구)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된 것임

〈표 3-80〉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원인행위 미필액	지출액	건설개량이월	
						이월액	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36,000	49	35,950	-	35,950	99.8
물순환안전국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6,300	73,288	53,011	42,890	32,713	25.9
물순환안전국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33,200	24,238	8,961	7,273	8,915	26.8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60,000	51,920	8,079	25,774	8,000	13.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44,792	43,169	1,622	33,593	3,002	6.7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 정비	62,392	53,695	8,696	48,947	1,500	2.4
물순환안전국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간내 노후하수관로 개량	1,000	343	656	171	656	65.6
물순환안전국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7,000	6,451	548	5,058	548	7.8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8,180	8,022	157	6,020	157	1.9
물순환안전국	오류 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6,270	6,168	101	5,282	101	1.6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유역 경계 조정)	8,000	6,621	1,378	6,236	10	0.1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건설개량이월 없음

자료근거 : ①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5515 ('19. 5. 2)

②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6517 ('19. 5. 7)

## (6)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36조 5,478억 6,600만원) 대비 1.3%에 해당하는 5,065억 8,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5,290억 6,900만원)보다 △224억 8,400만원 감소하였음

〈표 3-81〉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나)	사고이월률 (나)/(가)	
2018 회계연도	계	36,547,866	488	506,585	1.3
	일반회계	25,477,177	247	113,699	0.4
	특별회계 <sup>주1)</sup>	11,070,688	241	392,886	3.5
2017 회계연도	계	32,916,151	575	529,069	1.6
	일반회계	22,818,685	274	139,509	0.6
	특별회계 <sup>주1)</sup>	10,097,466	301	389,559	3.8
2016 회계연도	계	30,604,138	466	404,674	1.3
	일반회계	21,299,027	197	85,210	0.4
	특별회계 <sup>주1)</sup>	9,305,111	269	319,464	3.4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③ 서울특별시, 재무과-20072 ('18. 4.24)를 참고하여 재작성

〈표 3-82〉 최근 5년간 예산이월 발생현황 ('18~'14)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 =(다)+(라)+(마)		명시이월액 (다)		건설개량 이월액 (라)		사고이월액 (마)	
		이월률 (나)/(가)	이월률 (다)/(가)	이월률 (라)/(가)	이월률 (마)/(가)				
2018	36,547,866	1,136,886	3.1	538,744 <sup>주1)</sup>	1.4	91,556	0.2	506,585	1.3
2017	32,916,151	766,173	2.3	237,104	0.7	-	-	529,069	1.6
2016	30,604,138	934,297	3.0	529,622	1.7	-	-	404,674	1.3
2015	27,112,103	781,763	2.8	574,383	2.1	-	-	207,379	0.7
2014	25,522,762	598,325	2.3	149,020	0.5	-	-	449,304	1.7

※ 주1) '18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6,303억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등 재구성

○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8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액 발생규모(5,065억 8,500만원)가 직전 회계연도(5,290억 6,900만원)보다 △4.2%, △224억 8,400만원 감소하였으며, 통계목을 기준으로 사고이월 발생건수(488건)도 직전 회계연도(575건)보다 △15.1%, △87건 감소된 것이나,

- '18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액(5,065억 8,5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915억 5,6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소요예산은 5,981억 4,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5,290억 6,900만원)보다 690억 7,200만원 증가되었고,
  - 전체 이월액 발생규모(1조 1,368억 8,600만원)도 직전 회계연도(7,661억 7,300만원)보다 48.3%, 3,707억 1,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예산 이월은 소요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임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고, 이월액 증가는 결국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에는 실제 집행가능액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검토하면 물순환안전국(1,484억 1,500만원, 29.3%), 도시기반시설본부(749억 5,700만원, 14.8%), 도시재생본부(529억 6,100만원, 10.5%)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이 총 2,763억 3,3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065억 8,500만원)의 54.5%에 해당함
  - 물순환안전국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9.3%에 해당하는 1,484억 1,500만원(통계목 기준 71건)이 사고이월된 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현액 1,263억원의 24.0%, 303억 9,700만원), **중량물 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현액 380억원의 73.4%, 279억 4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현액 600억원의 43.5%, 261억 4,300만원),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현액 332억원의 51.1%, 169억 7,2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 일반회계에서는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예산현액 73억 2,300만원의 29.7%, 21억 7,8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현액 129억 6,700만원의 12.5%, 16억 2,7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여의천(서초구) 단면확장 및 보축**(예산현액 21억 9,100만원의 35.7%, 7억 8,4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4.8%에 해당하는 749억 5,700만원(통계목 기준 14건)이 사고이월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예산현액 2,071억 1,500만원의 19.1%, 395억 8,2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현액 911억 2,600만원의 23.8%, 217억 3,5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



**선분담금**(예산현액 308억 7,400만원의 23.1%, 71억 5,2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재생본부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0.5%에 해당하는 529억 6,100만원(통계목 기준 65건)이 사고이월된 바,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예산현액 310억 4,900만원의 42.7%, 132억 7,500만원),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예산현액 150억 4,100만원의 55.1%, 82억 9,2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예산현액 113억 9,500만원의 33.0%, 37억 7,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예산현액 26억 9,000만원의 51.4%, 13억 8,4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83〉 2018회계연도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사유<sup>주1)</sup>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사유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b>합 계</b>	<b>488</b>	<b>506,585</b>	<b>(100.0)</b>	<b>171,622</b>	<b>25,086</b>	<b>93,257</b>	<b>8,882</b>	<b>27,488</b>	<b>33,325</b>	<b>92,436</b>	<b>54,489</b>
				<b>(33.9)</b>	<b>(5.0)</b>	<b>(18.4)</b>	<b>(1.8)</b>	<b>(5.4)</b>	<b>(6.6)</b>	<b>(18.2)</b>	<b>(10.8)</b>
물순환안전국	71	148,415	(29.3)	97,294	1,685	37,358	1,710	3,160	-	6,807	401
도시기반시설본부	14	74,957	(14.8)	-	551	-	-	-	32,411	3,976	38,018
도시재생본부	65	52,961	(10.5)	19,700	1,043	638	-	200	-	31,380	-
푸른도시국	48	43,550	(8.6)	-	18,657	12,409	-	-	-	9,212	3,272
문화본부	29	30,208	(6.0)	6,240	614	1,796	-	14,292	-	7,265	-
경제진흥본부	32	23,801	(4.7)	16,199	-	89	695	-	-	5,767	1,051
안전총괄본부	29	23,651	(4.7)	7,579	228	4,330	827	2,429	-	1,322	6,926
지역발전본부	15	20,169	(4.0)	4,914	1,507	10,016	211	-	-	3,521	-
상수도사업본부	18	15,633	(3.1)	6,962	-	2,150	2,544	909	-	-	3,068
도시교통본부	14	13,584	(2.7)	7,965	-	5,168	-	-	-	232	220
복지본부	23	9,604	(1.9)	603	-	7,407	-	1,465	-	129	-
여성가족정책실	5	9,316	(1.8)	-	-	-	-	1,183	-	8,133	-
한강사업본부	14	9,301	(1.8)	1,181	-	3,910	-	-	-	4,210	-
일자리노동정책관	4	5,013	(1.0)	-	-	-	-	-	-	5,013	-
시민건강국	16	4,736	(0.9)	-	-	3,108	-	927	102	599	-
소방재난본부	7	4,007	(0.8)	1,875	801	133	-	-	743	-	455
도시공간개선단	19	3,078	(0.6)	790	-	-	-	-	69	2,219	-
기후환경본부	14	2,949	(0.6)	-	-	1,223	765	252	-	355	354
행정국	5	2,713	(0.5)	-	-	-	2,086	-	-	626	-
도시계획국	15	2,675	(0.5)	121	-	536	-	1,255	-	702	61
관광체육국	8	1,889	(0.4)	-	-	1,502	-	79	-	308	-
서울혁신기획관	8	1,692	(0.3)	-	-	-	-	1,337	-	355	-
주택건축국	4	1,568	(0.3)	-	-	1,484	-	-	-	84	-
시민소통기획관	1	413	(0.1)	-	-	-	-	-	-	-	413
시립미술관	2	219	(0.0)	105	-	-	-	-	-	113	-
평생교육국	3	185	(0.0)	-	-	-	44	-	-	-	142
기획조정실	1	98	(0.0)	-	-	-	-	-	-	98	-
서울역사박물관	1	94	(0.0)	94	-	-	-	-	-	-	-
인재개발원	1	81	(0.0)	-	-	-	-	-	-	-	81
의회사무처	1	15	(0.0)	-	-	-	-	-	-	-	15
기술심사담당관	1	12	(0.0)	-	-	-	-	-	-	-	12

※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실·본부·국별 또는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② '18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표 3-84〉 최근 3년간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현황 ('18~'16)<sup>주1)</sup>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sup>주2)</sup>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sup>주2)</sup>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2018	506,585	171,622	25,086	93,257	8,882	27,488	33,325	92,436	54,489
	(100.0)	(33.9)	(5.0)	(18.4)	(1.8)	(5.4)	(6.6)	(18.2)	(10.8)
2017	529,069	20,793	99,760	118,471	14,009	32,564	13,439	127,229	102,803
	(100.0)	(3.9)	(18.9)	(22.4)	(2.6)	(6.2)	(2.5)	(24.0)	(19.4)
2016	404,674	60,343	58,489	96,144	6,716	37,877	15,810	65,291	64,004
	(100.0)	(14.9)	(14.5)	(23.8)	(1.7)	(9.4)	(3.9)	(16.1)	(15.8)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무과-23512 ('19. 4.29)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22940 ('18. 5.10)

③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사고이월을 발생사유에 따라 구분하면,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065억 8,500만원)의 33.9%, 1,716억 2,200만원으로서,

- 지장물 저축, 동절기 한파 및 혹서기 폭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측량오류로 인한 설계보완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 다만, 동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액(1,716억 2,2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207억 9,300만원)보다 1,508억 2,900만원 증가된 바,

행정편의 등을 사유로 당초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측가능한 요인까지도 공사추진 중에 장애가 발생된 사안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8.4%, 932억 5,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184억 7,100만원)보다 △252억 1,400만원 감소된 바,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①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천점용허가,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각종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거나, ② 유관기관과 민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의 경우, 당초 사업부서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절차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집행으로 실현시키지 못한 것인 바,

-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총 사업비 증가, 주민불편 가중 등의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업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연도중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8.2%, 924억 3,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72억 2,900만원)보다 △347억 9,300만원 감소된 바,

- 동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의 경우, 용역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소요예산을 이월할 필요성은 있으나,

-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회계연도중 준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될 경우, 행정편의를 우선하여 소요예산을 사고이월 하기 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고이월의 경우, 관련 규칙과 기준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19년 1월, 행정안전부도 '18회계연도 이월예산을 '19년 1월 10일 까지 확정하여 기한을 준수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음

- 그러나 '18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384개 세부사업중 6개 세부사업은 당초 '19년 1월 10일 기준으로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1월 10일 이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경우, 사고이월 요구 시 지출원인행위액 9,0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가 누락되어 당초 사고이월액이 1억 7,7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 누락된 증빙서류를 사후적으로 보완제출('19. 1.18)하여 사고이월액을 2억 6,700만원으로 수정('19. 1.23)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은 지출원인행위액 입력착오로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2억 2,600만원)중 초과반영된 △300원을 감액하기 위해 '19년 1월 29일 사고이월액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됨

-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중 지출원인행위액 계산착오로 초과반영분을 감액하고자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수정한 바,

■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소관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은 확정된 사고이월액(20억 5,100만원)중 초과반영된 △30,230원

을 감액하기 위해 '19년 1월 23일 사고이월액을 수정하였고,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확정된 사고이월액(395억 8,300만원)중 초과반영된 △957,000원을 감액하기 위해 '19년 2월 7일 사고이월액을 수정하였음
  - 물순환안전국 소관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당초 사고이월액을 2억 3,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18회계연도중 집행된 소요예산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기 위해 '19년 2월12일 사고이월액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은 중복반영된 이월예산(4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누락된 이월예산(4,700만원)을 추가하고자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41억 7,200만원)을 37억 7,000만원으로 '19년 1월23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에는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확정된 이월액을 수정할 수 있다는 지침 등이 없음에도, 이월액 확정기한('19. 1.10)을 경과한 후 이미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수정한 동 사례의 경우, 관련 규칙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사고이월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이월액은 결산검사나 의회의 결산심사에 따른 시정요구 이외에는 수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정을 지양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5〉 확정된 사고이월액 수정현황

(단위 : 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 (’19. 1.10) (가)	수정된 사고이월액 (’18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수정 사유 등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건축터영	177,000,000	267,200,000	90,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이월 요구시 <u>지출원인행위액(9,020만원) 증빙서류를 제출누락</u> 하여 사고이월액이 1억 7,7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제출누락된 증빙서류를 사후적으로 보완제출(’19. 1.18) 하여 사고이월액을 변경</li> </ul> </li> <li>○ 수정일자 : ’19. 1.23</li> </ul>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계획 수립	226,131,800	226,131,5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출원인행위액 입력착오</u>로 초과반영된 사고이월액을 감액</li> </ul> </li> <li>○ 수정일자 : ’19. 1.29</li> </ul>
푸른도시국	공원 안전 시설 보수 및 정비	2,051,751,140	2,051,720,910	△30,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출원인행위액 계산착오</u>로 초과반영된 사고이월액 감액</li> </ul> </li> <li>○ 수정일자 : ’19. 1.23</li> </ul>
도시 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9,583,000,000	39,582,043,000	△95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출원인행위액 계산착오</u>로 초과반영된 사고이월액 감액</li> </ul> </li> <li>○ 수정일자 : ’19. 2. 7</li> </ul>
물순환안전국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 용량 증대	235,770,720	228,587,560	△7,183,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출액 누락</u>으로 초과반영된 사고이월액 감액</li> </ul> </li> <li>○ 수정일자 : ’19. 2.12</li> </ul>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4,172,388,010	3,770,485,970	△401,90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중복반영된 이월예산(449,812,040원)을 감액하고, 누락된 이월예산(47,910,000원)을 추가</u>하고자 사고이월액 변경</li> </ul> </li> <li>○ 수정일자 : ’19. 1.23</li> </ul>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07 (’19. 1.15)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5489 (’19. 4.30) ③ 2018회계연도 결산서 등 재구성



## ① 주요 사고이월 발생사례 검토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소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121억 6,000만원(전년도 사고이월액 8억 8,900만원 포함)중 84.0%, 102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동 사업은 '18년 7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18년 9월, 착공식을 한 이후 '18년 11월부터 실제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00억 1,600만원과 감리비 2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가 시작된 시점('18.11)을 고려하였다면 회계연도중 예산현액(121억 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도의 추경을 통해서라도 소요예산을 감액조정 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행정편의를 우선시 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집행부진사유는 상이하나, 지난 '16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20억 7,900만원)중 4.8%(1억 100만원)만 집행하고, 94.5%(19억 6,500만원)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17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32억 9,900만원)의 47.8%(15억 8,0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26.9%(8억 8,900만원)가 사고이월된 사실이 있음
  - '18회계연도의 경우, 집행률은 여전히 11.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난 '17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예산(8억 8,900만원)중 63.2%에 해당하는 5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사업부서가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사고이월이 오용되고 있는 사례는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6〉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회계연도별 결산결과('18~'16)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18	12,160	1,354	10,226	-	10,226	578 <sup>주1)</sup>
2017	3,299	1,580	889	-	889	829
2016	2,079	101	1,965	-	1,965	12

※ 주1) '17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8억 8,900만원중 5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근거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2810 ('19. 3.22)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소관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은 측량오류로 인한 보완설계가 '18년 9월 완료되어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150억 4,100만원(전년도 이월액 133억 300만원 포함)중 55.1%, 82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지난 '17회계연도에도 측량오류에 따른 설계도면 보완이 장기화되어 예산현액(202억 9,500만원)의 26.9%(54억 6,100만원)가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 '18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165억 3,700만원) 중 △148억원을 감액조정 하여 이월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15회계연도부터 '18회계연도까지 집행부진사유는 상이하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의 경우, 감추경을 하였으나 집행률은 여전히 39.7%에 불과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된 것인 바, 사업부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소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7〉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회계연도별 결산결과('18~'15)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18	15,041	5,984	8,292	-	8,292	764
2017	20,295	6,856	13,303	7,842	5,461	134
2016	11,113	4,029	6,226	5,363	863	857
2015	4,350	518	3,813	3,407	405	18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소관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2억 4,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는 '19년 11월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당초 '18년도 본예산에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18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시립시설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12억 7,200만원)보다 49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에도 소요예산 전액(62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인 바,

-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전액(62억 4,000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회계연도중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부서가 회계연도중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자치구와의 협의를 소홀히 한 결과일 수도 있어 향후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2,071억 1,500만원(전년도 이월액 527억 1,500만원 포함)중 19.1%, 395억 8,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 ① 919공구 공동도급사간 협의지연으로 준공금이 신청되지 않아 시설비 189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② 전동차 56량에 대한 납품기한을 '19년도로 연장함에 따라 시설비 206억 1,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③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간접비)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민간기관과 검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18회계연도중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시설부대비 4,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은 공항철도 직결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되지 않아 예산현액(2,071억 1,500만원)의 10.7%, 222억 2,1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바,
  -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29.8%, 618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월액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소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237억 4,500만원(전년도 명시이월액 164억 6,600만원 포함) 중 61.9%, 147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 동 사업의 경우, ① '18년 7월, 건축물 구조를 보강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개관시기도 당초 '19년 5월에서 '20년 5월로 연기함에 따라 시설비 135억 1,400만원과 감리비 6억 8,3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또한 ② '18년 12월, 현대공예작품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입대상 자료가 국내에 반입('19. 2)되면 인수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156억 9,600만원(전년도 사고이월액 5억 5,100만원 포함)중 38.6%, 60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소관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9억원(전년도 명시이월액 9억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부지의 지상과 지하1층에 차고지를 조성하고, 지하2층에는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의 경우, ① 수용재결('18. 8), 수용개시('18.10) 이후 잔여 7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시설비 18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②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18회계연도중 착공이 불가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1차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시설비 40억원과 감리비 1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18회계연도중 착공이 불가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1차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17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소요예산 9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소관 **용도지역 재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 당초 '18년도 본예산에 용도지역관리의 원칙 및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18년 1월부터 학술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 용역수행 과정에서 '18년 9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  
급 확대 방안」 (이른바 '9.21대책')에 대한 추가과업을 이행하여 공  
기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을 당초 '18년 11월에서 '19년  
2월로 연기('18.11)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표 3-88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7,115	131,407	39,582	19.1
물순환안전국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6,300	42,890	30,397	24.0
물순환안전국	중량물 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설치	38,000	10,057	27,904	73.4
물순환안전국	서남물 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설치	60,000	25,774	26,143	43.5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126	56,052	21,735	23.8
물순환안전국	탄천물 재생센터 3차 (총인) 처리시설 설치	33,200	7,273	16,972	51.1
경제진흥본부	홍릉 바이오 의료 엔지니어링 조성 및 운영	38,236	11,260	14,842	38.8
문화본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745	8,158	14,718	61.9
도시재생본부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31,049	17,428	13,275	42.7
지역발전본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 지원 시설 건립	12,160	1,354	10,226	84.0
도시재생본부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15,041	5,984	8,292	55.1
물순환안전국	물 재생센터 슬러지 자체 처리 시설 설치	44,792	33,593	8,179	18.2
여성가족정책실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13,706	5,635	8,053	58.7
물순환안전국	중량물 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19,723	11,645	7,806	39.5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30,874	18,563	7,152	23.1
안전총괄본부	성산대교 성능개선	17,970	11,336	6,486	36.0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상수도관 (송배수관) 정비	62,392	48,947	6,353	10.1
도시재생본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0,589	4,248	6,286	59.3
안전총괄본부	월드컵 대교 건설	51,185	42,982	6,251	12.2
문화본부	길음동 문화복합 시설 건립 지원	6,240	-	6,240	100.0
도시교통본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15,696	9,622	6,065	38.6

〈표 3-88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13,974	4,690	5,232	37.4
푸른도시국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12,359	4,831	5,118	41.4
도시재생본부	정동역사재생사업	5,162	525	4,582	88.7
푸른도시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13,901	3,034	4,087	29.4
물순환안전국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 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6,488	2,571	3,916	60.3
도시재생본부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 사업 추진	21,322	12,503	3,911	18.3
문화본부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18,440	9,069	3,888	21.0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4,154	235	3,822	92.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11,395	6,763	3,770	33.0
도시교통본부	망원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014	256	3,757	93.5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 조성	52,197	31,523	3,522	6.7
물순환안전국	내수재해위험지구 하수관로 수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600	733	3,519	76.5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복합시설 조성	6,780	2,709	3,233	47.6
복지본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54	4,247	3,151	31.3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9,286	26,027	2,979	3.7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8,490	785	2,893	34.0
푸른도시국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도시개발특별회계)	45,700	39,594	2,864	6.2
안전총괄본부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16,402	12,107	2,393	14.5
복지본부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3,849	655	2,356	61.2
지역발전본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20,498	17,159	2,346	11.4
푸른도시국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등	9,037	5,189	2,296	25.4

〈표 3-88C〉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 른 도 시 국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12,891	10,178	2,218	17.2
상수도사업본부	아 리 수 생 산 재 료 비	129,016	124,449	2,217	1.7
물 순 환 안 전 국	동 작 구 사 당 역 일 대 배 수 개 선	7,323	321	2,178	29.7
경 제 진 흥 본 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4,294	1,265	2,176	50.6
상수도사업본부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7,874	5,381	2,141	27.1
행 정 국	서 울 기 록 원 건 립	38,823	33,993	2,086	5.3
푸 른 도 시 국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16,912	12,164	2,051	12.1
푸 른 도 시 국	녹색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2,225	163	2,011	90.3
안 전 총 괄 본 부	도 로 시 설 물 ( 자 치 구 위 임 관 리 ) 긴급 보수	6,561	4,288	2,002	30.5
물 순 환 안 전 국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8,180	6,020	2,001	24.4
도 시 재 생 본 부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0,280	8,008	1,991	19.3
소 방 재 난 본 부	소 방 행 정 타 운 건 립	50,451	48,199	1,875	3.7
푸 른 도 시 국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	10,956	8,514	1,796	16.3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2,122	295	1,780	83.8
한 강 사 업 본 부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3,509	1,533	1,721	49.0
물 순 환 안 전 국	환 경 기 초 시 설 설 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967	10,828	1,627	12.5
도 시 교 통 본 부	망 우 3 동 주 택 가 설 공 동 주 차 장 건 설	2,600	995	1,604	61.6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3,260	1,062	1,536	47.1
지 역 발 전 본 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7,842	147	1,506	19.2
푸 른 도 시 국	천 왕 도 시 자 연 공 원 ( 천 왕 골 지 구 ) 조 성	2,618	6	1,494	57.0
푸 른 도 시 국	가 로 수 생 육 환 경 개 선 및 가 로 변 녹 지 량 확 충	16,157	13,127	1,408	8.7

〈표 3-88D〉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7,000	5,058	1,393	19.9
푸른도시국	초안산근린공원(노원) 조성	1,864	300	1,393	74.7
도시재생본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2,690	1,244	1,384	51.4
푸른도시국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2,958	987	1,370	46.3
한강사업본부	뚝섬 전망 문화 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2,407	721	1,317	54.7
복지본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74	2,616	1,288	32.4
주택건축국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1,409	122	1,286	9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530	14	1,255	82.0
푸른도시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10,724	6,221	1,231	11.4
관광체육국	제100회 전국 체전수 대비 시설개보수	11,547	8,602	1,214	10.5
문화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5,978	3,398	1,187	19.8
여성가족정책실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4,125	2,130	1,182	28.6
도시재생본부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8,860	5,633	1,153	13.0
경제진흥본부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1,205	105	1,100	91.2
도시재생본부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계획	2,600	86	1,095	42.1
푸른도시국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6,261	3,579	1,083	17.2
푸른도시국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9,883	8,794	1,068	10.8
푸른도시국	사방사업 조성	5,214	3,844	1,055	20.2
도시재생본부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시민참여)	1,050	6	1,043	99.3
물순환안전국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2,000	958	1,037	51.8
푸른도시국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2,830	1,743	1,023	36.1

〈표 3-89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 른 도 시 국	청 소 년 체 험 의 숲 조 성	2,637	1,591	979	37.1
복 지 본 부	5 0 + 캠퍼스 확충	7,254	3,076	953	13.1
물 순 환 안 전 국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5,690	11,266	948	6.0
경 제 진 흥 본 부	서 울 창 업 허 브 조 성	7,723	6,670	930	12.0
시 민 건 강 국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278	1,344	927	40.6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진 접 선 ( 4 호 선 연 장 ) 차 량 기 지 건 설	29,477	7,488	912	3.0
문 화 본 부	한 양 도 성 보 수 · 정 비	2,437	1,339	912	37.4
물 순 환 안 전 국	신 립 공 영 차 고 지 빛 물 저 류 조 설 치	900	-	900	100.0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서 비 스 장 비 확 충 및 환 경 개 선	9,164	4,760	890	9.7
물 순 환 안 전 국	오 류 2 배 수 분 구 비 하 수 관 로 종 합 정 비	6,270	5,282	885	14.1
한 강 사 업 본 부	한 강 공 원 나 들 목 증 설 및 개 선	4,642	3,715	880	18.9
문 화 본 부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 수	25,134	18,908	878	3.4
도 시 교 통 본 부	보 행 환 경 개 선 지 구 조 성	10,653	4,825	867	8.1
소 방 재 난 본 부	소 방 향 공 대 운 영	15,094	13,462	857	5.6
물 순 환 안 전 국	하 수 박 스 안 전 진 단 등 용 역	2,922	1,881	856	29.2
푸 른 도 시 국	남 산 및 산 하 공 원 시 설 물 보 수 정 비	4,495	3,568	808	17.9
소 방 재 난 본 부	금 천 소 방 서 신 설	28,791	26,473	801	2.7
도 시 공 간 개 선 단	고 가 하 부 공 간 활 용 사 업	1,214	289	790	65.0
안 전 총 괄 본 부	노 후 포 장 도 로 정 비 공 사	67,676	65,504	785	1.1
안 전 총 괄 본 부	위 커 힐 고 가 보 수 공 사	1,324	379	785	59.2
물 순 환 안 전 국	여 의 천 ( 서 초 구 ) 단 면 확 장 및 보 축	2,191	1,407	784	35.7
푸 른 도 시 국	남 산 관 광 버 스 통 제 및 친 환 경 교 통 수 단 도 입	2,280	163	765	33.5

〈표 3-89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경제진흥본부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7,032	2,928	763	10.8
안전총괄본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0,061	954	757	7.5
안전총괄본부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6,131	2,973	747	12.1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장~의정부시계) 확장	95,031	50,327	747	0.7
물순환안전국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1,000	140	739	73.9
물순환안전국	상수 빗물 펌프장대 시설 용량 증대	3,878	2,303	709	18.2
경제진흥본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451	515	694	47.8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693	1,780	693	25.7
물순환안전국	신림4배수분구비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	3,995	693	13.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3,200	1,965	683	21.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설치 운영	5,202	4,260	678	13.0
물순환안전국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1구간) 조성사업	2,678	1,556	670	25.0
서울혁신기획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2,805	12,035	658	5.1
문화본부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2,284	1,461	646	28.2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3,248	1,780	639	19.6
안전총괄본부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4,780	12,343	636	4.3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2,232	259	634	28.4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02,547	99,197	619	0.6
기후환경본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역 지원	8,062	6,045	605	7.5
기후환경본부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1,858	1,062	603	32.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기본계획)	900	199	582	64.6
행정국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255	632	553	44.0

〈표 3-89C〉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1,037	47,479	551	0.7
푸른도시국	천왕도시자연공원 (항골지구) 조성	764	254	509	66.6
도시공간개선단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631	1,078	508	31.1
물순환안전국	도봉1천 도봉교~무수교 간 보행데크 설치	950	363	503	52.9
푸른도시국	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설치	1,120	90	501	44.7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 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11,105	10,051	500	4.5
안전총괄본부	남부순환로(개봉 사거리) 평탄화	4,603	3,015	488	10.6
상수도사업본부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4,709	1,838	481	10.2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정화조 오니처리 유지보수	1,200	660	477	39.7
도시재생본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2,201	1,719	473	21.4
소방재난본부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7,953	7,495	454	5.7
경제진흥본부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632	182	449	71.0
상수도사업본부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 체계 구축	10,500	8,730	443	4.2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심사 추진	749	159	440	58.7
도시재생본부	빈집정비사업(도정)	3,810	3,314	436	11.4
도시재생본부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4,191	1,546	428	10.2
도시재생본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2,483	1,696	423	17.0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1,650	1,226	413	25.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환경 구축	800	317	413	51.6
도시재생본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3,863	1,403	407	10.5
물순환안전국	중량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3,828	725	401	10.4
지역발전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3,227	12,758	400	3.0

〈표 3-89D〉 주요 사고이월 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경제진흥본부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1,870	1,470	400	21.3
경제진흥본부	융합과 소통의 신규 콘텐츠 개발	2,300	747	392	17.0
푸른도시국	온수도시자연공원 (벽산지구) 조성	1,370	981	389	28.3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유역경계조정)	8,000	6,236	385	4.8
물순환안전국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기술용역	400	-	380	95.0
물순환안전국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	400	-	376	94.0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 교체	17,747	12,985	369	2.0
물순환안전국	정릉천(성북구) 솔샘교 하류 산책로 조성 사업	500	127	367	73.4
도시재생본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1,497	969	353	23.5
도시재생본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	4,109	2,947	333	8.1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18,250	10,007	333	1.8
푸른도시국	유수지 습지 생태복원	600	220	333	55.5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	861	532	329	38.2
도시계획국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758	378	329	43.4
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600	145	318	53.0
도시재생본부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1,220	268	317	25.9
도시재생본부	영등포 도심권(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5,288	3,077	317	5.9
도시계획국	서빙고·잠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455	138	312	68.5
문화본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995	607	310	31.1
상수도사업본부	간선배관 부설공사	4,000	2,848	304	7.6
물순환안전국	CSOS 저감을 위한 하수도시설 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500	200	300	60.0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 (시민참여)	1,600	1,197	300	18.7
물순환안전국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8,000	7,700	300	3.7



〈표 3-90〉 사고이월률 90%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문 화 본 부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6,240	-	6,240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신 립 공 영 차 고 지 빗 물 저 류 조 설 치	900	-	900	100.0
도 시 교 통 본 부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내 공 영 주 차 장 건 설	284	-	284	100.0
도 시 계 획 국	용 도 지 역 재 정 비	258	-	258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서울형 하수도 시물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	200	-	200	100.0
도 시 재 생 본 부	주 민 참 여 형 예 술 마 을 프로젝트사업(시민참여)	150	-	150	100.0
도 시 계 획 국	집단취락지구 종합관리방안 수립	130	-	130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목 동 도 시 재 생 사 업 구 간 노 후 하 수 관 로 개 량	60	-	60	100.0
도 시 재 생 본 부	우 리 동 네 공 영 주 차 장 추 가 설 치 ( 시 민 참 여 )	1,050	6	1,043	99.3
관 광 체 육 국	노 후 기 반 시 설 (체 육) 실 태 평 가	100	-	97	97.0
도 시 교 통 본 부	미 래 형 "Eco-Bike Line" 자 전 거 도 로 구 축 학 술 용 역	150	-	145	96.6
물 순 환 안 전 국	노 후 기 반 시 설 실 태 평 가 기 술 용 역	400	-	380	95.0
도 시 계 획 국	도 로 공 간 입 체 적 활 용 법 제 회 에 따 른 가 이 드 라 인 연 구	240	-	226	94.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공 간 정 책 차 원 의 부 담 가 능 임 대 주 택 확 충 기 반 마 련	150	-	141	94.0
물 순 환 안 전 국	노 후 기 반 시 설 ( 하 수 관 로 ) 실 태 평 가 기 술 용 역	400	-	376	94.0
도 시 교 통 본 부	망 원 동 주 택 가 공 동 주 차 장 건 설	4,014	256	3,757	93.5
문 화 본 부	100세시대 어르신 생활디자인	83	5	77	92.7
물 순 환 안 전 국	청 계 하 수 역 사 체 험 관 조 성 기 본 구 상	27	-	25	92.5
한 강 사 업 본 부	한 강 공 원 주 차 장 운 영	4,154	235	3,822	92.0
물 순 환 안 전 국	청 계 하 수 역 사 체 험 관 조 성 을 위 한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82	-	75	91.4
경 제 진 흥 본 부	홍 릉 일 대 클 러 스 터 조 성	1,205	105	1,100	91.2
주 택 건 축 국	한 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1,409	122	1,286	91.2
푸 른 도 시 국	녹 색 복 지 센 터 건 립 및 운 영	2,225	163	2,011	90.3
물 순 환 안 전 국	하 수 도 정 책 자 문 단 운 영	233	22	210	90.1

## ②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18회 계연도 결산결과, 5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시민참여)**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어 예산액의 99.3%, 10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소관 **주민참여형 예술마을 프로젝트사업 (시민참여)**은 사업대상지의 검토 및 의견수렴, 예술마을 조성방안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공고 및 입찰이 늦어져 예산액 전액 (1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세부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준수여부, 주민협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고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91〉 2018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sup>주1)</sup>
도시재생본부	우리동네공영주차장 추가설치(시민참여)	1,050	7	0 (0.0)	1,043 (99.3)
안전총괄본부	도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시민참여)	450	26	424 (94.2)	0 (0.0)
한강산업본부	한강공원나들목 환경개선(시민참여)	1,600	1,198	0 (0.0)	300 (18.7)
안전총괄본부	한천로 휘봉고교 앞 도로확장(시민참여)	815	634	181 (22.2)	0 (0.0)
도시재생본부	주민참여형 예술마을 프로젝트사업(시민참여)	150	0	0 (0.0)	150 (100.0)
푸른도시국	시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시민참여)	3,717	3,434	0 (0.0)	138 (3.7)
주택건축국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시민참여)	350	345	0 (0.0)	5 (1.4)

※ 주1) 이월액 발생규모 순

## (7) 국고보조사업 관련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보조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수납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자체재원인 시비를 대응편성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비와 시비를 매칭(Matching)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18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는 총 656개 세부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5조 889억 3,500만원을 수납하여 국비 예산현액(5조 2,843억 3,200만원) 중 92.4%, 4조 8,837억 9,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됨

〈표 3-92〉 회계별 국고보조금 수납·집행현황 ('18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부 사업수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총계	656	5,088,935	5,284,332	4,883,796	223,571	52,247	124,717	2.4
일반회계 <sup>주1)</sup>	568	3,613,012	3,727,074	3,594,981	23,144	36,604	72,343	1.9
특별회계	88	1,475,923	1,557,258	1,288,814	200,427	15,642	52,374	3.4
기타특별회계 <sup>주1)</sup>	79	1,367,340	1,433,475	1,279,731	100,927	15,642	37,174	2.6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6	239,225	248,880	165,479	61,963	14,038	7,399	3.0
교통특별회계	11	21,133	29,280	17,732	4,747	274	6,526	22.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	34,299	64,168	36,523	19,294	-	8,349	13.0
주택특별회계	18	338,609	345,035	335,219	2,856	-	6,959	2.0
도시개발회계	14	70,695	80,819	62,952	10,020	-	7,847	9.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	634,153	634,153	634,105	-	-	47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14	26,358	28,272	25,008	1,894	1,324	45	0.2
소방안전회계	9	2,865	2,865	2,710	150	5	-	-
공기업특별회계 <sup>주2)</sup>	9	108,583	123,783	9,083	99,500	-	15,200	12.3
수도사업회계	-	-	-	-	-	-	-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	108,583	123,783	9,083	99,500	-	15,200	12.3

※ 주1)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국비를 수납하고 집행한 현황

주2)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입과목인 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173) 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 ② 타회계전입금수익(672) 중 국고보조금(672-06)으로 국비를 수납하고 집행한 현황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19. 5. 9)

-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세출재원으로 하여 추진되는 바, 국비의 실제 교부규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추진 후에는 보조금반납금도 발생될 수 있어 국비의 실제수납액과 보조금반납금 등을 포함한 자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18회계연도 결산서와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 이미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듯이 세출결산의 경우에도 보조금반납금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반납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18회계연도부터 결산서 본문에 추가된 것으로서, '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총 643억 9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국고보조금 관리 총괄부서는 총 522억 4,7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한 바, 보조금반납금(522억 4,700만원)이 결산서에 기재된 것(643억 900만원)보다 △120억 6,200만원 적게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반납금은 국고보조사업을 정산한 후 중앙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결산서 등을 검토하면, 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청년 매입 임대 사업**을 포함한 3개 세부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30억 1,700만이 발생되었으며,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78억 3,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보조금반납금을 과소산정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집행잔액 성격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국고보조금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실제 반환될 규모보다 120억 6,200만원이나 과소산정 하고 있는 바,
  
- 국고보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한 보조금반납금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유추될 수 있어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총괄부서 차원의 수지균형 확인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93〉 국고보조금 수납현황 및 보조금반납금 발생현황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참고 : 세입결산상 실제수납액			세출결산상 보조금반납금		
	결산서 <sup>주1)</sup> (A)	국고보조금 총괄부서 제출자료 <sup>주2)</sup> (B)	차액 (B)-(A)	결산서 <sup>주3)</sup> (C)	국고보조금 총괄부서 제출자료 <sup>주2)</sup> (D)	차액 (D)-(C)
<b>총 계</b>	5,087,883	5,088,935	1,051	64,309	52,247	△12,062
<b>일 반 회 계</b>	3,611,960	3,613,012	1,051	37,815	36,604	△1,210
<b>기타특별회계</b>	1,367,340	1,367,340	-	26,494	15,642	△10,851
도시철도건설 사업특별회계	239,225	239,225	-	14,038	14,038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1,133	21,133	-	274	274	-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34,299	34,299	-	-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38,609	338,609	-	3,017	-	△3,017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0,695	70,695	-	7,834	-	△7,834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634,153	634,153	-	-	-	-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26,358	26,358	-	1,324	1,324	-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	2,865	2,865	-	5	5	-
<b>공기업특별회계</b>	108,583	108,583	-	-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	-	-	-	-	-
공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	108,583	108,583	-	-	-	-

※ 주1) 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55기)」 중 “사업예산결산 보고서” 및 “자본예산결산 보고서”

③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8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중 “사업예산결산 보고서” 및 “자본예산결산 보고서”

주2)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19. 5. 9)

주3)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출결산총괄”



- 아울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결산심사시 세입결산상 국고보조금 수납결과와 세출결산상 국비 집행결과를 대조하여 동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① 결산서중 “세출결산” 작성시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산서를 통해 국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없고,
  - ② 결산서의 첨부서류중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작성시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작성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첨부서류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령액(4조 4,349억 4,800만원)은 작성대상 불일치 등을 사유로 세입결산상 국고보조금 실제수납액(5조 878억 8,300만원)과 비교검토 가능한 자료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와 결산서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세입결산상 국고보조금 수납결과와 세출결산상 국비 집행결과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에 동 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비가 예산액보다 5억원 이상 부족수령된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포함한 20개 세부사업으로 회계연도 중

감추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예산현액 2,604억 2,400만원(국비 1,455억 6,100만원 포함)중 13.8%, 361억 1,400만원(국비 246억 7,500만원 포함)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18년도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가내시('17. 9)를 근거로 국비 1,455억 6,100만원과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편성한 것이나,
    - '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집행현황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가내시(1,455억 6,100만원)보다 △246억 7,500만원 감액된 1,208억 8,600만원으로 변경내시 하고, 변경내시된 국비(1,208억 8,6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음
  - 동 사업의 불용액(361억 1,400만원) 중 246억 7,500만원은 국비 편성액(1,455억 6,100만원)과 교부액(1,208억 8,600만원)의 차액으로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 사례에 해당되나 결산서의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는 **지출잔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표 3-94〉 가정양육수당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가)	불용액					지출잔액	예비비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 유 미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260,424	36,114	11,439	-	-	24,675	-	13.8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지출잔액**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등을 의미하는 바,
- 동 불용사례의 경우,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국비 교부계획이 변경되어 국비가 편성액보다 부족수령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결산서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불용사례를 결산서에 **지출잔액**으로 기재한 것은 관련기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불용액(361억 1,400만원)중 114억 3,900만원은 국비에 대응편성 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한 시비로, 결산서에는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보조금정산잔액**(114억 3,900만원)의 경우, '18년 12월, 동 사업에 편성된 시비 △96억 7,100만원을 동일 단위사업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불용예산액의 일부가 희석되지 않았다면 불용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18년도 제1회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18. 8.16)된 이후 변경내시가 통보('18. 9.13)되어 제1회 추경을 통해 국비와 이에 매칭되는 시비를 감액조정 하는 것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추경 이후에라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회계연도말 원포인트(One-Point) 정리추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8회계연도부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사업으로서

- 예산현액 1,263억원(국비 391억원 포함)중 16.0%, 202억 9,800만원(국비 152억원 포함)이 불용된 것으로 '18년도 본예산에 중앙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결과('17.12)와 환경부 확정내시('17.12)를 근거로 국비 391억원이 포함된 1,263억원을 편성한 것임

- 「하수도법」 제11조 제6항은 국고보조를 받는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의 경우,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원협의를 요청(’18. 2)한 결과 ① 총사업비는 당초 1,263억원에서 1,194억 4,400만원으로 조정(’18.10)되었고, ②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를 20%를 적용하여 23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통보(’18.10)된 바,
- 환경부가 ’18년 11월, 서울시에 통보한 국비(239억원)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기 편성된 국비(391억원)와 실제수령액(239억원)의 차액인 152억원이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으로 처리된 것임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736억 5,800만원(국비 1,865억 8,500만원 포함)중 7.2%, 199억 4,500만원(국비 135억 9,900만원 포함)이 불용된 바,
- ’18년도 본예산에 국토교통부의 가내시(’17. 9)를 근거로 국비 1,734억 9,300만원이 포함된 2,54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지난 ’1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주거급여법」 개정(’18. 1)으로 10월부터 수급권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신규 수급자가 7만 6,560가구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본예산 편성액보다 192억 100만원(국비 130억 9,100만원 포함) 증액된 2,736억 5,800만원(국비 1,865억 8,500만원 포함)을 편성한 것임

〈표 3-95〉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및 편성·수령현황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단위 : 백만원)

중앙정부 내시현황				국비 예산액 <sup>주1)</sup>	국비 수령액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가내시	확정내시	1차 변경내시	2차 변경내시			
( '17. 9 )	( '18. 1 )	( '18. 7 )	( '18.11 )	( 가 )	( 나 )	( 나 )-( 가 )
173,493	173,493	184,986	172,986	186,585	172,986	△13,599

※ 주1) '18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1,734억 9,300만원)에 대해 130억 9,100만원 증액조정한 것임

자료근거 : 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5004 ( '17. 9.13 )

②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164 ( '18. 1. 8 )

③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2369 ( '18. 7.31 )

④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3738 ( '18.11. 1 )

⑤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 '19. 5. 9 )

- 그러나 '18년도 제1회 추경안이 의결('18. 9)된 후 '18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기 편성된 국비(1,865억 8,500만원)보다 △135억 9,900만원 감액된 1,729억 8,60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통보 하고, 1,729억 8,600만원 전액을 서울시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불용액(199억 4,500만원) 중 국비 편성액(1,865억 8,500만원)과 수령액(1,729억 8,600만원)의 차액인 135억 9,900만원은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으로 결산서에는 불용액(199억 4,500만원) 전액이 **보조금정산잔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불용액(199억 4,500만원)중 135억 9,900만원은 국비가 수령되지 않아 예산집행사유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96〉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가)	불용액						불용률 (나)/(가)
	(나)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273,658	19,945	<b>19,945</b>	-	-	-	-	7.2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소관 **아동수당 지원**은 예산현액 1,430억 1,000만원(국비 973억 3,300만원 포함)중 10.2%, 147억 2,900만원(국비 100억 4,200만원 포함)이 불용된 것으로,
  - '18년도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확정내시('17.12)를 근거로 국비 973억 3,300만원과 시비 456억 7,700만원이 포함된 1,43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보건복지부는 '18회계연도중 1차 변경내시('18. 6)와 2차 변경내시('18.11)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당초 확정내시(973억 3,300만원)보다 △100억 4,200만원 감액된 872억 9,000만원으로 통보하고, 변경내시액(872억 9,000만원) 전액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97〉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및 편성·수령현황 (아동수당 지원)

(단위 : 백만원)

중앙정부 내시현황				국비 예산액 <sup>주1)</sup>	국비 수령액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가내시	확정내시	1차 변경내시	2차 변경내시			
('17. 9)	('17.12)	('18. 6)	('18.11)	(가)	(나)	(나)-(가)
129,535	<b>97,333</b>	89,670	87,290	<b>97,333</b>	87,290	△10,042

※ 주1) 회계연도중 증감조정 되지 않아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동일함

자료근거 : 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052 ('17. 9.13)

②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8131 ('17.12.12)

③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720 ('18. 6.18)

④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662 ('18. 11. 8)

⑤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19. 5. 9)

- 동 사업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18년 9월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가 증감되어 국비교부액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사업부서로서는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시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매칭되는 시비도 증감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 '18년 6월과 11월, 2차례의 변경내시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이 편성액(973억 3,300만원)보다 △100억 4,200만원 감액된 872억 9,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종료 전 원포인트 (One-Point) 감추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8〉 아동수당 지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가)	불용액 (나)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143,010	14,729	<b>14,729</b>	-	-	-	10.2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의 경우, 결산서에는 불용액(147억 2,900만원) 전액이 **보조금정산잔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불용액(147억 2,900만원)중 100억 4,200만원은 “국비” 편성액 대비 수령액의 차액인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되는 바, 보조사업 정산후 미집행된 “시비”를 의미하는 **보조금정산잔액**에 기재될 사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앙정부가 국비 교부계획을 변경하여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된 경우,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불용액 원인별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보조금정산잔액**에 포함시키고 있어 결산서 작성시 관련기준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차 변경내시('18. 6)를 반영하여 감추경이 요청되지 않아 국비 부족수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어 회계연도 종료전 정리추경을 통해 감액조정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해 예산수요에 따라 국비교부액이 줄어든 것으로 국비 부족수령으로 인한 문제는 없고, 국비 부족수령에 따른 문제에 대해 사업부서의 검토나 대응도 없는 것으로 제출한 바,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사업에서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재원없는 불용’이 100억 4,200만원 발생되어 서울시의 불용액 발생규모만 확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되지 못한 시비(46억 8,600만원)도 결국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한정된 자체재원(시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예산현액 710억 3,700만원(전년도 이월액 191억 4,800만원 포함)중 10.4%, 73억 9,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18년도 본예산에 국토교통부 가내시('17. 9)를 근거로 국비 162억 2,400만원이 포함된 51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 편성된 국비(162억 2,400만원)보다 △73억 9,900만원 감소된 88억 2,500만원만 서울시로 교부된 바,
- 국비 편성액(162억 2,400만원)과 수령액(88억 2,500만원)의 차액인 73억 9,900만원은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되어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원인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하고 있음

〈표 3-99〉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가)	불용액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71,037,705	7,399,005	-	-	7,399,000	5	-	10.4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에서 국비가 부족수령된 사유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18년 2월, 재원조달계획 변경을 통해 '18년도말 목표공정률을 당초 25.6%에서 17.1%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18년도 사업비가 감소되어 국비 수령액도 감소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 '18년 6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수급계획”에는 '18년도중 국비 편성액(162억 2,400만원)보다 △72억 9,800만원 감소된 89억 2,600만원을 수급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고,
- '18년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자금수급계획”에도 국비 편성액(162억 2,400만원)보다 △73억 9,900만원 감소된 88억 2,500만원을 수급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금수급계획”에 따라 국비 88억 2,5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이미 '18년 2월,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라 '18년도 사업비가 감소될 것을 인지하고, '18년 6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수급계획”에도 국비 편성액(162억 2,400만원)중 △72억 9,800만원을 연간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 편성된 국비(162억 2,400만원)에 대해 일체의 감추경을 요청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용액 발생규모를 확대시킨 사례로 판단됨

〈표 3-100〉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2차	3차
도시 기반 시설본부 교부신청	교부신청시기	'18. 6	'18.10	'18.10
	국고보조금 연간수급계획 <sup>주1)</sup>	○ 국고보조금 예산액(162억 2,400만원)중 <b>89억 2,600만원</b> 을 '18년도중 수급할 계획임 - 2분기 : 28억 7,500만원 - 3분기 : 27억 9,800만원 - 4분기 : 32억 5,300만원	○ 국고보조금 예산액(162억 2,400만원)중 <b>88억 2,500만원</b> 을 '18년도중 수급할 계획임 - 2분기 : 23억 200만원 - 4분기 : 65억 2,300만원	○ 국고보조금 예산액(162억 2,400만원)중 <b>88억 2,500만원</b> 을 '18년도중 수급할 계획임 - 2분기 : 23억 200만원 - 4분기 : 65억 2,300만원
	사업추진계획	○ '18년 4/4분기 <b>목표공정률 17.1% 달성</b> - 주요내용 : 토공 및 가시설 설치(정거장, 차량기지)	○ '18년 4/4분기 <b>목표공정률 17.1% 달성</b> - 주요내용 : 토공 및 가시설 설치(정거장, 차량기지)	○ '18년 4/4분기 <b>목표공정률 17.1% 달성</b> - 주요내용 : 토공 및 가시설 설치(정거장, 차량기지)
	교부신청액	2,875	2,797	3,726
국토교통부 교부결정	교부결정시기	'18. 8	'18.10	'18.12
	교부결정액	2,302	2,797	3,726

※ 주1)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하면서 제출한 “자금수급 계획”에서 시비와 민간사업비(민자)를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부분만을 발체·정리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11791 ('18. 6.26)

②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7016 ('18. 8. 3)

③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5229 ('18.10.19)

④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9185 ('18.10.23)

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5803 ('18.10.30)

⑥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10411 ('18.12. 6)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예산현액 334억 8,700만원(국비 171억 5,700만원 포함)중 18.7%, 62억 7,100만원(국비 62억 7,000만원 포함)이 불용된 것으로,

- '18년도 본예산에 저상버스 428대분 도입을 지원하고자 국비(171억 5,700만원)와 시비(257억 3,600만원)를 매칭하여 428억 9,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국토교통부는 ① '18년 1월, 기 편성된 국비(171억 5,700만원)보다 △66억 3,800만원 감소된 105억 1,900만원(저상버스 287대분)을 서울시로 배분통보 하였으나, ② '18년 11월, 당초 배분통보에 따라 기교부된 국고보조금(105억 1,900만원)보다 3억 6,600만원(저상버스 10대분)을 추가교부하기로 결정하고 전액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01〉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및 편성·수령현황 (저상버스 도입)

(단위 : 백만원)

국비 예산액 <sup>주1)</sup> (가)	중앙정부 내시현황		국비 수령액 (나)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나)-(가)
	국고보조금 배분 ( '18. 1 )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sup>주2)</sup> ( '18.11 )		
17,157	10,519	10,886	10,886	△6,270

※ 주1) 회계연도중 증감조정 되지 않아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동일함

주2) 타 시·도 불용분(저상버스 10대분)을 서울시에 배정하고자 당초 배분액(105억 1,900만원)보다 3억 6,600만원을 추가교부 결정한 것임

자료근거 : 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23 ( '18. 1.24 )

②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9460 ( '18.11. 1 )

③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 '19. 5. 9 )

- 동 사업의 불용액(62억 7,100만원) 중 국비 편성액(171억 5,700만원)과 교부액(108억 8,600만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62억 7,000만원은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이나, 결산서에는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기재된 바,

〈표 3-102〉 저상버스 도입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가)	불용액						불용률 (나)/(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33,487,580	6,271,242	<b>6,270,897</b>	-	-	345	-	18.7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

-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보조사업 정산후 미집행된 “시비”만 **보조금정산잔액**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국비가 부족수령 되어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보조금정산잔액**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어 결산서 작성시 관련 기준에 대한 사전숙지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사업부서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여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1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배분통보('18. 1)에 따라 매칭시비는 예산변경을 통해 감액할 계획을 수립('18. 8)하였으나 국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사업부서는 국비의 추가교부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서울시로 교부되지 않을 국비 편성액은 감추경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 사료됨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사업은 '18년도 본예산에 국비 30억원이 포함된 435억원을 편성하고, '18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시비 499억 5,300만원을 증액조정 하여 총 934억 5,300만원(국비 30억원 포함)을 편성한 것임
- '18회계연도 결산서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을 확인하면 동 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30억원)이 일체 교부되지 않았으나,



〈표 3-10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국고보조금등(511) 세입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부서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합계		37,299	37,299	34,299	34,29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3,000	3,000	0	<b>0</b>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34,299	34,299	34,299	34,299

※ 자료근거 : '18회계연도 결산서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 국토교통부는 '18회계연도에 미교부한 국비(30억원)를 중앙정부 내에서 이월하고, '19년 2월, 서울시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의 '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는 “자금없는 이월”이 없고, 기편성된 30억원은 '18회계연도중 단 1원도 교부되지 않아 국비 편성액(30억원) 대비 부족수령된 국비(30억원)는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 950억 3,100만원(전년도 이월액 15억 7,800만원 포함)중 0.1%, 1억 6,000만원만 불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족수령된 국비(30억원)를 불용액(1억 6,000만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표 3-104〉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95,031	50,327	44,542 (0)	43,794 (0)	747 (0)	0	160	0.1

※ 1) “다음연도 이월액”중 ( )안에 기재된 것은 자금없는 이월액임

자료근거 : ① '18회계연도 결산서

② '18회계연도 결산서의 첨부서류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재구성

- 사업부서는 '18회계연도중 국비(30억원)가 교부되지 않아 시비부터 지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 결산서에는 '18회계연도에 단 1원도 교부되지 않은 국비(30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그 자금(3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시비(445억 4,200만원)중 우선 충당한 이후, 다음연도로 이월된 시비(445억 4,200만원)에서 발생한 자금부족분(△30억원)은 '19년 2월 교부된 국비(30억원)로 채워 넣은 일종의 ‘돌려막기’식 지출사례로서 회계질서문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소관 **영유아 보육료(보조)와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18회계연도중 편성액보다 추가교부된 국비에 대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 하고,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는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영유아 보육료(보조)의 경우, '18년도 본예산에 국비 3,364억 8,000만원이 포함된 6,24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편성액(3,364억 8,000만원)보다 64억 5,400만원 증액된 3,429억 3,400만원을 서울시로 변경내시 하고, 변경내시액(3,429억 3,400만원) 전액을 교부한 바,
  - '18년 12월, 추가교부된 국비(64억 5,400만원)는 간주처리 하고, 대응편성 되어야 할 시비 55억 9,100만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05〉 영유아 보육료(보조) 예산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내역		승인일자
				감액	증액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5,561) 270,096	(×-) △5,591		'18.12.10.
	영유아 보육료(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6,480) 624,986		(×-) 5,591	

-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3808 ('18.12. 7)  
 ②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4804 ('19. 3.27)  
 ③ '18회계연도 결산서 등 재구성

-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의 경우, '18년도 본예산에 국비 187억 4,800만원이 포함된 1,38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편성액(187억 4,800만원)보다 24억 9,800만원 증액된 212억 4,700만원을 서울시로 변경내시 하고, 변경내시액(212억 4,700만원) 전액을 교부한 바,
  - 추가교부된 국비(24억 9,800만원)는 '18년 11월, 간주처리 하고, 대응편성이 필요한 시비 40억 8,000만원은 '18년 12월, 불용이 예상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06〉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내역		승인일자
				감액	증액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5,561) 264,505	(×-) △4,080		'18.12.10.
	<b>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b>	<b>자치단체 경상보조금</b>	<b>(×21,247) 140,873</b>		<b>(×-) 4,080</b>	

-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3808 ('18.12. 7)  
 ②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4804 ('19. 3.27)  
 ③ '18회계연도 결산서 등 재구성

- 동 변경 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부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소요예산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국비교부액을 정밀산정하여 내시하고, 변경시 조기에 통보하여 줄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내시를 근거로 편성된 국비가 미교부 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국비에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불용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사업부서는 국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회계연도중 국비교부액의 증감요인 발생될 경우에는 조기에 통보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국비 편성액 대비 부족수령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비 부족수령액과 시비 대응편성분에 대한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불용액 발생규모를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07〉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최종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 실본부국 (소관 부서)	세부사업	국비편성액		국비수령액 ②	부족수령액 ③=②-①	부족수령 비율 ③/①
			본예산	최종예산 ①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145,561	145,561	120,886	△24,675	△16.9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24,467	24,467	9,154	△15,312	△62.5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39,100	39,100	23,900	△15,200	△38.8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73,493	186,585 <sup>주1)</sup>	172,986	△13,599	△7.2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수당 지원	97,333	97,333	87,290	△10,042	△10.3
6	도시기반시설본부 (홍보예산과)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6,224	16,224	8,825	△7,399	△45.6
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17,157	17,157	10,886	△6,270	△36.5
8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 의정부시계) 확장	3,000	3,000	-	△3,000	△100.0
9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13,042	7,610 <sup>주1)</sup>	4,971	△2,639	△34.6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68,772	74,949 <sup>주1)</sup>	72,349	△2,600	△3.4
11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41,983	41,983	39,968	△2,015	△4.7
1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66,944	70,137 <sup>주1)</sup>	68,359	△1,778	△2.5
1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미사업 운영	9,169	9,169	7,506	△1,663	△18.1
14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52,829	52,829	51,609	△1,219	△2.3
1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역 지원	2,946	2,946	1,834	△1,111	△37.7
16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립과학관)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1,050	1,050	-	△1,050	△100.0
17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35,149	35,149	34,177	△971	△2.7
18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787	787	30	△757	△96.1
19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 II	4,762	4,762	4,141	△621	△13.0
2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789	58,279 <sup>주1)</sup>	57,738	△541	△0.9

※ 주1) 본예산 편성액을 '18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증감조정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432 ('19. 5. 9) 재구성

##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함

〈표 3-108〉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8	2 0 1 7	2 0 1 6
합 계	2,575,399	3,432,080	2,872,632
일반회계	2,141,910	2,431,395	2,058,790
특별회계	433,489	1,000,684	813,842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3조 4,320억 8,000만원)보다 △8,566억 8,100만원 감소한 2조 5,753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조 4,313억 9,500만원)보다 △2,894억 8,500만원 감소한 2조 1,419억 1,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1조 6억 8,400만원)보다 △5,671억 9,500만원 감소한 4,334억 8,900만원 발생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된 것은 '18회계연도 세입결산결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소비증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세입예산(25조 4,771억

7,700만원)보다 1조 6,175억 7,600만원 증가한 27조 947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 '18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 직전회계연도 세출결산액(22조 775억 7,400만원)보다 2조 6,212억 800만원 증가한 24조 6,987억 8,200만원이 지출됨
  - 따라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과 직전회계연도보다 결산상잉여금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규모 또한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지방회계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1,000만원중 관련법에 따라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③타 회계전출 등 이른바 법정 의무경비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 정산분을 공제한 50% 이상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중 법정외 무경비를 제외한 50% 이상이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에 적립될 것으로 판단됨

〈표 3-109〉 최종예산대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최	종			
	예			
	산			
	①	25,269,572	22,572,455	20,984,104
전	년			
	도			
	이			
	월			
	액			
	②	207,605	246,231	314,923
예	산			
	현			
	액			
	③=①+②	25,477,177	22,818,685	21,299,027
세	입			
	결			
	산			
	액			
	(수			
	납			
	액)			
	④	27,094,753	24,747,079	23,019,246
세	출			
	결			
	산			
	액			
	(지			
	출			
	액)			
	⑤	24,698,782	22,077,574	20,683,816
결	산			
	상			
	잉			
	여			
	금			
	⑥=④-⑤	2,395,970	2,669,505	2,335,430
	기			
	존			
	채			
	무			
	상			
	환			
	⑦	-	-	-
명	시			
	이			
	월			
	액			
	⑧	102,533	68,095	161,020
사	고			
	이			
	월			
	액			
	⑨	113,699	139,510	85,211
계	속			
	비			
	이			
	월			
	액			
	⑩	-	-	-
보	조			
	금			
	반			
	납			
	금			
	⑪	37,827	30,505	30,409
순	세			
	계			
	잉			
	여			
	금			
	⑫=⑥-(⑦+⑧+⑨+⑩+⑪)	2,141,910	2,431,395	2,058,790

- 「지방회계법시행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직전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 서울시는 매년 관례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전망분을 다음년도 세입예산으로 미리 편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
  - 예결특위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나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8개 특별회계의 '19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7회계연도의 경우,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18년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이입하였으나 '18년 6월, '17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일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된 바

-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33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31억 1,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을 감액조정한 사례가 있었음
  
- '1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결산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상한 규모보다 감소되어 '19년도 본예산에 미리 편성된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 중앙정부와 타 시·도가 관련법을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에 대해 결산으로 규모를 확정하기 이전이라도 차년도 본예산에 이입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10〉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8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 1 9 년 도 본 예산 기 편 성 액	실 잔 액
		①	②	①-②
합	계	2,575,399	499,076	2,076,323
	일 반 회 계	2,141,910	0	2,141,91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135	0	2,135
	교통사업특별회계	113,986	39,002	74,98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2,609	39,993	△7,384
	주택사업특별회계	54,622	226,692	△172,070
	도시개발특별회계	58,363	85,232	△26,8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98	2,091	60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415	2,118	297
	소방안전특별회계	12,645	2,820	9,825
	수도사업특별회계	122,471	101,128	21,343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31,540	0	31,540

## (9) 지방채 관련

- 2018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3조 8,355억 8,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3조 7,451억 6,400만원)보다 904억 2,400만원(2.4%)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2018회계연도중 차입과 상환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14년 7월 서울시로 이관된 교통공사 건설채무 2,200억원이 '18년 1월 1일부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5,200억원)보다 △2,200억원 감소한 3,000억원임
  
- **차입**의 경우, 2018년도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의결시 지방채에 대한 차입계획 없이 의결되어 발생되지 않았으며 **상환**의 경우, '14년 12월 저금리로 차환된 지방채 3,0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환액이 발생되지 않은 것임

〈표 3-111〉 '18회계연도 지방채 증감현황<sup>주1)</sup>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입선	2017년도말 현재액	2018회계연도중 증감현황			2018년도말 현재액	2018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차입 ①	상환 ②	증감 ①-②		
<b>총계</b>		3,745,164	377,658	287,234	90,424	3,835,588	58,735
<b>일반회계 (계)</b>		520,000	-	-	-	300,000	7,320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차환)	모집공채	300,000	-	-	-	300,000	7,320
교통공사 건설채무이관 <sup>주2)</sup>	도시철도 공채	220,000	-	-	-	-	-
<b>특별회계 (계)</b>		3,225,164	377,658	287,234	90,424	3,534,088	51,376
<b>기타특별회계 (소계)</b>		1,991,738	377,658	284,234	93,424	2,260,696	-
지하철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1,991,738	268,958	-	268,958	2,260,696	-
교통공사 건설채무이관 <sup>주2)</sup>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	-	115,000	△115,000	105,000	20,862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정 부 주택도시기금	898,926	-	29,234	△29,234	869,692	22,573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 (우리은행)	70,000	70,000 <sup>주4)</sup>	140,000 <sup>주4)</sup>	△70,000	-	1,571
도시철도 확충 및 지하철 안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 집 공 채	260,000	-	-	-	260,000	6,370
풍납토성 복원 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 (우리은행)	-	38,700	-	38,700	38,700	-
하수관거종합정비 <sup>주3)</sup>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정 부 환특자금	4,500	-	-	-	-	-
<b>공기업특별회계 (소계)</b>		-	-	3,000	△3,000	1,500	39
하수관거종합정비 <sup>주3)</sup>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정 부 환특자금	-	-	3,000	△3,000	1,500	39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주2)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2,200억원이 '17회계연도말까지 일반회계에 있었으나, '18년 1월 1일부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변경됨

주3)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거종합정비(45억원)은 '18년 1월 1일부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변경

주4) '도시철도 확충 및 신림선 건설 700억원'의 경우, '18년 1월 2일자 기간연장에 따라 700억원을 차입 및 상환으로 반영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음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05 ('19. 4.30)

- **특별회계**의 경우, 2018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 (3조 2,251억 6,400만원)보다 904억 2,400만원 증가된 3조 5,340억 8,800만원임
- **차입**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차입액(8,312억 6,300만원)보다 △ 4,536억 500만원 감소된 3,776억 5,800만원인 바
  - 서울시의 경우,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써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정하고 있고, '18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7,78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57억 1,900만원으로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를 정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 공채 매출액 2,689억 5,800만원과 ②지방채 차환 700억원으로 총 3,389억 5,8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복원보상을 위해 387억원을 차입하였음
  - 서울시가 2018회계연도에 2개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3개 사업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당초 예산총칙에서 정한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 범위 내에서 차입된 것으로 검토됨
- **상환**의 경우, '18회계연도 상환액은 직전 회계연도 상환액(5,630억 7,500만원)보다 △2,788억 4,100만원 감소된 2,842억 3,400만원임

- 회계별 지방채 상환내역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550억원이 상환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92억 3,400만원이 상환되었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원이 상환되었음



〈표 3-112〉 채무현황 및 2019년도중 차입·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중 지방채 차입·상환계획			'19년도말 전망액
				발행 금리 <sup>주2)</sup>	거치기간 (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b>채무총계 (가)+(나)+(다)</b>			4,353,229			3,835,588	2,089,015	601,920	84,676	5,322,683
<b>지방채<sup>주1)</sup> (가)=㉠+㉡</b>			4,353,229			3,835,588	2,089,015	601,920	84,676	5,322,683
<b>일반회계 ㉠</b>			300,000			300,000	-	300,000	7,320	-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14.12.23.	300,000	2.44 (고정)	5년 일시상환	300,000	-	300,000	7,320	-
<b>특별회계 ㉡=㉢+㉣</b>			4,053,229			3,535,588	2,089,015	301,920	77,356	5,322,683
<b>기타특별회계 ㉢</b>			4,038,229			3,534,088	2,089,015	300,420	77,345	5,322,683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	'12년 ~'18년	2,365,696	2.5~1.25 (고정)	7년 일시	2,260,696	497,500	187,423	34,000	2,570,773
교통공사건설채무이관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	'11년 ~'13년	355,258	2.5~2.0 (고정)	7년 일시	105,000	-	80,200	14,549	24,800
도시철도화중및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모집공채	'17.12.15.	260,000	2.45 (고정)	5년 일시	260,000	-	-	6,370	260,000
풍납토성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	'18.12.12.	38,700	3.02 (고정)	1년 상환	38,700	-	-	779	38,700
저소득임대주택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부주택도시기금	'95년 ~'17년	1,018,575	3.0(고정) ~ 1.8(변동)	10년거치 20년상환 30년거치 15년상환	869,692	-	32,797	21,647	836,895
신림선경전철및진접선 차량기지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60,248	-	-	60,248
장기미집행도시공원실효대응공원용지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860,000	-	-	860,00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등SOC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184,286	-	-	184,286
생활밀착형문화시설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67,665	-	-	67,665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설치등SOC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25,796	-	-	25,796
풍납토성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64,100	-	-	64,100
동부간선도로확장 및 SOC확충등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예정)	'19.12. (예정)	-	-	-	-	144,770	-	-	144,770
임대주택공급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부주택도시기금 (예정)	'19.12. (예정)	-	-	-	-	184,650	-	-	184,650
<b>공기업특별회계 ㉣</b>			-	-	-	1,500	-	1,500	11	-
<b>채무부담행위 (나)</b>			-	-	-	-	-	-	-	-
<b>보증채무이행책임액 (다)</b>			-	-	-	-	-	-	-	-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  
 주2) 변동금리의 경우, 2018년 12월(4/4분기) 상환금리 기준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05 ('19. 4.30)

〈표 3-113〉 부채·채무<sup>주1)</sup> 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부	채	28,411,226	27,826,719	28,617,531
채	무	12,114,746	11,375,348	12,229,687
서울시	부 채	7,907,450	7,895,536	7,700,450
	채 무	3,835,588	3,745,164	3,476,976
서울시 투자기관	부 채	20,503,776	19,931,183	20,917,081
	채 무	8,279,158	7,630,184	8,752,711
서울교통공사 <sup>주2)</sup>	부 채	5,120,102	4,604,589	-
	채 무	3,131,333	2,728,503	-
서울메트로 <sup>주2)</sup>	부 채	-	-	2,968,103
	채 무	-	-	1,839,177
도시철도공사 <sup>주2)</sup>	부 채	-	-	1,374,872
	채 무	-	-	801,491
서울시설공단 <sup>주3)</sup>	부 채	141,583	122,616	90,941
	채 무	-	-	-
농수산식품공사 <sup>주4)</sup>	부 채	200,357	195,513	189,740
	채 무	126,978	124,893	122,648
서울주택도시공사 <sup>주5)</sup>	부 채	14,888,334	14,886,820	16,195,364
	채 무	4,925,840	4,700,729	5,933,402
서울에너지공사 <sup>주6)</sup>	부 채	153,400	121,646	98,061
	채 무	95,007	76,059	55,993

※ 주1) 채무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포함함

주2)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17. 3. 3)되어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17. 5.31)

주3)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7. 3. 3)되어 공단 명칭변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서울시설공단)

주4) 제24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2.10.12)되어 공사 명칭변경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주5)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6. 6.27)되어 공사 명칭변경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6)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16. 6.27)되어 서울에너지공사 신설 ('16.12.21)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05 ('19. 4.30)

## 4.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등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3-114〉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감액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b>자 산 총 계</b>	135,484,899	100.0	129,621,171	100.0	5,863,728
유 동 자 산	7,289,205	5.4	7,192,578	5.5	96,627
투 자 자 산	16,282,688	12.0	16,350,799	12.6	△68,111
일 반 유 형 자 산	8,630,725	6.4	8,849,258	6.8	△218,533
주 민 편 의 시 설	24,383,437	18.0	23,670,713	18.2	712,724
사 회 기 반 시 설	78,303,503	57.8	72,889,698	56.2	5,413,805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95,340	0.4	668,125	0.5	△72,785
<b>부 채 및 순자산 총계</b>	135,484,899	-	129,621,171	-	5,863,728
부 채 총 계	7,907,450	100.0	7,895,537	100.0	11,913
유 동 부 채	1,899,768	24.0	1,767,200	22.3	132,568
장 기 차 입 부 채	3,194,968	40.4	3,527,930	44.6	△332,962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812,714	35.6	2,600,407	32.9	212,307
순 자 산 총 계	127,577,449	100.0	121,725,634	100.0	5,851,815
고 정 순 자 산	106,338,629	83.3	101,576,805	83.4	4,761,824
특 정 순 자 산	6,235,426	4.9	6,225,083	5.1	10,343
일 반 순 자 산	15,003,394	11.8	13,923,746	11.4	1,079,648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18회계연도의 **총자산**은 135조 4,848억 9,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9조 6,211억 7,100만원)보다 5조 8,637억 2,800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유동자산 966억 2,700만원 증가, 주민편의시설 7,127억 2,400만원 증가, 사회기반시설 5조 4,138억 5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 **유동자산**은 ①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현금 및 예금 3,253억 6,300만원 증가, ②미수세금 △2,201억 6,400만원 감소, ③미수세외수입금 및 대손충당금 △218억 5,500만원 감소, ④미수정부간이전수익 1,237억 5,600만원 증가, ⑤단기대여금 216억 3,800만원 증가, ⑥재고자산 40억 2,300만원 증가, ⑦기타유동자산 △1,361억 3,200만원 감소 등에 따라 966억 2,700만원 증가된 것임

### 〈표 3-115〉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감액
계	7,289,205	7,192,577	96,627
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sup>주1)</sup>	5,914,635	5,589,272	325,363
② 미수세금 <sup>주2)</sup>	720,935	941,099	△220,164
③ 미수세외수입금 <sup>주3)</sup>	201,749	223,604	△21,855
④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42,432	18,676	123,756
⑤ 단기대여금 <sup>주4)</sup>	102,722	81,084	21,638
⑥ 재고자산 <sup>주5)</sup>	26,137	22,114	4,023
⑦ 기타 유동자산	180,594	316,726	△136,132

- ※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연도말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기금관련 금액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과 일치  
 주2) 미수세금은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을 의미, 대손충당금 포함  
 주3) 미수세외수입금은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을 의미, 대손충당금 포함  
 주4) 단기대여금은 민간이나 지방공사에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용자한 대금을 말함, 대손충당금 포함  
 주5)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을 말함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투자자산은 ①장기대여금이 677억 6,800만원 증가하고, ②공사·공단 및 펀드 등의 장기투자증권이 △1,369억 7,500만원 감소하였으며 ③기타투자자산은 13억 9,200만원 증가함에 따라 △681억 1,1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표 3-116〉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가액
계	16,282,688	16,350,799	△68,111
① 장기대여금	1,019,231	951,463	67,768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7,992	△7,696	△296
② 장기투자증권	15,258,483	15,395,459	△136,975
③ 기타 투자자산	12,966	11,574	1,392

-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일반유형자산**은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차량운반구 84억 400만원 및 집기비품 62억 4,800만원,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682억 2,900만원등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토지 △2,824억 6,800만원 및 건물 △91억1,500만원, 구축물 88억 9,500만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2,185억3,30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117〉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가액
계	8,630,725	8,849,258	△218,533
① 토 지	7,559,900	7,842,367	△282,468
입 목	3,012	3,012	0
② 건 물 <sup>주1)</sup>	574,759	583,874	△9,115
③ 구 축 물 <sup>주1)</sup>	27,437	36,332	△8,895
기 계 장 치 <sup>주1)</sup>	2,238	2,797	△559
④ 차 량 운 반 구 <sup>주1)</sup>	89,025	80,622	8,404
집 기 비 품 <sup>주1)</sup>	165,625	159,377	6,248
임 차 개 량 자 산 <sup>주1)</sup>	485	861	△376
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8,243	140,015	68,229

※ 주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①토지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등 취득(5건, 943억원) 및 기부채납 및 재산이관(11건, 208억원)이 증가했으나, 공유재산 처분(매각 201건, △368억원) 및 자산유형 변경(250건, △3,608억원)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2,824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㉔건물은 서울기록원 건물(407억원)과 성동소방서 신축(13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감가상각비 △240억원 감소 및 공원건물 등 자산유형변경으로 406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91억 1,5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㉕구축물은 건물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구축물 감가상각비 △83억원 감소, 자산유형변경에 따른 △13억원 감소로 직전회계연도보다 △88억 9,5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㉖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비에 따라 △24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소방헬기 1대 신규취득(327억원)으로 직전연도보다 84억 4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㉗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은 서울기록원건립(△407억원), 소방헬기(△327억원), 기타 세곡 119 안전센터 등 15건이 완공됨에 따라 해당 유형자산계정으로 변경되어 △96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당해 연도내 완공하지 못하거나 장기계속공사인 서울기록원건립공사(807억원) 등 10건, 2,384억원이 발생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682억 2,9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주민편의시설**은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①주차장 △572억 5,800만원, ②문화 및 관광시설 △114억 5,500만원, ③의료 시설 △137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 ①공원 1,873억 3,600만원, ②체육시설 1,835억 6,100만원, ③사회복지시설 660억 4,500만원, ④기타주민편의시설 2,570억 3,500만원, ⑤교육시설 401억 7,900만원, ⑥건설중인주민편의 시설 570억 8,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7,127억 2,400만원이 증가된 것임



〈표 3-118〉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가액
계	24,383,437	23,670,713	712,724
도 서 관 <sup>주1)</sup>	33,486	33,409	77
④ 주 차 장 <sup>주1)</sup>	1,464,523	1,521,781	△57,258
① 공 원 <sup>주1)</sup>	10,366,405	10,179,069	187,336
박 물 관 및 미 술 관 <sup>주1)</sup>	234,324	234,200	124
동 물 원	7	-	7
수 목 원 및 휴 양 립 <sup>주1)</sup>	1,412	1,372	39
⑤ 문 화 및 관 광 시 설 <sup>주1)</sup>	3,380,172	3,391,627	△11,455
문화 및 관광시설 사용수익권	△47,932	△51,623	3,692
② 체 육 시 설 <sup>주1)</sup>	1,455,020	1,271,459	183,561
③ 사 회 복 지 시 설 <sup>주1)</sup>	1,323,132	1,257,086	66,045
⑥ 의 료 시 설 <sup>주1)</sup>	580,027	593,767	△13,740
④ 교 육 시 설 <sup>주1)</sup>	958,255	918,076	40,179
⑤ 기 타 주 민 시 설 <sup>주1)</sup>	3,529,624	3,272,589	257,035
⑥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1,104,981	1,047,902	57,080

※ 주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사회기반시설**은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①상수도시설 △695억 9,800만원, ②폐기물처리시설 △527억 1,500만원, ③재활용시설 △271억 4,200만원, ④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8,783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 ①도로 3,091억 3,800만원, ②도시철도 1조 2,040억 9,800만원, ③수질정화시설 4조 8,875억 8,7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5조 4,138억 5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③수질정화시설은 감가상각비 △2,88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4조 3,442억원 및 기타 자산 증가 8,318억원 증가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4조 8,875억 8,700만원이 증가된 것임

〈표 3-119〉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가액
계	78,303,503	72,889,698	5,413,805
① 도로	56,895,457	56,586,319	309,138
도로 사용수익권	△230,780	△242,521	11,741
② 도시철도	4,241,029	3,036,931	1,204,098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541,657	△580,161	38,504
④ 상수도시설 <sup>주1)</sup>	4,986,033	5,055,631	△69,598
③ 수질정화시설 <sup>주1)</sup>	5,798,981	911,394	4,887,587
하천부속시설	3,515,082	3,522,503	△7,421
⑤ 폐기물처리시설 <sup>주1)</sup>	102,616	155,331	△52,715
⑥ 재활용시설 <sup>주1)</sup>	170,340	197,482	△27,142
농수산기반시설 <sup>주1)</sup>	149,471	149,926	△455
기타사회기반시설 <sup>주1)</sup>	31,497	33,069	△1,571
⑦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3,185,435	4,063,795	△878,360

※ 주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기타비유동자산은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①기타보증금 180억 5,600만원, ② 용익물권 11억 1,300만원, ③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13억 2,300만원, ④유산자산 7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⑤장기일반미수금 △1,003억 1,8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727억 8,50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120〉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감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95,340	668,125	△72,785
① 보 증 금	269,484	251,800	17,684
임 차 보 증 금	39,049	39,421	△372
전 신 전 화 가 입 권	22	22	-
기 타 보 증 금	230,413	212,357	18,056
② 무 형 자 산	105,749	105,748	1
지 적 재 산 권	37	41	△3
전 산 소 프 트 웨 어	36,181	37,156	△976
용 익 물 권	68,359	67,245	1,113
건 설 중 인 무 형 자 산	1,172	1,305	△133
③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20,107	310,577	△90,470
① 세 입 세 출 외 장 기 보 관 현 금	13,101	11,778	1,323
유 산 자 산	38,724	31,274	7,450
생 물 자 산	1,343	1,223	121
② 장 기 일 반 미 수 금	168,625	268,943	△100,318
장 기 일 반 미 수 금	△1,686	△2,689	1,003
대 손 충 당 금			
③ 비 유 동 배 출 권	-	50	△50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18회계연도의 **총부채**는 **7조 9,074억 5,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7조 8,955억 3,700만원)보다 11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채 증가사유로는 ①유동부채 1,325억 6,900만원 증가, ②장기차입부채 △3,329억 6,200만원 감소, ③기타비유동부채 2,123억 7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표 3-121〉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감
계	7,907,450	7,895,537	11,913
① 유 동 부 채	1,899,768	1,767,200	132,569
② 장 기 차 입 부 채	3,194,968	3,527,930	△332,962
③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812,714	2,600,407	212,307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유동부채**(1조 8,997억 6,800만원)는 직전회계연도(1조 7,672억 원)와 비교하여 ④단기차입금 △313억원, ⑤일반미지급금 △3,430억 2,700만원, ⑥단기보관예수금 △114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 ①유동성지방채증권 4,526억 2,300만원, ②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20억 6,300만원, ③선수금 471억 2,600만원, ④선수수익 154억 8,1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1,325억 6,9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3-122〉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감
계	1,899,768	1,767,200	132,569
④ 단 기 차 입 금	38,700	70,000	△31,3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01,920	147,234	454,686
① 유동성지방채증권	567,623	115,000	452,623
② 장 기 정 부 차 입 금	34,297	32,234	2,063
-	-	-	-
기 타 유 동 부 채	1,259,148	1,549,966	△290,818
⑤ 일 반 미 지 급 금	976,523	1,319,550	△343,027
③ 선 수 금	50,767	3,641	47,126
④ 선 수 수 익	59,006	43,525	15,481
⑥ 단 기 예 수 보 관 금	130,857	142,300	△11,443
일 반 미 지 급 비 용	41,987	40,921	1,066
유동성장기미지급	7	28	△21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장기차입부채**는 △3,329억 6,300만원 감소된 것으로서 ③도시철도공채 1,539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①정부국민주택기금 차입금 △292억 3,400만원 감소, ②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 △30억원 상환, ④지방채 증권 유동성 대체액 △4,526억 2,300만원에 따른 것임

〈표 3-123〉 장기차입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감
계		3,194,968	3,527,929	△332,963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A-B)	836,895	871,192	△34,297
	계 (A)	871,192	903,426	△32,234
	금융기관차입금	-	-	-
	① 정부국민주택기금	869,692	898,926	△29,234
	② 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	1,500	4,500	△3,000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	-	-
	차감(유동성대체액) (B)	34,297	32,234	2,063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A-B)	2,358,073	2,656,738	△298,665
	계 (A)	2,925,696	2,771,738	153,958
	채권발행 (SOC및일자리창출등)	300,000	300,000	-
	채권발행 (도시철도건설사업)	260,000	260,000	-
	③ 도시철도공채	2,365,696	2,211,738	153,958
	지역개발채권	-	-	-
	④ 차감 (유동성대체액) (B)	567,623	115,000	452,62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2335 ('19. 4.23)

- **기타 비유동부채**는 2,123억 7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①퇴직급여충당부채 82억 1,800만원 증가, ②장기예수보관금(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13억 2,300만원 증가, ③임대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1,894억 6,800만원 증가, ④장기미지급이자 136억 1,600만원 증가, ⑤진행중인 소송사건 우발부채 △3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음

〈표 3-124〉 기타 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가액
계		2,812,713	2,600,406	212,307
①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38,320	30,102	8,218
기 타 비 유 동 부 채	계	2,774,393	2,570,304	204,089
	② 장 기 예 수 보 관 금	13,101	11,778	1,323
	장 기 미 지 급 금	-	7	△7
	③ 임 대 보 증 금	2,616,249	2,426,781	189,468
	④ 장 기 미 지 급 이 자	124,294	110,678	13,616
	⑤ 우 발 부 채	20,749	21,060	△311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18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보다 부채가 119억 1,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자산(135조 4,848억 9,900만원)의 0.008%에 해당되나
  - 자산총액대비 부채비율이 '16회계연도에는 6.1%, '17회계연도에는 6.1%, '18회계연도에는 5.8%로 소폭 감소되어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되나 부채비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표 3-125〉 재정상태 변동 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자 산 ( a )	135,484,899	129,621,171	126,711,658
부 채 ( b )	7,907,450	7,895,537	7,700,451
순 자 산 (a-b)	127,577,449	121,725,634	119,011,207
부 채 비 율 (b/a)	5.8	6.1	6.1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21조 7,256억 3,500만원)보다 5조 8,518억 1,500만원 증가한 127조 5,774억 4,900만원임
  - 순자산이 증가된 원인은 자산이 직전회계연도보다 5조 8,637억 2,800만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19억 1,300만원 증가한 것임
  - 자산의 구성요소 중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3.4%, 106조 3,386억 2,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1조 5,768억 600만원)보다 4조 7,618억 2,300만원 증가하였음
  -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4.9%, 6조 2,354억 2,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조 2,250억 8,300만원)보다 103억 4,300만원 증가하였음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체 순자산의 11.7%, 15조 33억 9,400만원이며 직전회계연도(13조

9,237억 4,600만원)보다 1조 796억 4,8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126〉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증가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순 자산 총 계	127,577,449	100.0	121,725,635	100.0	5,851,814
고정순자산	106,338,629	83.4	101,576,806	83.4	4,761,823
특정순자산	6,235,426	4.9	6,225,083	5.1	10,343
일반순자산	15,003,394	11.7	13,923,746	11.4	1,079,648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아울러 서울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의 자산 및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총자산은 173조 2,901억 7,300만원이며, 총부채는 28조 4,112억 2,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할 경우, 총자산은 3.8%, 6조 3,67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도 2.1%, 5,84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3-127〉 지방공사·공단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계	서울시	지방공사·공단	계	서울시	지방공사·공단
총 자산 ( A )	173,290,173	135,484,899	37,805,274	166,922,530	129,621,171	37,301,359
총 부 채 ( B )	28,411,227	7,907,450	20,503,777	27,826,720	7,895,537	19,931,183
총 순 자산 ( A-B )	144,878,946	127,577,449	17,301,497	139,095,810	121,725,634	17,370,176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① 성질별 재정운영표

-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총비용(26조 7,718억 5,600만원)에서 총수익(28조 2,823억 8,1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5,105억 2,500만원 흑자임
- 재정운영표중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24조 1,362억 200만원)보다 2조 6,356억 5,400만원 증가한 26조 7,718억 5,600만원임
  - 2018회계연도의 총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53.6%, 14조 3,530억 8,4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20.3%, 5조 4,285억 6,5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은 전체의 11.7%, 3조 1,258억 3,700만원, 인건비는 전체의 6.9%, 1조 8,515억 7,100만원, 기타비용은 전체의 7.5%, 2조 127억 9,900만원으로 구성됨

〈표 3-128〉 재정운영표 (성질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재정운영결과(A-B)	(1,510,525)		(2,361,337)		850,812
총 비용 ( A )	26,771,856	100.0	24,136,202	100.0	2,635,654
인 건 비	1,851,571	6.9	1,748,507	7.2	103,064
운 영 비	5,428,565	20.3	4,973,565	20.6	455,000
정 부 간 이 전 비 용	14,353,084	53.6	13,443,063	55.7	910,021
민 간 등 이 전 비 용	3,125,837	11.7	2,693,683	11.2	432,154
기 타 비 용	2,012,799	7.5	1,277,384	5.3	735,415
총 수 익 ( B )	28,282,381	100.0	26,497,539	100.0	1,784,842
자 체 조 달 수 익	22,446,330	79.4	21,105,759	79.7	1,340,571
정 부 간 이 전 수 익	5,432,344	19.2	4,646,100	17.5	786,244
기 타 수 익	403,707	1.4	745,680	2.8	△341,973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괄호는 흑자를 의미

〈표 3-129A〉 재정운영표 (성질별) 비용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8회계연도	‘17회계연도	증감
㉠ 인건비	1,851,571	1,748,507	103,064
1. 급여 <sup>주1)</sup>	1,320,427	1,250,393	70,034
2. 복리후생비	322,081	297,859	24,222
3. 기타인건비 <sup>주2)</sup>	193,283	186,342	6,941
4. 퇴직급여	15,780	13,913	1,867
㉡ 운영비	5,428,565	4,973,565	455,000
1. 도서구입및인쇄비	15,871	16,965	△1,094
2. 소모품비	72,819	79,187	△6,368
3. 홍보및광고비	31,837	40,683	△8,846
4. 지급수수료	337,765	349,389	△11,624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47,446	40,800	6,646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280,954	227,038	53,916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946,222	949,944	△3,722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50,882	50,958	△76
9. 교육훈련비	21,407	20,885	522
10. 제세공과금	183,046	161,924	21,122
11. 보험료및공제료	5,581	5,302	279
12. 임차료	29,044	25,591	3,453
13. 출장비	20,067	20,421	△354
14. 연구개발비	14,063	10,920	3,143
15. 이자비용	111,095	86,110	24,985
16. 업무추진비	10,955	10,218	737
17. 행사비	52,920	55,217	△2,297
18. 의회비	8,607	8,560	47
19. 위탁대행사업비 <sup>주3)</sup>	2,408,105	2,193,805	214,300

※ 주1) 공무원 급여 700억 3,400만원 증가

주2) 공무원 및 기간제 등 기타인건비 69억 4,100만원 증가

주3)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위탁대행사업비 2,143억원 증가

〈표 3-129B〉 재정운영표 (성질별) 비용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8회계연도	‘17회계연도	증감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533	2,685	△152
21. 징수교부금	505,769	463,652	42,117
22. 연료비	17,997	9,560	8,437
23. 원·정수구입비	67,345	56,994	10,351
24. 공립대학운영비	61,538	73,567	△12,029
25. 기타운영비	124,697	13,189	111,508
<b>㉓ 정부간이전비용</b>	14,353,084	13,443,063	910,021
1. 시도비보조금 <sup>주4)</sup>	6,210,060	5,737,244	472,186
2. 자치구조정교부금 <sup>주5)</sup>	4,574,170	4,191,619	382,551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33,821	26,211	7,610
4. 국가에대한부담금	33,294	3,421	29,873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6,510	3,306,504	6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195,229	178,064	17,165
<b>㉔ 민간 등 이전비용</b>	3,125,837	2,693,682	432,155
1. 민간보조금 <sup>주6)</sup>	2,155,357	1,806,301	349,056
2. 민간장학금	174	246	△72
3. 이차보전금	36,266	35,588	678
4. 출연금 <sup>주7)</sup>	497,674	471,047	26,267
5. 전출금비용	316,461	318,721	△2,260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40,329	19,964	20,365
7 기타이전비용	79,576	41,815	37,761

※ 주4)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4,721억 8,600만원 증가

주5) 세입증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3,825억 5,100만원 증가

주6)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민간보조금 3,490억 5,600만원 증가

주7) 출자출연기관 등 출연금 262억 2,700만원 증가

〈표 3-129C〉 재정운영표 (성질별) 비용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8회계연도	'17회계연도	증감
㉞ 기타비용	2,012,800	1,277,384	735,416
1. 자산처분손실	12,327	13,917	△1,590
2. 자산손상차손 <sup>주8)</sup>	578,239	34,946	543,293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5,773	164,017	△38,244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271,569	421,854	△150,285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540,197	255,616	284,581
6. 무형자산상각비	22,716	35,129	△12,413
7. 대손상각비 <sup>주9)</sup>	446,873 <sup>주8)</sup>	297,440	149,433
8. 기타비용	15,106	54,465	△39,359
<b>㉞ 비 용 총 계</b>	<b>26,771,856</b>	<b>24,136,202</b>	<b>2,635,654</b>

- ※ 주8) ①교통공사의 경우, '18회계연도 도시철도특별회계로 1,322억 8,100만원을 출자했으나, '18회계연도 자본금이 '17회계연도 자본금보다 4,072억 9,300만원이 감소하여 5,395억 7,500만원의 자본잠식으로 인해 손상차손 5,395억 7,500만원 증가  
 ②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자본잠식으로 자본금이 33억 2,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18회계연도의 경우 회사를 청산하여 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33억 2,000만원이 손상차손으로 증가  
 ③서울리츠3호의 경우 '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자본금이 171억 5,000만원이고, '18회계연도중 242억 8,000만원을 추가로 출자했으나, '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자본금이 98억 8,900만원으로 315억 4,000만원이 자본잠식되어 손상차손 315억 4,000만원 증가
- 주9) 지방세 불납결손 4,138억 6,600만원 등



○ 재정운영표중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 26조 4,975억 3,900만원보다 1조 7,848억 4,200만원 증가한 28조 2,823억 8,100만원임

〈표 3-130〉 재정운영표 (성질별) 수익 관련

(단위 : 백만원)

과 목	'18회계연도	'17회계연도	증감
Ⅵ 자체조달수익	22,446,330	21,105,759	1,340,571
1. 지방세수익	19,322,379	18,009,253	1,313,126
2. 경상세외수익	2,190,200	2,188,158	2,042
3. 임시세외수익	933,750	908,348	25,402
Ⅶ 정부간이전수익	5,432,344	4,646,100	786,244
1. 지방교부세수익	194,688	160,393	34,295
2. 국고보조금수익	4,963,231	4,255,512	707,719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22,355	129,007	(106,652)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180,776	101,188	79,588
5. 기타정부간이전수익	71,294	0	71,294
Ⅷ 기타수익	403,707	745,680	(341,973)
1. 전입금수익	389,549	355,187	34,362
2. 기부금수익	2,391	10	2,381
3. 대손충당금환입	1,274		1,274
4.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4	102	(88)
5. 자산손상차손환입		383,391	(383,391)
6. 기타수익	10,478	6,991	3,487
㉠ 수익총계	28,282,381	26,497,539	1,784,842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 재정운영표중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1조 5,105억 2,500만원원 흑자로 직전회계연도(2조 3,613억 3,700만원)보다 8,508억 1,200만원 흑자 증가한 것임

〈표 3-131〉 재정상태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증감
재정운영결과 (c=a-b)	(1,510,525)	(2,361,337)	850,812
비 용 (a)	26,771,856	24,136,202	2,635,654
수 익 (b)	28,282,381	26,497,539	1,784,842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괄호는 흑자를 의미

## ② 기능별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제외한 것으로서 2018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2조 3,613억 3,700만원 흑자)보다 △8,508억 1,200만원 감소한 1조 5,105억 2,500만원 흑자임
- **재정운영순원가**는 직전회계연도(21조 87억 1,300만원)보다 3조 1,066억 6,500만원 증가한 24조 1,153억 7,800만원임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14조 8,227억 300만원)보다 1조 3,672억 7,300만원 증가한 16조 1,899억 7,600만원임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6조 2,917억 9,300만원)보다 9,428억 3,800만원 증가한 7조 2,346억 3,100만원임
- **비배분비용**은 직전회계연도(9,438억 2,400만원)보다 5,798억 8,800만원 증가한 1조 5,237억 1,200만원임
- **비배분수익**은 직전회계연도(1조 496억 700만원)보다 △2,166억 6,600만원 감소한 8,329억 4,100만원임
-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않는 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등으로 직전회계연도(23조

3,700억 5,000만원)보다 2조 2,558억 5,300만원 증가한 25조 6,259억 300만원임

〈표 3-132〉 재정운영표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8회계연도	'17회계연도	증감
재 정 운 영 결 과 (A-B)	(1,510,525)	(2,361,337)	850,812
재 정 운 영 순 원 가 (A) (① + ② + ③ - ④)	24,115,378	21,008,713	3,106,665
사 업 순 원 가 ①	16,189,976	14,822,703	1,367,273
관 리 운 영 비 ②	7,234,631	6,291,793	942,838
비 배 분 비 용 ③	1,523,712	943,824	579,888
비 배 분 수 익 ④	832,941	1,049,607	(216,666)
일 반 수 익 (B)	25,625,903	23,370,050	2,255,853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재구성  
괄호는 흑자를 의미

###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기말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 기초순자산에 대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는 방식인 바 직전회계연도(121조 7,256억 3,500만원)보다 5조 8,518억 1,500만원 증가한 127조 5,774억 5,000만원임
- 순자산의 증가는 직전회계연도(1조 4,683억 8,600만원)보다 3조 9,916억 4,200만원 증가한 5조 4,600억 2,700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직전회계연도(1조 1,152억 9,400만원)보다 34억 4,300만원 증가한 1조 1,187억 3,700만원임
-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누락했던 하수관로 및 토지 구축물 등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자산반영 등을 위한 자산재평가로 4조 3,442억원 증가, ②기타 BTO사업 관련(우면산 터널 등 5건) 사용수익권 539억원, 공원 토지 14건, 2,155억원, 도로용 토지 69건, 713억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등 111건 등 양여·기부로 자산이 3,689억 9,700만원 증가, ③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재무제표작성을 통한 자산증가 4,957억원, 공유재산 토지(공원 6건, 도로 61건) 합병증가에 따른 순자산액 2,125억원 증가 등 기타 순자산 7,083억원 증가
-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④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진출된 유가증권 등 잔여 자산 △4,920억원 감소, ⑤주차장 토지 2건, △811억원, 도로 토지 52건, △202억원, 기타도시정비사업 등 토지 172건, △751억원 및 노후물품 5,941건, △160억원 양여로 △1,924억 3,100만원 감소, ⑥공유재산토지합병 말소 67건, △2,125억원, 세출외 처분 1,595건, △5,226억원, 도시철도사업비특별회계 단가차입금을 감채기금으로 이관 회계처리 △700억원, 노후물품폐기 25,478건, △246억원 등 △8,878억 2,20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133〉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감	증감액 발생사유
		구성비		구성비		
기 말 순 자 산 (A - B + C - D)	127,577,450		121,725,635		5,851,815	
기 초 순 자 산(A)	121,725,635		119,011,207		2,714,428	
재 정 운 영 결 과(B)	△1,510,525		△2,361,337		850,812	
<b>순자산의 증가(C)</b>	<b>5,460,027</b>	<b>100.0</b>	<b>1,468,386</b>	<b>100.0</b>	<b>3,991,642</b>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이익 ①	4,344,246	79.6	492,077	33.5	3,852,1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공기업특별회계로 변경관련,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수질 정화시설(토지, 구축물 등)자산재평가 로 인한 증가(4조 3,442억원)
재산이관·관리 전환으로 증가	38,484	0.7	98,061	6.7	△59,577	·조직개편 및 회계간 자산이동에 따른 증가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 ②	368,997	6.8	350,818	23.9	18,179	·BTO사업(지하철9호선 1단계 등 5건)사 용수익권(539억), 공원토지 14건(2,155 억원), 도로토지 69건(713억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등 무상양여 111건(282억 원) 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 가 ③	708,300	13.0	527,429	35.9	180,87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계시재무제표작성 관련자산 증가액(4,957억원), 공유재 산 토지(공원 6건, 도로61건) 합병증가 에 따른 순자산액 증가(2,125억원) 발생
<b>순자산의 감소(D)</b>	<b>1,118,738</b>	<b>100.0</b>	<b>1,115,294</b>	<b>100.0</b>	<b>3,443</b>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④	-	-	492,077	44.1	△492,077	·폐지(17년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회계 미발생
재산이관·관리 전환으로 감소	38,484	3.4	98,061	8.8	△59,577	·조직개편 및 회계간 자산이동에 따른 감소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 감소 ⑤	192,431	17.2	20,595	1.8	171,836	·주차장토지2건(811억원), 도로52건(202 억원),기타도시정비사업 등 토지 172건 (751억원) 및 노후 물품 5,941건(160 억원) 민간 양여로 인한 감소
기 타 순 자 산 감 소 ⑥	887,822	79.4	504,562	45.2	383,261	·공유재산토지합병발소67건(2,125억원),세 출외처분 1,595건(5,226억원), 도시철도 사업특별회계 단기차입금 감채기금으로 이관관련 회계처리 결과(700억원), 노후 물품폐기 25,478건(246억원)등 감소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2335 ('19 .4.23)

○ 순자산 증가 사유 중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의 경우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하철9호선 1단계 등 5건(장부가액 7,608억 1,600만원)의 사용수익권이 발생하거나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기타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기부에 따른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는 바

- ① 지하철9호선 1단계 등 5건(장부가액 7,608억 1,600만원)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에 있으나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재산”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되는 것임

〈표 3-134〉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재산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자산명	'18회계연도 장부가액	'17회계연도 장부가액	부여받은자	내용	존속기간
	합 계	760,816	706,879			
도시교통본부	지하철9호선 (1단계)	613,473	574,969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지하철 9호선 운영 및 유지보수	'09. 7.24 ~ '39. 7.23
안전총괄본부	우면산터널	87,820	82,234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양재·과천 연결 터널조성	'04. 1. 6 ~ '34. 1. 5
안전총괄본부	용마터널	33,618	27,463	용마터널(주)	면목동·암사동 연결 터널조성	'14.11.21 ~ '44.11.20
문 화 본 부	블루스퀘어 (한남동)	19,730	16,988	(주)인터파크 씨어터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11.10.28 ~ '31.10.27
경제진흥본부	동대문패션 비즈센터	6,175	5,225	한국산업 단지공단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	'12. 6. 1 ~ '32. 5.31.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



〈표 3-135〉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합	계	135,484,899	7,907,450	127,577,450	26,771,856	28,282,381	(1,510,525)	
일	반 회 계	91,612,686	1,398,102	90,214,584	24,780,652	24,507,690	272,961	
특	별 회 계	40,890,778	7,757,853	33,132,925	6,948,891	8,164,405	(1,215,514)	
기 타 특 별 회 계	기타특별회계(계)	28,995,794	7,590,625	21,405,170	5,391,800	6,572,621	(1,180,82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665,444	2,778,191	1,887,253	318,367	412,460	(94,093)	
	교 통 사 업	6,135,269	759,368	5,375,901	1,642,436	1,598,625	43,812	
	주 택 사 업	10,293,983	3,550,774	6,743,209	869,922	1,139,679	(269,757)	
	도 시 개 발	6,430,976	405,586	6,025,390	567,813	1,200,227	(632,414)	
	의 료 급 여 기 금	3,039	37	3,002	1,185,928	1,180,972	4,956	
	한 강 수 질 개 선	5,910	1,558	4,352	25,250	25,192	57	
	광 역 교 통 시 설	1,210,455	92,464	1,117,991	63,916	192,252	(128,337)	
	소 방 안 전	250,720	2,648	248,072	718,168	823,214	(105,046)	
	공 기 업 계	공기업특별회계(계)	11,894,983	167,228	11,727,755	1,557,091	1,591,784	(34,692)
수 도 사 업		5,249,121	157,514	5,091,608	748,853	700,143	48,709	
하 수 도 사 업		6,645,862	9,714	6,636,148	808,239	891,640	(83,402)	
기 금	기 금 ( 계 )	6,539,193	1,688,899	4,850,294	584,649	1,152,622	(567,973)	
	재 정 투 용 자	2,525,447	1,162,813	1,362,634	13,914	33,140	(19,226)	
	중 기 장 기 업	소 계	726,330	218,000	508,330	39,112	50,122	(11,009)
		용 자 계 역	711,309	218,000	493,309	39,112	45,171	(6,059)
		투 자 계 정	15,021	0	15,021	0	4,950	(4,950)
	식 품 진 흥	67,814	0	67,814	3,210	2,388	822	
	기 후 변 화	129,549	686	128,863	98,196	117,946	(19,750)	
	도 로 굴 착 복 구	14,545	0	14,545	31,059	32,059	(999)	
	성 평 등 기 금	24,306	0	24,306	858	1,027	(170)	
	자 원 회 수 시 설	27,836	0	27,836	27,335	23,408	3,927	
	수 도 권 매 립	304	0	304	28,500	28,529	(29)	
	사 회 복 지	소 계	77,182	0	77,182	11,669	5,816	5,854
		노인복지계정	15,718	0	15,718	718	289	430
		장애인복지계정	36,272	0	36,272	694	449	245
		자 활 계 정	12,812	0	12,812	848	209	639
		주거지원계정	12,379	0	12,379	9,409	4,868	4,540
	체 육 진 흥	57,545	0	57,545	9,456	7,971	1,484	
	감 채 기 금	2,076,192	307,400	1,768,792	212,974	690,518	(477,544)	
	재 난 관 리	소 계	713,947	0	713,947	88,508	127,015	(38,507)
		재 난 계 정	434,036	0	434,036	84,335	121,339	(37,005)
		구 호 계 정	279,911	0	279,911	4,173	5,675	(1,502)
	남 북 교 류 협 력	14,205	0	14,205	3,782	429	3,353	
	대 외 협 력	소 계	9,009	0	9,009	5,477	5,950	(474)
		국내협력계정	5,286	0	5,286	3,227	2,863	364
		국제협력계정	3,723	0	3,723	2,250	3,087	(837)
	사 회 투 자 기 금	57,243	0	57,243	197	3,953	(3,756)	
	지 역 개 발 기 금	5,823	0	5,823	6	102	(97)	
내 부 거 래		11,915	0	11,915	10,397	22,249	(11,85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2335 ('19. 4.23) 재구성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이 괄호일 경우 흑자를 의미함

## 5. 성과보고서 검토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성과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되고 있음
  - 특히, 「지방회계법」은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8개 부서에 대해 38개 전략목표수, 205개 정책사업목표개수, 41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나
  - 조직개편 등으로 '18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38개 부서의 38개 전략목표수와 212개 정책사업목표개수, 42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한 것임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2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중 ①51개 지표(12.1%)를 **초과달성**하였고, ②308개 지표(73.1%)를 **달성**하였으며, ③62개 지표(14.7%)를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36〉 회계연도별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

회 계 연 도	정책사업목표수	초 과 달 성	달 성	미 달 성
2 0 1 8	421 (100.0)	51 (12.1)	308 (73.1)	62 (14.7)
2 0 1 7	446 (100.0)	56 (12.5)	332 (74.4)	58 (13.0)
2 0 1 6	427 (100.0)	62 (14.5)	322 (75.4)	43 (10.1)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이 예산 및 결산심사에 도입된 '16회계연도 이후 성과지표를 달성(목표대비 실적 100%~130%)한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초과달성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의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적인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평가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3-137〉 실·본부·국별 성과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8	212	421 (100.0%)	51 (12.1%)	308 (73.1%)	62 (14.7%)
대 변 인	1	1	2	0	2	0
서울혁신기획관	1	6	13	1	11	1
시민소통기획관	1	5	13	3	9	1
여성가족정책실	1	7	13	2	10	1
일자리노동정책관	1	3	6	1	5	0
비상기획관	1	1	2	0	2	0
정보기획관	1	7	12	2	10	0
민생사법경찰단	1	1	3	1	2	0
기획조정실	1	12	22	4	16	2
경제진흥본부	1	13	21	3	14	4
복지본부	1	8	15	2	11	2
도시교통본부	1	10	20	2	13	5
문화본부	1	12	15	2	11	2
기후환경본부	1	8	14	3	6	5
행정국	1	9	15	2	10	3
재무국	1	7	11	2	6	3
평생교육국	1	4	11	2	6	3
관광체육국	1	6	11	1	9	1
시민건강국	1	9	30	1	24	5
도시공간개선단	1	1	2	1	1	0
기술심사담당관	1	2	4	0	3	1
안전총괄본부	1	10	11	0	10	1
도시재생본부	1	11	18	0	16	2
도시계획국	1	5	6	1	4	1
주택건축국	1	5	9	1	7	1
푸른도시국	1	11	20	3	16	1
물순환안전국	1	5	5	0	3	2
지역발전본부	1	5	9	1	7	1
소방재난본부	1	9	21	1	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7	0	7	0
한강사업본부	1	2	6	2	2	2
인재개발원	1	1	4	1	3	0
서울역사박물관	1	1	5	0	5	0
시립미술관	1	1	7	0	5	2
교통방송	1	1	6	2	3	1
의회사무처	1	3	23	4	17	2
감사위원회	1	4	7	1	4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0	1	1

※ 자료근거 : 「2018회계연도 결산서 III-2」 p.1210~1211

○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변인 소관 성과지표중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의 경우에는 목표 42,000건, 실적 44,305건으로 달성률이 105.4%임에도 100%라고 제출하였으며,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지표중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의 경우에도 목표 75개소, 실적 88개소로 달성률이 117.3%이나 100%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8〉 성과달성률 오류 현황

(단위 : %)

실·본부·국	성 과 지 표 명	제출된 달성률	실제달성률
대 변 인	언 론 매 체 시 정 보 도 건 수	100	105.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 회 적 경 제 기 업 육 성 수	100	104.3
도시재생본부	주 거 환 경 관 리 사 업 추 진 구 역 수	100	105.6
푸 른 도 시 국	산 사 태 예 방 사 방 사 업	100	117.3
시민감사옴부즈만 위 원 회	시 민 감 사 옴 부 즘 만 권 익 구 제 만 족 도	100	108.0

- 성과지표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면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뿐 아니라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심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향후 성과달성률을 명확히 산출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분석 및 향후개선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특히, 성과분석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지표 **공원이용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참여인원**의 경우, 목표 8만 4,000명, 실적 13만명으로 달성률 154%, **초과달성**하였으나 초과달성의 원인을 “성과지표 달성률을 예측하지 못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 과소 설정” 이라고 제출하였으며
  -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지표 **마곡지구 기반시설 조성 공정률**의 경우, 달성률 98%로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음에도 원인분석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는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을 금지하여 성과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취지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한 '16회계연도부터 매년 결산심사시 성과정보의 임의변경이나 누락에 대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에 제출된 성과보고서중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

나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적 요건을 우선시한 결과로 사료됨

〈표 3-139〉 미달성·초과달성 원인분석 오류 등 현황

실·본부·국	성 과 지 표 명	누 락 등 내 용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수사 지원 건수	임의변경 ※ 원인분석을 별도항목으로 작성하지 않고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포함하여 작성
푸른도시국	에코스쿨 조성 개교수	원인분석 불명확 ※ “성과지표 달성률을 예측하지 못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 과소 설정”으로 제출
”	공원이용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참여 인원	원인분석 불명확 ※ “성과지표 달성률을 예측하지 못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 과소 설정”으로 제출
”	고객 만족도	원인분석 누락 ※ 원인분석에 향후 계획을 작성
지역발전본부	마곡지구 기반시설 조성 공정률	원인분석 누락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성과보고서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을 정하고 있는 바

### 〈표 3-140〉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 IV. 성과보고서

##### 1. 추진개요

(중략)

##### 2.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 가. 작성 기본방향

(1) 2018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중략)

###### (4) 내·외부 지적사항(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 「전년도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분석 항목에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기재
-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부 검사결과 지적사항 반영 내용 기재  
예)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지표에 적극적·도전적 목표치 설정에 대한 지적 등
- 지방의회(예결위,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19. 1), p.257

- 서울시가 제출한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중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 **투자기관 부채관리**를 포함한 5개의 성과지표는 성과보고서에 '17회계연도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지적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시민청 방문객 수**를 포함한 9개의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17회계연도 예결특위 심사보고서에서 성과지표 미달성 및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임의 누락으로 지적되었음에도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련 지적사항을 임의 생략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1〉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누락 현황

실·본부·국	성 과 지 표 명	누 락 등 내 용
시민소통기획관	시 민 청 방 문 객 수	'17년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으나 '18년도 성과보고서에서 누락
정보기획관	수 치 지 도 갱 신 면 적	”
	하드웨어 장애에 의한 서비스 중단비율	”
문화본부	시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건수	”
기후환경본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	”
시민건강국	결 핵 양 성 환 자 치 료 율	”
기술심사담당관	계 량 기 검 사 대 수	”
푸른도시국	에 코 스 쿨 조 성 개 교 수	”
	공 원 이 용 프 로 그 램 참 여 인 원	”

○ 또한,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지표중 **에코스쿨 조성 개교수**의 경우, '18회계연도에 달성률 220%로 **초과달성**하였으나 지난 '16회계연도 부터 매년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성과지표는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매년 “성과지표 달성률을 예측하지 못하여 목표치 과소 설정”이라고 제출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초과달성**의 원인분석을 “성과지표 달성률을 예측하지 못하여 목표치 과소 설정”으로 제출하였으나 '17회계연도에도 **초과달성**하여 예결특위 결산심사시 목표의 합리적인 설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지적되었던 내용을 '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사업부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내·외부 지적사항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서는 각 자치단체는 성과보고서(안)에 대하여 필요 시 지자체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성과보고서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각 실·본부·국 별로 상이하게 제출되고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 서울시의 경우, 관련 평가위원회를 미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사전검토 함으로써 행정안전부 기준이 준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2) 공기업회계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2조 379억 4,100만원
- 세출 결산액 1조 6,387억 5,700만원
- 잉여금 3,991억 8,4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915억 5,600만원 및 사고이월액 1,536억 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0억 1,200만원임.

(3) 기타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8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8조 9,793억 6,400만원
- 세출 결산액 7조 9,979억 1,100만원
- 잉여금 9,814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362억 1,100만원 및 사고이월액 2,392억 7,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264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94억 7,800만원임.

나.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조 1,869억 4,4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3조 7,408억 7,900만원에 비하여 4,460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6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재정투융자기금 2조 3,141억 4,8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776억 6,400만원
- 식품진흥기금 661억 500만원
- 기후변화기금 778억 5,500만원
- 사회투자기금 88억 8,1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44억 9,100만원
- 성평등기금	243억 6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81억 3,500만원
- 사회복지기금	549억 9,6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71억 300만원
- 감채기금	6,163억 5,400만원
- 재난관리기금	7,107억 6,7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42억 100만원
- 대외협력기금	82억 1,500만원
- 지역개발기금	58억 2,200만원
- 도시재생기금	78억 9,900만원임.

#### 다. 재무제표

(1) 2018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35조 4,848억 9,9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129조 6,211억 7,100만원에 비하여 5조 8,637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7조 2,892억 500만원
- 투 자 자 산	16조 2,826억 8,800만원
- 유 형 자 산	111조 3,176억 6,500만원
- 기타비유동자산	5,953억 4,000만원임.

(2) 2018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7조 9,074억 5,0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7조 8,955억 3,700만원에 비하여 11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아.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